

터 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 부 지 침

2009. 3.



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

이 책자는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에 따라 제정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8호, '08. 12. 31)의 시행을 위하여 세부 지침을 정한 것으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본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하되, 개별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 목 차 례

제1장 서 론	1
1.1 목적	3
1.2 적용 범위	3
1.3 용어 정의	5
제2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9
2.1 시설물 관리일반	11
2.1.1 시설물 관리 목적	11
2.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	11
2.1.3 설계도서 등의 보존	12
2.1.4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 작성·제출	14
2.1.5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제출	15
2.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16
2.2.1 계획 일반	16
2.2.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준비 사항	19
2.2.3 예산의 확보	22
2.2.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22
2.3 안전관리	23
2.3.1 일반	23
2.3.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23
2.3.3 공공의 안전	25
2.4 진단측정장비 관리	26
2.4.1 진단측정장비 선정 요건	26
2.4.2 진단측정장비 관리	26
2.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전조사	29
2.5.1 사전조사 계획 수립	29
2.5.2 사전조사 실시계획 수립	29
2.6 실시결과의 이행	31
2.6.1 중대한 결함의 분류	31
2.6.2 중대한 결함의 정도	33
제3장 안전점검	35

3.1 안전점검 일반	37
3.1.1 안전점검 종류	37
3.1.2 안전점검 시 고려사항	37
3.1.3 안전점검 계획	38
3.2 정기점검	39
3.2.1 정기점검 목적	39
3.2.2 정기점검 절차	39
3.2.3 정기점검 방법	39
3.2.4 정기점검 실시결과의 이용	40
3.2.5 정기점검 결과표 작성	41
3.3 정밀점검	44
3.3.1 정밀점검 목적	44
3.3.2 정밀점검 절차	44
3.3.3 정밀점검 시기	44
3.3.4 정밀점검 과업	45
3.3.5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이용	48
3.3.6 정밀점검 결과표 작성	48
3.3.7 보고서 작성 방법	55
3.4 긴급점검	59
3.4.1 손상점검	59
3.4.2 특별점검	59
3.5 초기점검	60
3.5.1 초기점검 목적	60
3.5.2 초기점검 실시	60
3.5.3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	61
제4장 정밀안전진단	65
4.1 정밀안전진단 일반	67
4.1.1 정밀안전진단 목적	67
4.1.2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67
4.1.3 정밀안전진단 절차	68
4.1.4 정밀안전진단의 범위	70
4.2 정밀안전진단 과업	71
4.3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작성	73
4.4 보고서 작성 방법	80

제5장 현장조사	83
5.1 현장조사 일반	85
5.1.1 일반	85
5.1.2 목적	85
5.2 현장조사 요령	86
5.2.1 일반	86
5.2.2 시설물 상태변화의 점검항목	86
5.2.3 현장조사 요령	90
5.3 균열조사 요령	95
5.3.1 일반	95
5.3.2 균열조사	95
5.3.3 비파괴시험에 의한 균열깊이 조사	98
 제6장 재료시험	 101
6.1 재료시험 일반	103
6.1.1 일반	103
6.1.2 현장 재료시험	103
6.1.3 실내시험	103
6.1.4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104
6.1.5 시험 보고서	104
6.2 반발경도시험	105
6.2.1 일반	105
6.2.2 시험 등의 절차	106
6.2.3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108
6.2.4 시험 보고서	110
6.3 초음파전달속도시험	111
6.3.1 일반	111
6.3.2 시험 등의 절차	112
6.3.3 초음파전달속도시험	114
6.3.4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116
6.3.5 시험 보고서	117
6.4 콘크리트 코어시험	119
6.4.1 일반	119
6.4.2 코어채취	120
6.4.3 코어강도에 미치는 영향인자	122
6.4.4 시험 보고서	123
6.5 철근탐사시험	124

6.5.1 일반	124
6.5.2 시험 등의 절차	125
6.5.3 시험 보고서	126
6.6 철근부식도시험	128
6.6.1 일반	128
6.6.2 시험 등의 절차	129
6.6.3 철근부식 판정	132
6.6.4 시험 보고서	133
6.7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134
6.7.1 일반	134
6.7.2 시험방법	135
6.7.3 탄산화 깊이 측정	136
6.7.4 탄산화속도계수 산정	137
6.7.5 시험 보고서	137
제7장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	139
7.1 일반	141
7.2 재료시험 항목 및 기준수량	142
7.2.1 정기점검	142
7.2.2 긴급점검	142
7.2.3 정밀점검	142
7.2.4 정밀안전진단	144
제8장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149
8.1 일반	151
8.2 상태평가 기준	152
8.2.1 상태평가 기준	152
8.2.2 기본시설 결함지수 산정기준	154
8.2.3 부대시설 결함지수 산정기준	159
8.3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162
8.3.1 기본시설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162
8.3.2 부대시설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168
8.4 상태평가 결과 산정 방법	172
8.4.1 기본시설 상태평가 결과 산정	172
8.4.2 부대시설 상태평가 결과 산정	175
8.4.3 상태평가 결과 산정 예시	177

제9장 안전성평가 기준 및 방법	183
9.1 일반	185
9.2 안전성평가 기준	188
9.3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방법	189
9.3.1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189
9.3.2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방법	191
제10장 종합평가 기준 및 방법	193
10.1 종합평가 기준	195
10.2 종합평가 결과 산정 방법	196
10.2.1 종합평가 산정 절차	196
10.2.2 종합평가 결과 산정 방법	197
제11장 안전등급 지정	199
제12장 보수·보강 방법	203
12.1 일반	205
12.2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205
12.3 보수·보강 방법	206
12.3.1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206
12.3.2 보수·보강의 수준 결정	206
12.3.3 보수·보강공법의 선정	206
12.4 유지관리 방안 제시	214
부 록	203
부록 A 외관조사망도	217
부록 B 과업지시서 예시	223
부록 C 사전검토 보고서 예시	241
부록 D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요령	251

표 차 례

[표 2.1] 터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범위	18
[표 2.2] 법정 진단측정장비의 교정주기	27
[표 2.3] 법정 진단측정장비 이외의 진단기구 교정주기	28
[표 2.4] 시설물별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	32
[표 3.1] 정밀점검 실시주기	45
[표 3.2] 정밀점검 과업 내용	46
[표 3.3] 이미지 및 동영상 파일의 종류	58
[표 4.1]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68
[표 4.2] 터널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범위	70
[표 4.3] 정밀안전진단 과업 내용	72
[표 5.1] 터널의 상태변화 점검항목	87
[표 5.2] 지하차도의 상태변화 점검항목	87
[표 5.3] 터널의 일반적인 사전조사 항목	88
[표 5.4] 터널의 일반적인 정밀안전진단 항목 및 방법	89
[표 6.1] 기존의 비파괴강도 추정 제안식	109
[표 6.2] 재령보정계수, α 의 값 ($F_{28} = F_c \times \alpha$)	109
[표 6.3] 기존의 비파괴강도 추정 제안식	117
[표 6.4] 철근의 부식진단에 관한 전기화학적 비파괴시험 방법	128
[표 6.5] 철근부식 유무의 판정기준 (자연전위 : CSE 기준)	132
[표 6.6] 페놀프탈레인 분무 시기와 측정 시기	136
[표 7.1] 정밀점검의 재료시험 항목	142
[표 7.2] 정밀점검의 재료시험 평가방법	143
[표 7.3] 정밀점검 기본과업의 재료시험 기준수량	144
[표 7.4] 정밀점검 선택과업의 재료시험 기준수량	144
[표 7.5] 정밀안전진단의 재료시험 항목	145
[표 7.6] 정밀안전진단의 재료시험 평가방법	145
[표 7.7] 정밀안전진단 기본과업의 재료시험 기준수량	146
[표 7.8] 정밀안전진단 선택과업의 재료시험 기준수량	147
[표 8.1] 터널의 기본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의 종류	153
[표 8.2] 터널 상태평가 항목	153
[표 8.3] 부대시설 상태평가 항목	159

[표 8.4] 부대시설의 가중치	160
[표 8.5] 부대시설의 가중치	176
[표 8.6] 부재별 평가항목(라이닝 외관상태, 터널 주변상태) 조사결과표 예시	179
[표 8.7] 평가항목별 상태평가 결과 산정표(스판별) 예시	180
[표 8.8] 터널의 상태평가 결과 산정표 예시	181
[표 9.1]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기준	188
[표 9.2] 터널의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개착터널) 예	191
[표 9.3] 터널의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ASSM 터널) 예	191
[표 9.4] 터널의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NATM터널) 예	192
[표 10.1] 시설물의 종합 평가 기준	196
[표 10.2] 터널의 종합평가 결과 산정(개착터널) 예	197
[표 10.3] 터널의 종합평가 결과 산정(ASSM터널) 예	197
[표 10.4] 터널의 종합평가 결과 산정(NATM터널) 예	198
[표 11.1] 안전등급	201
[표 12.1]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공법 적정성 비교	207
[표 12.2] 누수에 대한 대책	209
[표 12.3] 재료열화 현상별 원인과 대책	210
[표 12.4] 콘크리트 라이닝의 보수·보강 공법 선정표	211
[표 12.5] 지반조건에 따른 일반주택의 피해 정도와 진동속도와의 관계(Langefors)	212
[표 12.6]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	212
[표 12.7] 국내에서 적용되는 진동허용치	213
[표 12.8] 근접시공의 예	213
[표 12.9] 근접시공 대책	214

그 립 차 례

[그림 2.1] 안전관리 업무 흐름도	21
[그림 3.1] 정기점검 흐름도	40
[그림 3.2]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흐름도	47
[그림 4.1] 정밀안전진단 흐름도	69
[그림 5.1] 터널 라이닝 시공방법에 따른 터널 분류	86
[그림 5.2] 균열 길이의 기록 예	97
[그림 5.3] T-법	99
[그림 5.4] Tc-To 법	99
[그림 5.5] BS법	100
[그림 6.1] 반발경도시험 및 측정기 점검 등의 절차	106
[그림 6.2] 초음파 전달속도시험 및 측정기 점검 등의 절차	112
[그림 6.3] 초음파 펄스 시험을 위한 탐촉자 배치 방법	115
[그림 6.4] 표면법에 의한 초음파 전달속도의 측정	116
[그림 6.5] 코어채취 방법 및 기기 점검 등의 절차	120
[그림 6.6] 전자기유도 방식에 의한 철근탐사장비의 구성	125
[그림 6.7] 전자파 레이더법에 의한 철근탐사장비의 장치 구성도	125
[그림 6.8] 철근탐사 및 장비 점검 등의 절차	126
[그림 6.9] 동-황산동 반전지의 단면	129
[그림 6.10] 철근부식도시험 및 측정기 점검 등의 절차	130
[그림 6.11] 자연전위의 측정방법	131
[그림 6.12] 측정범위의 표시	131
[그림 6.13] 드릴에 의한 탄산화깊이 측정	136
[그림 8.1] 부대시설 분류	159
[그림 8.2] 상태평가 결과 산정절차	174
[그림 9.1]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방법	187
[그림 10.1]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 산정절차	197

제 1 장

서 론

1.1 목 적

1.2 적용범위

1.3 용어 정의

제1장 서론

1.1 목적

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이하 「세부지침」이라 한다)은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령」이라 한다) 제13조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 고시 제2008-838호, 이하 「지침」이라 한다)에서 정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방법·절차 등에 관한 필요사항을 시설물별로 보다 상세히 제시하고 그 실시요령을 정하여 시설물에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이나 시설물 기능 및 성능저하, 상태 등을 신속·정확하게 조사·평가하고, 그에 대한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여 재해 및 재난을 예방하며, 시설물의 안전성 및 기능성을 보완·보전케 함으로써 시설물의 효용성을 증진시킴과 더불어 과학적 유지관리를 체계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2 적용 범위

본 「세부지침」은 「법」 제2조(정의) 및 「령」 제2조(시설물의 범위)의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시설물 중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물에 적용한다.

○ 1종 시설물

－도로터널

-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철도터널

- 고속철도 터널
- 도시철도 터널
- 일반철도 연장 1천미터 이상의 터널

－지하차도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 2종시설물

－도로터널

- 고속국도, 일반국도 및 특별시도, 광역시도의 터널
- 연장 500미터 이상의 지방도, 시도, 군도, 구도의 터널

－철도터널

- 일반철도로 특별시 또는 광역시 안에 있는 터널

－지하차도

- 연장 100미터 이상의 지하차도

터널 및 지하차도 시설물의 특성에 따라 본 「세부지침」의 서식을 적절히 응용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며, 본 「세부지침」에서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다음의 법규나 기준을 따른다.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터널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 지하차도관련 설계기준 및 표준시방서
-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한편, 본 「세부지침」에서 기술된 내용과 다르더라도 널리 알려진 이론이나 시험에 의해 기술적으로 증명된 사항에 대해서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적용할 수 있다.

1.3 용어 정의

「법」 및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용어 위주로 정리하였다.

○ 시설물(施設物)

건설공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구조물과 그 부대시설로서 1종 시설물 및 2종 시설물

○ 1종 시설물

도로·철도·항만·댐·교량·터널·건축물 등 공중의 이용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특별히 관리할 필요가 있거나, 구조상 유지관리에 고도의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¹⁾

○ 2종 시설물

1종 시설물외의 시설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물²⁾

○ 관리주체(管理主體)

관계법령에 따라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해당시설물의 소유자를 말한다. 이 경우 해당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 등에 따라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는 관리주체로 보며, 관리주체는 공공관리주체와 민간관리주체로 구분

○ 공공관리주체(公共管理主體)

- 국가·지방자치단체
-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 민간관리주체(民間管理主體)

공공관리주체외의 관리주체

○ 안전점검(安全點檢)

경험과 기술을 갖춘 자가 육안이나 점검기구 등으로 검사하여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조사하는 행위

○ 정밀안전진단(精密安全診斷)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과 결함의 원인 등을 조사·측정·평가하여 보수·보강 등의 방법을 제시하는 행위

○ 내진성능평가(耐震性能評價)

지진으로부터 시설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지진재해대책법」 제14조(내진설계기준의 설정)제1항에 따라 시설물별로 정하는 내진설계기준에 따라 시설물이 지진에 견딜 수 있는 능력을 평가하는 것

1) 「영」 제2조(시설물의 범위) 및 [별표 1] 참조

2) 「영」 제2조(시설물의 범위) 및 [별표 1] 참조

○ 도급(都給)

원도급·하도급·위탁 그 밖에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을 완료하기로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일의 결과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계약

○ 하도급

도급받은 안전점검이나 정밀안전진단 용역의 전부 또는 일부를 도급하기 위하여 수급인이 제3자와 체결하는 계약

○ 유지관리(維持管理)

완공된 시설물의 기능을 보전하고 시설물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높이기 위하여 시설물을 일상적으로 점검·정비하고 손상된 부분을 원상복구하며, 경과시간에 따라 요구되는 시설물의 개량·보수·보강에 필요한 활동을 하는 것

○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FMS)

「법」 제3조제2항제5호¹⁾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과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를 구축하기 위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이 시설물의 정보와 「법」 제9조제1항²⁾에 따른 안전진단전문기관, 제25조에 따른 한국시설안전공단과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³⁾에 따라 등록한 유지관리업자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

○ 하자담보책임기간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하자담보책임기간 또는 하자보수기간 등

○ 시설물관리체계(施設物管理體系)

시설물의 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등 유지관리를 함에 있어서 비용 및 시기를 최적화할 수 있도록 계획된 체계

○ 사전조사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주하여 실시하는 사람은 당해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 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는 행위

○ 현장조사

기존 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행위

○ 상태평가(狀態評價)

시설물의 외관을 조사하여 결함의 정도를 포함한 시설물에 대한 상태를 평가하는 행위

1) 「법」 제3조제2항제5호 :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련된 정보체계의 구축

2) 「법」 제9조제1항 : 안전진단전문기관의 등록 등

3) 「건설산업기본법」 제9조 : 건설업의 등록 등

- 안전성평가(安全性評價)

현장조사를 통하여 수집된 자료를 기초로 하고 설계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참고하여 시설물의 구조·수리·수문해석 등 안전성을 평가하는 행위
- 종합평가(綜合評價)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행위
- 안전등급(安全等級)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종합평가에 따른 당해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나타내는 등급
- e-보고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작성한 보고서를 보관 및 활용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에 의하여 작성한 보고서
- 복합시설물

기능과 역할이 각각 다른 개별 시설물들이 집합된 시설물
- 보수(補修)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
- 보강(補強)

시설물의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
- 장비관리(裝備管理)

점검 및 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를 유지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 및 “계량에관한법률”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하는 행위
- 기본과업(基本課業)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의 구분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과업
- 선택과업(選擇課業)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지침」에서 정하고 있는 과업으로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
- 현장 재료시험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

○ 실내시험(室內試驗)

시설물의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

○ 콘크리트의 상태변화

2005년 제정된 콘크리트표준시방서 유지관리편 참조

- 상태변화 : 초기결함, 손상, 열화 등을 총칭
- 초기결함 : 시공 시에 발생한 균열, 쿨드조인트, 초기균열 등
- 손 상 : 지진이나 충돌 등에 의해 균열이나, 박리 등이 단시간에 발생하는 것을 나타내며, 시간의 경과에 따라서 진행하지 않음.
- 열 화 : 구조물의 재료적 성질 또는 물리, 화학, 기후적 혹은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주로 시공 이후에 장기적으로 발생하는 내구성능의 저하현상으로써 시간의 경과에 따라 진행함.

○ 터널

지표면 하에 축조되는 도로나 공간으로 이용하는 지하구조물로서 단면적 2m²이상의 것을 말한다.

○ 도로 터널

도로법에 의한 도로상의 터널

○ 고속철도 터널

고속철도법에 의한 철도상의 터널

○ 도시철도 터널

도시철도법에 의하여 건설 또는 관리하는 철도상의 터널로서 터널의 연장은 도시철도 건설규칙에서 규정한 정거장이 포함된 지하터널 입출구부를 기준으로 함

○ 일반철도 터널

철도법에 의한 철도상의 터널

○ 지하구조물

지표면의 하부에 설치된 구조물

단, 지상건축물과 연결된 지하구조물은 건축물로 본다.

제 2 장

시설물의 안전관리

2.1 시설물 관리일반

2.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2.3 안전관리

2.4 진단측정장비 관리

2.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전조사

2.6 실시결과의 이행

제2장 시설물의 안전 관리

2.1 시설물 관리일반

2.1.1 시설물 관리 목적

시설물의 관리는 「법」 제4조 및 제11조의2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적, 보수·보강 결과의 통보내용과 「법」 제17조에 규정에 의하여 설계도서, 관련서류 등의 시설물 정보를 관리하며, 또한, 「지침」 규정에 따라 시설물에 대한 시설물관리대장을 작성으로 정확한 기록 및 자료 등의 보존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의 안전에 관한 상황 등에 관한 시설물의 관리일반을 목적으로 한다.

2.1.2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제출

관리주체는 「법」 제4조 및 「영」 제5조에 따라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소관 시설물별로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공공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조에 따라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민간관리주체는 「법」 제4조제3항 및 「규칙」 제3조에 따라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을 매년 2월 15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 제출은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 규정」(이하 “FMS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FMS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1.3 설계도서 등의 보존

관리주체는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감리보고서, 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보존하여야 하여야 한다.

- 관리주체는 시설물 관리를 위하여 설계도서, 시공관련자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자료, 보수·보강공사 자료 등을 보존하여야 한다.
- 「법」 제17조2항에 의하여 「지침」에 명시되지 않은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료는 관리주체가 보존하고 필요시 자료를 제공하도록 한다.

가.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수리·수문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1) 공통

- 준공보고서, 설계보고서
- 공사시방서(특별시방서 포함)
- 각종계산서(구조, 수리, 수문, 강재, 용량, 기전설비 등)
- 토질 및 지반조사 보고서
- 그 밖에 시공 상 특기한 사항에 관한 보고서

2) 설계도면

- 터널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강지보·Rockbolt·Shotcrete·Lining 도, 구조물도, 굴착공법 및 보조공법 도면, 보수도면, 기계설비·전기설비도면, 환기시설, 대피소, 갯문, 웅벽, 방수도, 배수도, 관리사무실, 계측 및 기기도 등
- 지하차도
위치도(또는 배치도), 평면도, 단면도(종·횡), 구조물도, 빔상세도, 굴착공법 및 보조공법 도면, 방수도, 배수도 등

나. 시설물관리대장

본 세부지침의 부록에 수록된 시설물관리대장을 참조하여 「법」 제16조 및 「영」 제16조의2제2항에 따른 “시설물정보관리종합시스템 운영규정”(이하 “FMS 운영규정”이라 한다)에 따라 해당 시설물의 관리대장을 작성한다.

부록의 시설물관리대장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 ① 기본현황
- ② 상세제원
- ③ 유지관리 이력

다. 시공관련 자료 등

1) 시공관련 자료

- ① 사진
 - 공사 현장 및 시설물의 정면·측면 사진
 - 주요 결함부 및 주요공종 시공 사진
- ② 공사지
- ③ 기타
 - 제작 및 작업도면 : 시설물 부재의 상세도면
 - 토질·지반조사 자료
 - 건설공사 안전점검 보고서 등
 - 주요 설계변경 내역, 중요부분 감독일보
 - 설계 및 시공회사, 시행자, 감독자

2) 품질관리 관련자료

- ① 재료증명서 : 시공재료의 종류, 등급, 품질을 기록한 공장 재료증명서
- ② 품질시험기록
- ③ 관리 및 선정시험 기록 등 각종 시험 기록
- ④ 시설물의 주요 구조 부위에 대한 계측 관련자료
 - 계측 대상 시설물, 계측위치, 계측기의 종류, 계측결과의 데이터베이스 등

3) 사고기록

- ① 사고의 날짜, 장소, 경위
- ② 사고의 원인 및 대책공법 등의 조치사항
- ③ 사고발생 당시 사진

4) 운영기록

터널 및 지하차도의 준공일로부터 현재까지의 전반적인 운영 상황을 기록한 자료

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법」 제6조 및 제7조에 따라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료와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¹⁾제2항에 따라 실시한 안전점검 실시자료 등 일체의 자료를 보존한다.

1) 일반

시설물의 점검 및 진단자료는 점검 및 진단 시 마다 그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당해 시설물의 규모, 공법, 점검 및 진단 실적(보고서 등)에 따라 자료를 수집하며,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 수집한다.

- 터널형상
- 지하수위 및 지반상태
- 통행제한사항(하중, 속도, 철도의 경우 열차 차단시간)
- 부대 시설물
- 환경조건(구조물의 내구성과 안전에 영향을 주는 조건)
- 기타(최고수위 등)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갱신

보수·보강 작업이나 개량작업 등으로 시설물의 구조가 변경된 경우는 시설물관리대장에 구체적인 내용과 치수 등 관련 사항을 기록한다.

마. 보수·보강공사 자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에 대하여 실시한 보수·보강공사 자료의 일체로서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 보수·보강의 경위
- 보수·보강 적용공법 및 적용범위
- 보수·보강 기간 및 시행자(감독, 시공자) 등

2.1.4 감리보고서,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 대장 작성·제출

「법」 제17조제1항에 따라 시설물의 발주자는 감리보고서를 공단에, 시설물의 시공자는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를 관리주체와 공단에, 관리주체는 시설물관리대장을 공단

1) 「건설기술관리법」 제26조의2(건설공사의 안전관리)

에 각각 제출한다.

감리보고서·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및 시설물관리대장의 제출은 FMS 운영규정에 따라 작성·제출한다.

중요한 보수·보강의 경우에도 같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가. 철근콘크리트 구조부 또는 철골구조부

나. 건축물의 내력벽·기둥·바닥·보·지붕틀 및 주계단

(단, 사이기둥·최하층바닥·작은보·차양·옥외계단 기타 이와 유사한 것으로 건축물의 구조상 중요하지 아니한 부분 제외)

다. 교량의 교좌장치(교량받침)

라. 터널의 복공부위

마. 하천제방의 수문문비

바. 댐의 본체, 시공이음부 및 여수로

사. 조립식 건축물의 연결부위

아. 상수도 관로이음부

자. 항만시설 중 갑문문비 작동시설과 계류시설의 구조체

2.1.5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및 유지관리의 실적 제출

관리주체 및 안전진단전문기관·유지관리업자는 「법」 제11조의2에 따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유지관리의 실적을 해당 실적이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규칙 별지 제 13호 서식에 따라 FMS를 이용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2.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계획수립

2.2.1 계획 일반

가. 목적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에 의하여 시설물의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은 현장조사 및 각종 시험에 의해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과 내재되어 있는 위험요인을 발견하고, 이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보수·보강 방법 및 조치방안 등을 제시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

관리주체는 「법」 제4조(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의 수립·시행 등)의 규정에 의한 소관 시설물별로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이고 일관성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실시될 수 있도록 한다.

성공적인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해서는 적절한 계획과 기법, 필요한 장비의 확보 그리고 책임기술자를 포함한 점검자의 경험과 신뢰성이 필요하며, 보이는 결함의 발견은 물론이고 발생 가능한 문제의 예측까지도 포함한다.

그러므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정확해야 할 뿐만 아니라 재해 및 재난의 예방적 차원에서 시설물의 과학적 관리체계 개발을 위하여 수행하여야 한다.

나. 계획수립 주요 검토내용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검토
-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간과 소요 작업시간의 예측
-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관계
- 재하시험 및 수중조사 등 선택과업에 대한 조사범위, 장비 및 인력 동원계획
- 비파괴 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의 실시 위치 및 시험 실시계획
- 붕괴유발부재, 피로취약부위 등과 같이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부재·부위
-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방법, 조사항목 및 범위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의 선정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라. 진단측정장비의 선정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 사용하는 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 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진단측정장비를 말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구조부재에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이 경우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방법과 진단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가지고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 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마. 관리기준이 변경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용 중인 시설물의 시설 관리기준 등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기준을 반영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범위

1) 일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는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시설물 전체를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 ① 복합시설물을 이루는 시설물의 일부가 완공 또는 사용승인 시기가 다른 경우
- ② 2종 시설물로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일부를 특별히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실시하는 경우
- ③ 시설물의 용도상 구조 및 기능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시설물
- ④ 기타, 다른 법령에 의해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수준을 주기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⑤ 기타 실시범위에 대한 세부사항은 세부지침에서 규정한다.

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

터널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범위에 대한 세부적인 대상시설은 [표 2.1]과 같다.

- ① 기본 시설물을 제외한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은 해당 시설물(건축물, 옹벽 등)의 세부지침에 따라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대상 시설물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에서 해당 시설물에 따라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 ③ 부대 시설물이 「영」 제2조제1항에 따른 1종·2종 시설물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법」 제6조에 따라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④ [표 2.1]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대상시설물의 범위를 상기의 1) 일반에서 ①항 내지 ④항에 의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과업지시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표 2.1] 터널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 범위

구 분	시설물명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비 고
		정기점검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기본 시설물	◦ 본선라이닝	○	○	○	
	◦ 갱문	○	○	○	
	◦ 개착터널	○	○	○	
	◦ 지하차도	○	○	○	
	◦ 지하정거장	○	○	○	
부대 시설물	◦ 연직갱 및 경사갱	○		○	
	◦ 환기구	○		○	
	◦ 피난연락갱	○		○	
	◦ 연결터널(환기시설)	○		○	
	◦ 갱구부옹벽	○		○	

2.2.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준비 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를 위하여 준비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작성

공공관리주체 및 민간관리주체가 소관 시설물에 대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발주할 때에는 「법」 제6조제1항 및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이 성실히 수행되도록 지침 및 본 세부지침을 준수하여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지시서 등의 검토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지침 3.9.2절에 따른 사전검토 결과 당해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지침 및 본 세부지침과 위배되는 경우에 그 내용을 관리주체에게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를 위한 준비 사항

- ① 설계도면 검토 및 숙지
- ② 구조물의 특성 파악
- ③ 구조물의 이력 숙지
- ④ 주요 결함사항 및 상태 파악
- ⑤ 현장 주변 환경 숙지
- ⑥ 공동 혹은 위탁수행 등의 필요성 결정
- ⑦ 정밀조사 대상부위 선정
- ⑧ 비파괴시험 및 재하시험(계측) 적정성 여부 판단 및 범위 결정
- ⑨ 수중점검의 범위 결정
- ⑩ 인력투입 계획 결정
- ⑪ 접근방법 및 장비사용계획 결정
- ⑫ 교통통제 계획 결정
- ⑬ 수행일정 계획 결정
- ⑭ 작업안전 확보 계획 수립 및 안전사고 응급 대처방안 확립
- ⑮ 기타 협조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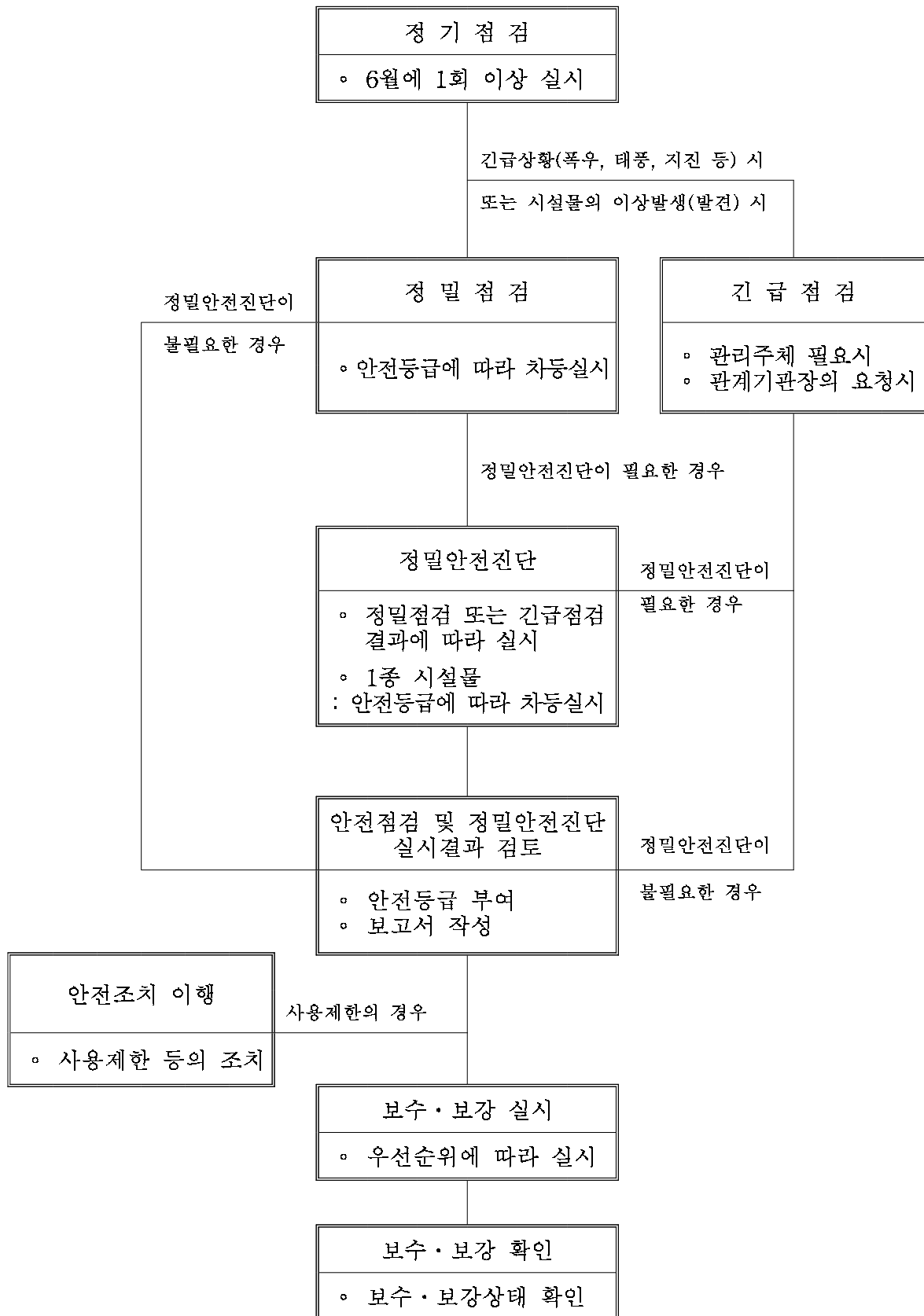
라.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 할 때의 고려 사항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위한 조사·시험 항목을 선정할 때는 다음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① 시설물에 대한 구조적 특수성 검토
- ② 최신 기술과 실무 경험의 적용
- ③ 책임기술자는 「영」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자격기준에 따라 선정

마.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 및 진단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그림 2.1] 안전관리 업무 흐름도

2.2.3 예산의 확보

「법」 제33조 및 「영」 제25조에 따라 공공관리주체는 매년 소관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한다. 또한 민간관리주체도 시설물 및 공중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 적절한 유지관리를 하여야 한다.

유지관리 예산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비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이 비용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가기준을 기초로 한다.

- 유지관리 예산은 시설물의 안전성·기능·사용빈도·성능 등에 의하여 보수·보강·교체 등이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시설물에 대하여 우선 계상되어야 한다. 이 경우 중대한 결함이 있는 시설물에 대하여는 유지관리·보수·보강·교체비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되, 가급적 당해 시설물의 기능을 유지시키는 방안이 우선적으로 강구되어야 한다.
-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전산기법을 이용한 시설물관리체계에 의하여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과학적으로 시행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유지관리 예산 및 보수·보강 시기 등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2.2.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자의 자격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자신의 책임 하에 실시할 수 있는 사람(이하 “책임기술자”라 한다)은 「영」 별표 2에 따른 기술자격자로서 「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한 사람으로 하여금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전반에 대한 총괄책임자로서 설계, 안전성 평가, 성능회복과 유지관리를 포함한 공학적 및 기술적인 면에서의 전반적인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영」 제7조제2항에 따라 책임기술자의 감독아래 정밀안전진단을 하려는 사람은 「영」 별표 3의 등록기준에 규정된 기술인력의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으로 「규칙」 제4조에 따른 교육기관에서 시행하는 해당분야의 정밀안전진단 교육과정을 10일 이상 이수하여야 한다.

2.3 안전관리

2.3.1 일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기구와 장비를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본 「세부지침」에서 열거되지 않은 사항이라도 관련규정에 따라 안전하게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다.

2.3.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 보호 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 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장구 및 기계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가. 안전관리 조직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기관은 종사자를 중심으로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도록 하며, 협력업체가 있는 경우에는 협력업체를 포함하도록 하고, 안전관리책임자를 선임하도록 한다.

나. 안전교육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 시설물의 특성과 현장조사의 난이도, 위험도를 고려하여 안전수칙 등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하도록 한다.

다. 보호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는 노동부장관 검정 합격품을 사용하고, 적절한 보호구를 착용하며, 적합한 안전시설을 설치하여 사용한다.

다음의 각 사항의 작업 시에는 반드시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 높이 2m이상의 추락의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벨트를 착용한다.
- 낙하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안전모 및 안전화를 착용한다.

- 분진 등이 현저하게 발생되는 장소에서는 방진 마스크를 착용한다.
- 유해물질 및 가스발생, 산소결핍 등 질식위험이 있는 장소에서는 방독 마스크 또는 방독면을 착용한다.
- 그라인더 작업 등 비산물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은 보안경 또는 보안면을 착용한다.
- 현저한 소음이 발생되는 작업 장소에서는 귀마개를 착용한다.
- 수상 부분에서 작업을 할 때에는 구명장구 및 비상로프를 착용, 휴대한다.
- 기타 위험 요소가 있는 장소에서의 작업 시에는 적절한 보호용구를 사용한다.

라. 안전사고의 처리

안전관리자는 안전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취하고 신속하게 인근 병원으로 후송하며, 관련법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마. 안전수칙

- 일기 조건으로 작업 수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작업을 하지 아니한다.
- 위험한 작업 시에는 안전관리자가 입회하도록 하며,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 작업 실시 전에 작업에 지장을 주는 요인이 있을 경우 관리주체의 협조를 얻어 안전 조치를 취한 후에 작업을 실시한다.
- 공공의 안전과 관계가 있을 경우에는 적절한 조치(출입 금지, 접근 금지 등의 표지판 설치, 교통신호수, 감시인 배치 등)를 한다.
- 안전관리자는 위험물 저장소, 통제구역 등의 출입에 대하여는 관리주체와 사전 협의를 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한다.
- 야간 또는 어두운 곳에서의 작업 시에는 충분한 밝기의 조명 시설을 갖추어야 하고 식별이 용이하도록 조치를 하여야 하며, 수시로 작업자 상호간에 연락을 취할 수 있도록 한다.
- 밀폐된 장소에서의 산소결핍이 예상되는 장소는 작업 전에 반드시 산소 농도를 측정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한다.
- 유해 가스 발생 및 잔류가 예상되는 장소는 반드시 사전에 정밀 측정기에 의한 측정 및 확인,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한다.
- 전기를 사용 할 경우에는 감전사고 예방 조치를 취한다.
- 각종 측정장비의 사용 시 주의사항을 숙지하여야 하며 무리한 사용과 조작을 하지 않는다.
- 장비 사용에 있어 취급 자격이 요구되는 장비는 유자격자 이외에는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

- 점검차량을 사용할 때는 굴절붐(Boom) 및 암(Arm) 회전 시 주의하고 자체적으로 작성한 안전수칙에 따라 장비운용을 시행한다.

2.3.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에 교통통제와 작업 공간 확보 등을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2.4 진단측정장비 관리

2.4.1 진단측정장비 선정 요건

진단측정장비는 접근에 필요한 장비와 실제조사, 시험 및 측정을 수행하는데 사용되는 장비를 말하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수행하는 사람은 구조 부재에 접근할 가장 편리하고 안전한 진단측정장비를 선정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방법과 진단측정장비의 선정에 있어 책임기술자는 사전에 현장조사를 하여야 하며, 도면이 있는 경우는 도면을 통하여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하여 가장 알맞은 진단측정장비가 선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2.4.2 진단측정장비 관리

가. 관리일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 사용하는 진단측정장비는 소요성능 및 측정의 정밀·정확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여야 하며, 「국가표준기본법」¹⁾ 및 「계량에 관한 법률」²⁾에 의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또한, “「국가표준기본법」 제14조(국가교정제도의 확립) 규정에 의한 국가측정표준과 국가사회의 모든 분야에서 사용하는 측정기 기간의 소급성 제고를 위하여 측정기를 보유 또는 사용한 자는 주기적으로 해당 측정기를 교정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교정대상 및 적용범위를 자체규정으로 정하여 운용할 수 있다”고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 제41조(교정대상 및 주기)에 규정되어 있다.

나. 검·교정 대상 진단측정장비

「규칙」 별표1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측정장비는 5분야 19종으로 이 진단측정장비 중에서 「국가표준기본법」 규정에 의한 교정대상이 되는 진단측정장비는 [표 2.2]의 6종이 해당된다.

1) 「국가표준기본법」 법률 제7219호 2004.9.23

2) 「계량에 관한 법률」 법률 제8486호 2007.5.25

[표 2.2] 법정 진단측정장비의 교정주기

전문분야	진단장비명	교정주기 (월)	비 고
공통	염분측정장비	12	
	도막두께측정장비	12	
	측량기	수준기	레벨
		각도측정기	테오드라이트
		거리측정기	광파측정기
교량 및 터널	내공변위측정기	12	
항만	유속계	12	
건축	진동측정기	18	

한편, 교정주기 및 대상은 매년 변동이 있으므로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요령”¹⁾(이하 “운영요령”이라 한다) 및 “국가교정기관지정제도운영세칙”²⁾(이하 “운영세칙”이라 한다) 등에서 확인이 필요하다.

다. 교정주기의 설정

“운영세칙”에서 정한 표준교정주기는 가장 보편적인 상황 하에서 사용하였을 때 그 측정기의 정밀정확도가 유지될 수 있는 기간을 추정한 교정주기이다.

“운영세칙”에서 25개 측정분야 총 448종의 측정기에 대하여 표준교정주기를 정하고 있으나, 각 산업체에 측정기를 사용하고 있거나 보유하고 있는 자는 측정기의 정확도, 안정성, 사용목적, 환경조건 및 사용빈도를 감안하여 주기를 조정토록 권고하고 있다.

라. 기타 진단기기의 검·교정

「법」에서 정하고 있는 진단측정장비 이외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사용되는 각종 기기 또는 장비 및 센서 등에 대해서도 “운영요령” 및 “운영세칙”에 근거하여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서 사용되는 법정 진단측정장비 이외의 검·교정이 필요한 대표적인 진단기기는 [표 2.3]과 같다.

1) “국가교정기관 인정제도운영요령” 산업자원부 고시 제2007-48호 2007.4.2

2) “국가교정기관 지정제도운영세칙” 기술표준원 고시 제2005-201호 2005.4.16

[표 2.3] 법정 진단측정장비 이외의 진단기구 교정주기

진단기기	교정주기 (월)	비 고
디지털고무경도측정기	12	
버어니어캘리퍼스	12	
이산화탄소측정기	12	
산소측정기	12	
전자 저울	12	
디지털 토크렌치	12	
토크렌치	6	볼트 체결력 측정

마. 교정기관

「국가표준기본법」에 의거 기술표준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KOLAS¹⁾으로 부터 국가교정기관 및 시험검사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교정기관에 해당 진단측정장비 및 각종 기구 및 센서 등에 대해서 검·교정을 받아야 한다.

1) KOLAS : 한국인증기구(Korea Laboratory Accreditation Scheme)

KOLAS는 국가표준제도의 확립 및 산업표준화제도 운영, 공산품의 안전/품질 및 계량·측정에 관한 사항, 산업기반 기술 및 공업기술의 조사/연구 개발 및 지원, 교정기관, 시험기관 및 검사기관 인정제도의 운영, 표준화 관련 국가간 또는 국제기구와의 협력 및 교류에 관한 사항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기술표준원 조직으로서, 기술표준원장이 KOLAS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2.5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사전조사

2.5.1 사전조사 계획 수립

사전조사 계획의 수립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기본방향 설정 단계에서 관리주체와 충분한 협의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점 조사 및 분석 대상을 도출하고,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규모를 결정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관리주체는 최대한 협조를 해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규모는 협의 결과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이지만 관리주체의 예산 규모에 의해서 왜곡 축소되어서는 아니 된다.

2.5.2 사전조사 실시계획 수립

가.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 사전검토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용역을 수주하여 실시하는 사람은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본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사전검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사전검토 보고서 작성은 부록에 수록된 「사전검토 보고서 예시」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 대상시설물의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범위
- 유지관리 자료 보유 현황
- 과업의 범위
 - － 기본과업 항목
 - － 선택과업 항목
-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 기타 법령, 지침 및 세부지침과의 부합여부

한편, 관리주체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해당시설물의 정기점검을 발주하여 실시하는 경우에도 「사전검토 보고서 예시」를 참고하여 수행할 수 있다.

나. 과업수행계획서 작성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 하여야 한다.

과업수행계획서는 다음에 열거한 순서로 하여 해당되는 사항을 일목요연하게 작성하여야 한다.

가. 과업의 목적

나. 과업의 개요

- 1) 대상 시설물 현황
- 2) 과업범위
- 3) 과업기간

다. 과업 수행방법

-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가) 조사 및 시험·측정
(나) 상태 평가
(다) 안전성 평가
(라) 종합평가
(마) 보수·보강 및 유지관리 방안
- 2) 조사·시험관련 진단측정장비

라. 과업수행 일정

마. 과업수행 조직

- 1) 과업수행 조직체계
- 2) 인원투입 계획

바. 안전관리 계획

사. 사전검토 보고서 내용

다. 서류 관리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2.6 실시결과의 이행

2.6.1 중대한 결함의 분류

「법」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를 통보받은 관리주체는 실시결과 구조안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중대한 결함사항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5조 및 「영」 제16조에 따라 통보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그 결함사항에 대한 보수·보강 등의 필요한 조치에 착수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착수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이를 완료하여야 한다.

- ① 시설물 기초의 세굴
- ② 교량 교각의 부등침하
- ③ 교량 교좌장치(받침장치)의 파손
- ④ 터널 지반의 부등침하
- ⑤ 항만 계류시설 중 강관 또는 철근콘크리트 파일의 파손·부식
- ⑥ 댐 본체의 균열 및 시공이음의 시공불량 등에 의한 누수
- ⑦ 건축물의 기둥·보 또는 내력벽의 내력손실
- ⑧ 하구둑 및 제방의 본체, 수문, 교량의 파손·누수 또는 세굴
- ⑨ 폐기물매립시설의 차수시설 파손에 의한 침출수의 유출
- ⑩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중성화(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 ⑪ 절토·성토사면의 균열·이완 등에 따른 옹벽의 균열 또는 파손
- ⑫ 기타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으로서 [표 2.4]와 같다.

[표 2.4] 시설물별 구조안전에 영향을 주는 결함

시 설 물 명	주요부위의 증대한 결함
1. 교량	- 주요 구조부위 철근량 부족 - 주형(거더)의 균열 심화 - 철근콘크리트 부재의 심한 재료분리 - 철강재 용접부의 불량용접 - 교대·교각의 균열발생
2. 터널	- 벽체균열 심화 및 탈락 - 복공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3. 하천	- 수문의 작동불량
4. 댐	- 물이 흘러넘치는 부분의 콘크리트 파손 및 누수 - 기초지반의 누수,파이핑 및 세굴 - 수문의 작동불량
5. 상수도	- 관로이음부의 불량접합 - 관로의 파손, 변형 및 부식
6. 건축물	- 조립식 구조체의 연결부실로 인한 내력상실 - 주요 구조부재의 과도한 변형 및 균열심화 - 지반침하 및 이로 인한 활동적인 균열 - 누수·부식 등에 의한 구조물의 기능상실
7. 항만	- 갑문시설 중 문비작동시설 부식 노후화 - 갑문 충·배수 아키덕트 시설의 부식 노후화 - 잔교·시설 파손 및 결함 - 케이슨구조물의 파손 - 안벽의 범선변위 및 침하

2.6.2 중대한 결함의 정도

터널 시설물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중대한 결함의 적용 범위는 다음과 같다. 다만, 시설물의 전반적인 상태 및 환경 여건에 따라 책임기술자가 조정할 수 있다.

1)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 터널지반의 부등침하 정도가 [표 11.1]의 안전등급 기준이 “D” 이하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

2) 시설물의 철근콘크리트의 염해 또는 탄산화에 따른 내력손실

- 8.3절의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의 재질변화에서 콘크리트 탄산화 잔여 깊이 또는 콘크리트 전염화물 이온량 등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이 “d” 판정으로 철근노출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이 “e”를 포함하는 경우

3) 벽체균열 심화 및 탈락

- 8.3절의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의 균열에서 진행성 균열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이 “d” 이하인 경우, 고정 균열은 면적율이 20%이상으로 상태평가 기준이 “e”인 경우
- 8.3절의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의 파손 및 손상에서 면적율이 20%이상으로 상태평가 기준이 “d” 이하인 경우

4) 복공부위 심한 누수 및 변형

- 8.3절의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의 누수에서 상태평가 기준이 “d” 이하이며, 토립자가 함께 나와 구조적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거나 고드름 및 측빙 등으로 차량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 터널의 변형정도가 [표 11.1]의 안전등급 기준이 “D” 이하로 판정할 수 있는 경우

제 3 장

안전 점검

3.1 안전점검 일반

3.2 정기점검

3.3 정밀점검

3.4 긴급점검

3.5 초기점검

제3장 안전점검

3.1 안전점검 일반

3.1.1 안전점검 종류

안전점검은 「법」 제6조에서 정기점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으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지침」 제3장에서는 정기점검, 정밀점검은 초기점검과 정기적 정밀점검으로 긴급점검은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다.

3.1.2 안전점검 시 고려사항

효과적인 안전점검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현장의 사전조사를 통해 철저한 점검계획이 수립되고 적절한 점검방법이 강구되어야 함은 필수적이며,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 점검의 범위 및 내용, 장비에 관한 사항
- 시설물의 기초와 주위지반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
- 점검대상 시설물의 설계자료, 관리이력
- 구조적 특성 및 공용시 문제발생 여부
- 시설물의 규모 및 안전점검의 난이도
- 최근의 안전점검 기술 및 장비 등의 적용
- 안전점검자의 자격 및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 기상조건, 현장여건 및 주변환경
- 시설물의 운영계획 및 타 기관과의 협조사항
- 기타 관련사항

3.1.3 안전점검 계획

「지침」 3.6.1항의 규정에 따르고, 이의 계획수립을 위해서는 사전조사(현장답사, 기본자료 수집)가 필요하며, 안전점검 계획에 포함하여야 할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단, 필요에 따라서 안전관리에 대한 사항은 관리주체에서 정하고 있는 안전관리 규정에 따라 시설물별 안전관리계획서를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한다.

- 점검형식의 결정
- 점검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인원, 장비 및 기기의 결정
- 기 발생된 결함의 확인을 위한 기존 점검자료의 검토
- 점검기간과 계획된 작업시간의 예측
- 타 기관 또는 주민과의 협조체계
- 현장기록의 서식을 취합하고 대표부위에 대한 적절한 사진 스케치
- 비파괴시험을 포함한 기타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 여부의 판단
- 시설물의 주변 환경에 대한 조사여부, 조사항목 및 범위의 판단
- 기타 관련사항

3.2 정기점검

3.2.1 정기점검 목적

정기점검은 경험과 기술을 갖춘 사람에 의한 세심한 외관조사 수준으로 점검을 실시하며, 시설물의 기능적 상태를 판단하고 시설물이 현재의 사용 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관찰로 이루어진다.

3.2.2 정기점검 절차

점검자는 시설물의 전반적인 외관형태를 관찰하여 중대한 결함을 발견할 수 있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외관상 확연히 나타나는 손상 및 결함은 특기사항으로 야장에 기입하고, 상태평가 결과는 매기지 않는다.

점검자 및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법」 제11조에 따라 즉시 관계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3 정기점검 방법

가. 정기점검 시기

관리주체는 소관 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제1항 및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기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 안전점검 실시 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보수·보강 공사나 철거 등의 사유로 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를 연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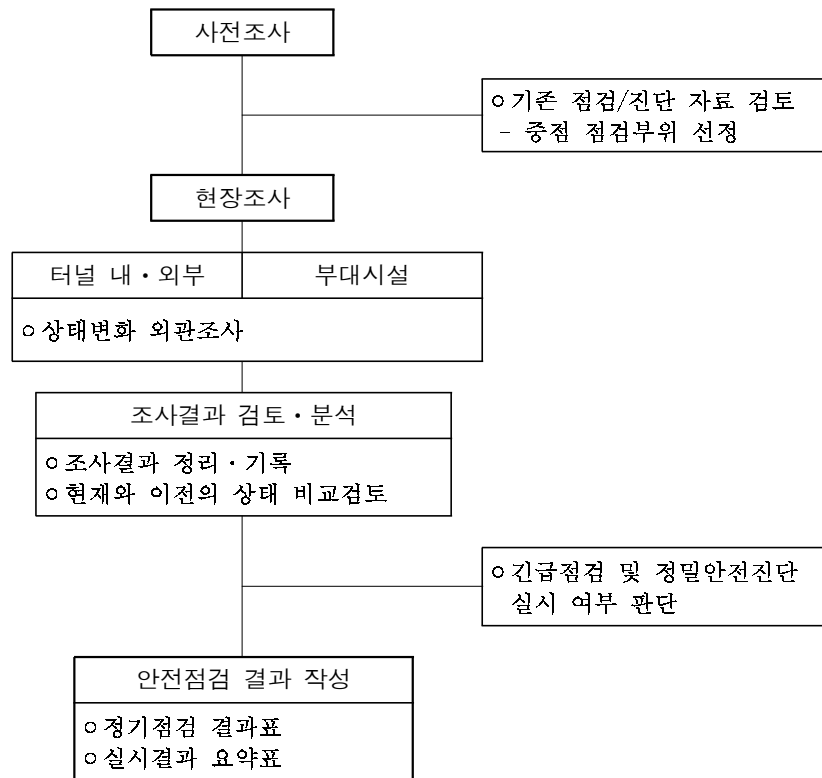
- ① 정기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로부터 6개월에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 ② 정밀점검, 긴급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실시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주택법시행령」 제65조에 따른 안전점

검으로 갈음한다.

- ③ 시설물의 철저한 정기점검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여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나. 정기점검 실시범위

터널 시설물의 정기점검 실시범위는 [표 2.1]에서 전체 시설물(기본 및 부대시설)에 한한다.



[그림 3.1] 정기점검 흐름도

3.2.4 정기점검 실시결과의 이용

관리주체는 정기점검 실시결과 필요할 경우에는 결함의 정도에 따라 긴급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3.2.5 정기점검 결과표 작성

정기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지체없이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정기점검 결과 및 조치해야할 사항은 정기점검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야 하며, 작성요령은 다음을 참조한다.

가. 정기점검 결과표

정기점검 결과표에는 시설물 명칭과 관리주체, 정기점검 결과의 총평 및 건의사항 등을 포함하여야 하며, 건의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차기 정기점검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나.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의 작성 요령은 다음과 같다.

- ①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 ②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 ③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다. 외관조사 사진

외관조사에서 조사된 상태변화 등에 대한 사진으로 부위 및 부재별로 구분하여 요약설명이 첨부되어야 하며, 전차 점검결과와의 비교, 구분되도록 구성되어야 한다.

- 보수·보강이력에 대한 확인
- 손상 및 결함의 진행성 여부의 파악
- 조사시점 발생되어 있는 손상 및 결함에 대한 유지관리 도면 작성

○○터널 정기점검 결과표

200 . . .

1. 시설물명 :
 - 1.1 주 용 도 :
 - 1.2 종 별 :
 - 1.3 준공년월 : 년 월 일 (년 경과)
2. 관리주체 :
3. 주 소 : (-)
4. 시설물 위치 : (-)
5. 점검의 목적 :
6. 점검 결과 총평 및 건의 :
7. 점 검 기 간 : 20 . . . ~ 20 . . . (일간)
8. 점 검 기 관 :
9. 책임 기술자 : (서명)

※ 본 결과표 다음에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등의 순서로 첨부

정기점검 실시결과 요약표

부재(부위)	점 검 결 과	조치 필요사항

※ 작성요령

1. 부재(부위)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가 발견된 부재(부위)의 위치 또는 명칭
2. 점검결과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을 간단히 기입
3. 조치필요사항 : 상태변화(결함, 손상 및 열화 등) 내용에 대한 필요한 조치내용 기입

<기입 예>

· 보수실시 (공법제시)
· 보강실시 (공법제시)
· 주의관찰 필요 (관찰주기 · 방법 제시)

3.3 정밀점검

3.3.1 정밀점검 목적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현 상태를 정확히 판단하고 최초 또는 이전에 기록된 상태로부터의 변화를 확인하며, 구조물이 현재의 사용요건을 계속 만족시키고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밀한 외관조사와 간단한 측정·시험장비로 필요한 측정 및 시험을 실시한다.

3.3.2 정밀점검 절차

- ① 외관조사 및 측정·시험 결과와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서 발견된 결함의 진전 및 신규 발생을 파악하여 시설물의 주요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와 상태평가 결과와 비교·검토하여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② 결함부위 등 주요 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③ 내진설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 ④ 시설물에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발생하는 등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부위에 대하여 안전성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 ⑤ 정밀점검 실시결과 결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는 등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점검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3.3 정밀점검 시기

관리주체는 소관시설물에 대하여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하여야 하며, 「법」 제4조에 따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계획 수립시 정밀점검 실시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보수·보강 공사나 철거 등의 사유로 정밀점검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밀점검의 실시시기를 연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다음 표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점검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표 3.1] 정밀점검 실시주기

안전등급	정밀점검	
	건축물	그 외 시설물
A 등급	4년에 1회 이상	3년에 1회 이상
B·C 등급	3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D·E 등급	2년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 ① 건축물에는 그 건축물의 부대시설인 옹벽과 절토사면을 포함하며, 항만시설물 중 썰물시 바닷물에 항상 잠겨있는 부분은 4년에 1회 이상 정밀점검을 하여야 한다.
- ② 최초로 실시하는 정밀점검은 시설물의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 사용승인 포함)을 기준으로 3년 이내(건축물은 4년 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③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을 받은 경우 그 날(완료일)을 기준으로 정밀점검의 실시주기를 정한다. 또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과 중복되는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3.3.4 정밀점검 과업

가. 과업의 구분

정밀점검은 「지침」 3.8항에 따라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정밀점검(긴급점검 포함)의 과업 구분은 [표 3.2]와 같다.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점검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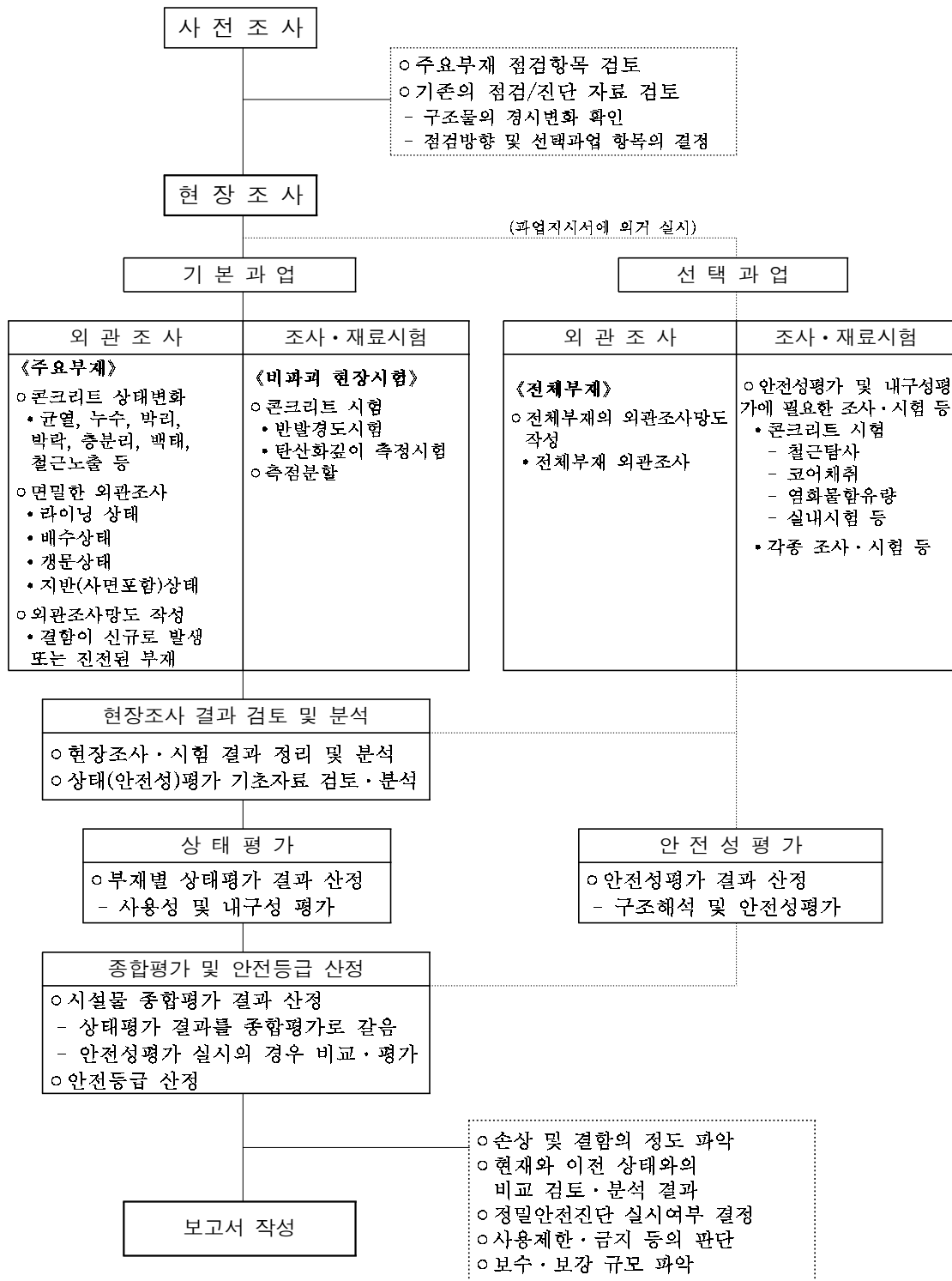
[표 3.2] 정밀점검 과업 내용

과업항목	기본과업	선택과업 (필요시)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보강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 구조·지반 해석 등 (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충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 균열, 도장상태, 부식상태 등 •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물리탐사 •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 재료시험 결과 분석 •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
안전성 평가	-	•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 해석 등 안전성 평가 •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보수·보 강 방법	-	• 보수·보강 방법 제시
보고서 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나. 정밀점검 실시범위

터널 시설물의 정밀점검 실시범위는 [표 2.1]의 기본시설물에 한한다.

- 본선라이닝
- 갯문
- 개착터널
- 지하차도
- 지하정거장



[그림 3.2]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 흐름도

3.3.5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이용

- ① 정밀점검 결과 결함(손상) 및 열화 등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여 정밀안전진단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책임기술자는 관리주체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 ② 이의 보고를 받은 관리주체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3.3.6 정밀점검 결과표 작성

정밀점검을 실시한 사람은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정밀점검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을 다음의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보고서 서두에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정밀점검 결과표

정밀점검 결과표에는 해당시설물의 기본현황과 실시결과 요약을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현황 라.참고사항」에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차기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 점검결과에 따른 보수·보강의 필요여부 판단을 위한 정밀안전진단 실시 여부 등에 관한 사항
- 점검결과 「령」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을 기재

나. 시설물 현황표

대상 시설물의 기본현황을 기술하는 것으로 서식의 기타 란에는 대상 시설물의 종·평면도 및 중점 점검사항 등을 작성하며, 필요시 별도의 별지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특히, 시설물 현황표 구분에서 시설물 번호는 “FMS” 상에서 부여하는 고유번호이며, 관리번호는 관리주체에서 유지관리를 위하여 정한 관리번호를 말한다. 중점 점검사항은 다음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붕괴유발부재
- 보수·보강부위 등

○○터널 정밀점검 결과표

1. 기본현황

가. 일반현황					
용역명		점검/진단기간			
관리주체명		대표자			
공동수급		계약방법			
시설물 구분		종 류		종 별	
준공일		점검(진단) 금액(천원)		안전등급	
시설물 위치		시설물 규모			
나. 점검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점검(진단) 주요결과					
주요 보수·보강					
다.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과업 참여기간	기술등급		
라. 참고사항					

2. 결과 요약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 • • • •	
책임기술자 : (서명)	

가. 정밀점검 외관조사 결과 기본사항

상태평가 결과 및 보수·보강				상태평가 결과 :
결함발생 부재	상태 평가 결과	결함종류	보수·보강(안)	

나.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평가 수행 부재	해석방법	안전성평가 결과 요약	안전율	안전성평가 결과
BOX	강도설계법			
	허용응력법			

다. 내진성능 검토 수행 여부

검토대상 부재	설계적용 여부	결과	검토결과 요약
	Y/N		

라. 현장시험 (비파괴 및 추가시험)

시 험 명	시험 부위	시험 결과	책임기술자 의견
○ 콘크리트 비파괴			
○ 물리탐사			
○ 내공변위			
○			
○			
○			

○○터널 현황표

작성일 : 년 월 일

터널명			
노선명		시행청	
시점		중점	
터널형식		관리주체	
차선수		환기방식	
연장		설계사	
내공단면		시공사	
배수형식		감리사	
종단기울기		착공	
평균선형		준공	
연결통로		개문형식	
주요공법		보조공법	
기타	※ 종·평면도 ※ 중점 점검사항(보수·보강부위, 계측관리부위 등) ※ 별지 이용		

※ 도로터널의 경우

○○터널 현황표

작성일 : 년 월 일

터널명		관리주체	
선명		구간	
위치		연장	
소재지		준공년도	
종단구배		등급	
곡선반경		시공사	
터널형식		착공일자	
열차운행회수		준공일자	
배수형식		개문형식	
단·복선		공법	주요
			보조
기타	※ 중·평면도 ※ 중점 점검사항(보수·보강부위, 계측관리부위 등) ※ 별지 이용		

※ 철도터널의 경우

○○지하차도 현황표

작성일 : 년 월 일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시설물번호		
준공년도			관리번호		
위 치					
설계하중			노선명(이정)		
제원	연장				
	폭				
BOX 구간	연장		U-TYPE 구간	연장	
	토포고			옹벽 높이	
통과높이			펌프장유무		
신축이음유무			관리주체		
기 타		※ 종 · 평면도 ※ 중점 점검사항(보수 · 보강부위 등을 기재) ※ 별지 이용			

3.3.7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시 세부지침 내용의 수록을 자제하여 실시결과 보고서 분량이 크게 되지 않도록 한다. 정밀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본 세부지침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11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나. e-보고서 작성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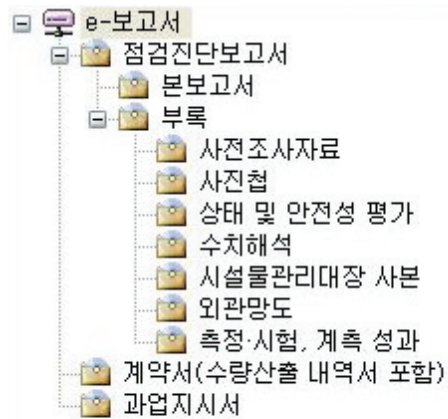
1) 일반

e-보고서는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를 보관 등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전자매체(PDF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 e-보고서에는 조사내용, 결과분석 등을 열람할 수 있도록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되는 사진(칼라) 또는 동영상(칼라) 등은 결함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e-보고서와 서식에서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사진 및 동영상의 촬영부위를 외관조사망도에 표기하고, 사진 및 동영상 파일명에는 외관조사망도의 도면번호를 기입한다.
- e-보고서에는 시설물 안전성평가를 위한 입·출력 자료 전체를 포함하여야 하며, 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결함에 대한 해석이 가능하도록 상세하고 명확하여야 한다.

2) e-보고서의 구성

e-보고서 구성은 다음의 내용에 맞게 구성되어야 하며, 폴더명 및 파일명은 식별 가능한 체계를 갖추어 작성해야 한다.



※ “점검진단”이란 정밀점검, 긴급점검, 정밀안전진단을 말한다.

3) 멀티미디어 파일 형식

이미지 파일은 반드시 본문에 포함하되, 동영상 파일이 첨부될 경우에는 별도의 폴더에 수록하여야 하며, 포함된 동영상은 파일의 제목 및 폴더 위치를 명시하여야 한다.

[표 3.3] 이미지 및 동영상 파일의 종류

구 분	파일의 종류
이미지	*.bmp, *.gif, *.jpg, *.tiff
동영상	*.wmv, *.avi (Windows에 재생 가능한 파일)

3.4 긴급점검

긴급점검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한 때 또는 관계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관리주체에게 요청한 때에 실시하는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며, 실시 목적에 따라 손상점검과 특별점검으로 구분한다.

3.4.1 손상점검

손상점검은 재해나 사고에 의해 비롯된 구조적 손상 등에 대하여 긴급히 시행하는 점검으로 시설물의 손상 정도를 파악하여 다음의 사항 등을 판단하며, 점검자는 사용제한 및 사용금지가 필요할 경우에는 즉시 관리주체에 보고하여야 하며, 관리주체는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① 긴급한 사용제한 또는 사용금지의 필요 여부
- ② 보수·보강의 긴급성, 보수·보강 작업의 규모 및 작업량 등을 결정
- ③ 필요한 경우 안전성평가를 실시
- ④ 점검서식은 정밀점검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점검의 범위·내용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
- ⑤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

3.4.2 특별점검

특별점검은 기초침하 또는 세굴과 같은 결함이 의심되는 경우나, 사용제한 중인 시설물의 사용여부 등을 판단하기 위해 실시하는 점검으로서 점검 시기는 결함의 심각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① 특별점검은 문제점 발생부위 및 붕괴유발 요인 등 중점 유지관리 사항을 파악하고, 향후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시 상태 및 안전성 평가의 기초자료인 각종 초기 값들을 구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 ② 점검서식은 정밀점검 서식에 준하여 작성하되 점검의 범위·내용 및 특성에 따라 조정 가능하다.
- ③ 정밀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

3.5 초기점검

3.5.1 초기점검 목적

「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초기점검의 목적 및 절차 등에 관한 내용은 다음과 같으며, 초기점검의 중요성을 감안 할 때 규정된 일반사항 이외 추가과업의 수행으로 그 목적 및 절차 등의 결과로 부터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협의되어야 한다.

- ① 관리주체가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하는데 필요한 초기치와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실시한다.
- ② 시설물의 전 부재에 대한 조사·관찰로 현재 발생한 결함 및 장래 발생하기 쉬운 결함을 조사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중점유지관리 항목을 파악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3.5.2 초기점검 실시

가. 초기점검의 실시

- ① 초기점검은 정밀점검 및 긴급점검을 실시할 수 있는 책임기술자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 수행하여야 한다.
- ② 2001.7.30 이전 입찰 공고된 시설물과 구조형태가 변화된 시설물은 준공 또는 사용승인(임시사용 포함)후 6개월 이내에 정밀점검 수준의 안전점검(이하 “초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상기 조건 이외의 시설물에 대한 초기점검은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에서 규정한 “건설공사 안전점검 지침”에 따르도록 한다.
- ③ 시설물의 철저한 점검을 위하여 기후·온도·현지역건 등을 고려하여 가장 바람직한 기간 중에 실시되어야 한다.

나. 초기점검의 절차

- ① 초기점검 시에는 사전에 설계도서를 상세히 검토하고, 붕괴유발부재 또는 부위를 파악하여 현장조사에서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추후 유지관리에 특별한 주의를 필요로 하는 사항을 제시하여야 하며,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의 구성이 필요하다.

- ② 초기치를 얻기 위하여 결함부위 등 주요부위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등 조사결과를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다. 초기점검의 과업

「지침」에서의 초기점검의 과업은 정밀점검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을 기본으로 점검을 실시한다.

라.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초기점검의 실시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제46조의4¹⁾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당해 건설공사를 준공(임시사용을 포함한다)하기 직전에 「동법 시행령」 제46조의4 제1항제2호²⁾의 규정에 의한 정기안전점검 수준 이상의 안전점검(이하 "초기점검"이라 한다)을 실시하여야 한다.

- ① 초기점검은 준공 전에 완료되어야 한다.
- ② 준공 전에 점검을 완료하기 곤란한 공사의 경우에는 발주자의 승인을 얻어 준공 후 3개월 이내에 할 수 있다.

3.5.3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체계

가. 일반

시설물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준공 이후 체계적인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가 실행될 수 있도록 초기점검 실시결과에는 당해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를 구성하는 등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 중요하다.

- ① 당해 시설물의 설계, 시공단계에서 품질안전기준 등에 관한 분석결과
- ②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 계획수립 등의 기준에 관한 검토 결과
- ③ 당해 시설물의 LCC 예측을 위한 필요 데이터의 획득 및 축적의 절차

즉, 초기점검 실시결과는 당해 시설물의 구성요소에 대한 기준이력 등을 포함하여 이로 부터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해당 시설물의 내구성평가, 안정성평가 및 유지관리 지침 등의 기준이 되는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1) 「시특법」 제2조제2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1종시설물 및 2종시설물의 건설공사
 2) 건설공사의 종류 및 규모 등을 고려하여 국토해양장관이 정하는 시기와 횟수에 따라 정기안전점검을 실시할 것.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 : 국토해양부부 고시 제2008-86호, 2008. 4.23)

나.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관리를 위한 보고서 체계

초기점검 보고서의 구성은 시설물의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를 확립하는 초기점검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다음과 같이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초기점검의 개략을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
- 참여기술자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 초기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초기점검의 개요

초기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초기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초기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 초기점검 수행일정

3) 기 실시한 안전점검 실시결과에의 평가

가)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요약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각 차수별 안전점검 실시현황 (점검기관명, 책임기술자명, 점검기간, 점검비용)
- 기 실시한 안전점검의 주요내용

나) 기 실시한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사항 및 보수·보강 실시결과 확인·검토

- 안전점검에 의한 조치 결과의 확인
- 보수·보강 작업의 실시 및 작업결과 확인
- 조치결과 및 보수·보강작업의 적정성 평가
- 기타 필요한 사항

4) 시공평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 해당 시설물의 안전성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시공과정에 대한 내역을 시공 단계별로 검토하여 기술한다.

- 현장 시공자료 및 기 안전점검 실시결과로부터 단계별 시공평가 내역

- 당초 설계도서에 대한 변경 부분에 대한 검토 내역
- 시설물이 붕괴 또는 전도되어 재시공 등이 필요한 사고에 관한 내역
- 시공상 특기사항에 관한 내역
- 기타 필요한 사항

5) 재료평가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 해당 시설물의 내구성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기 위한 재료의 선정 및 시험자료 등에 대한 내역을 시공 단계별로 검토하여 기술한다.

- 강재, 콘크리트의 구성 재료 등에 대한 종류와 생산지 등의 검토 내역
- 구성 재료의 품질시험 및 검사성과 등의 검토 내역
- 기타 필요한 사항

6) 초기치 획득

「건설공사안전점검지침」에서 규정하고 있는 추가조사를 통하여 획득한 초기치는 시설물 유지관리 과정에서 안전성평가 기준이 되는 중요한 자료로 시설물의 특성을 고려하여 여러 부위에서 초기치의 획득이 필요하다.

획득된 초기치는 일목요연하게 기술되어 향후 점검·진단에서 관련자료의 축적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7) 예방적 유지관리 지침

대상 시설물에 해당하는 예방적 유지관리 체계를 위한 지침을 제시하는 것으로 관련 데이터의 축적이 되도록 기술되어야 한다.

- 시설물 전체의 외관조사망도
- 시설물의 구조부재별, 부대시설별 점검부위 및 점검항목 등의 절차
- 예상공사비 및 공사기간과 실제 소요된 공사비 및 공사기간의 비교·분석 내역
- 공사기획시에 예측한 수요 및 기대효과와 공사 완료후의 실제수요 및 공사효과의 비교·분석 내역
-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사항

8)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종합결론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 관련 준공 설계도서 및 구조계산서
- 재료시험 성과표 및 시험성적표
- 신공법 및 특수공법 평가 보고서 (적용한 경우)
- 기타 참고자료
- 점검 실시결과 사진첩

제 4 장

정밀안전진단

4.1 정밀안전진단 일반

4.2 정밀안전진단 과업

4.3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작성

4.4 보고서 작성

제4장 정밀안전진단

4.1 정밀안전진단 일반

4.1.1 정밀안전진단 목적

정밀안전진단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관리주체가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실시하며, 또한 「영」 제9조제1항에 해당하는 시설물은 「영」 제9조제2항에 따라 정기적으로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은 정밀한 외관조사와 시험·측정장비 및 기기를 사용하여 시설물의 물리적·기능적 결함을 발견하고 그에 대한 신속하고 적절한 조치를 하기 위하여 구조적 안전성 및 결함의 원인 등을 검토·분석·평가함과 더불어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는 등의 행위로서 이루어진다.

4.1.2 정밀안전진단의 시기

- ① 정밀안전진단은 「영」 제9조에 따른 1층 시설물(공동주택 및 폐기물매립시설을 제외한다)에 대하여 준공일 또는 사용승인일(임시사용 포함)을 기준으로 산정하여 10년이 지난 때부터 1년 이내에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물의 특성상 정밀안전진단이 1년 이상 소요되는 시설물은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여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 ② 차회의 정밀안전진단은 전회의 정밀안전진단 완료일을 기준으로 해당 시설물의 안전등급에 따라 [표 4.1]의 실시주기에 의해서 정기적으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 완료하여야 한다.
- ③ 다만, 시설물의 중대한 결함으로 인한 보수·보강 공사나 철거 등의 사유로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협의를 거쳐 정밀안전진단의 실시시기를 연기하거나 생략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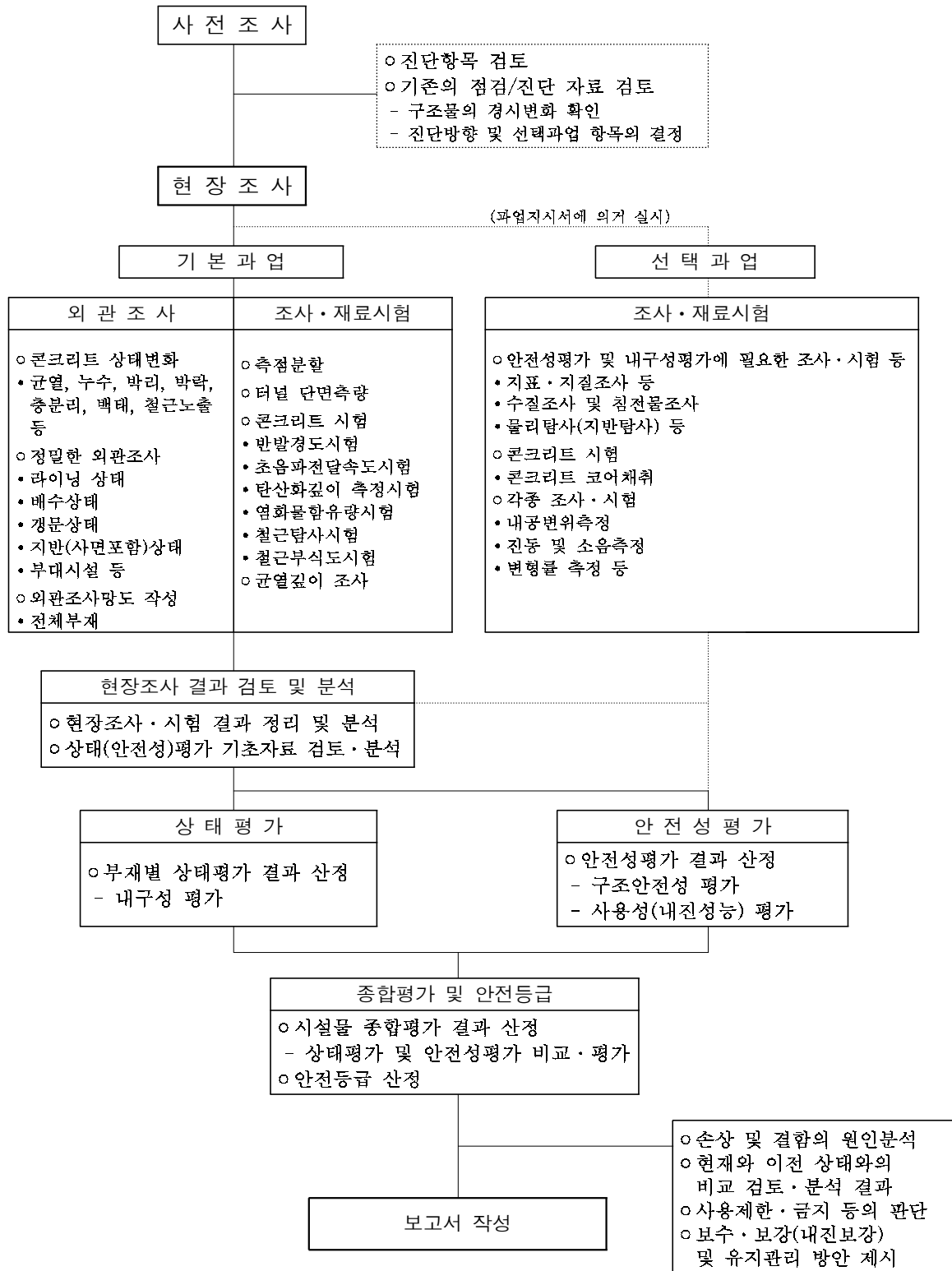
- ④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시설물의 재해 및 재난 예방과 안전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표 4.1] 정밀안전진단 실시 시기

안전등급	정밀안전진단
A 등급	6년에 1회 이상
B·C 등급	5년에 1회 이상
D·E 등급	4년에 1회 이상

4.1.3 정밀안전진단 절차

- ① 정밀안전진단은 안전점검으로 쉽게 발견할 수 없는 결함부위를 발견하기 위하여 정밀한 외관조사와 각종 측정·시험장비에 의한 측정·시험을 실시하여 시설물의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에 필요한 데이터를 확보한다
- ② 현장조사 시 필요한 경우 교통통제 및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 ③ 시설물 근접조사를 위한 접근장비와 필요시 수중카메라 등 특수장비와 잠수부 등 특수기술자도 투입하여야 한다.
- ④ 결함의 유무 및 범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때에는 현장 재료시험과 기타 필요한 재료시험을 병행하여야 한다.
- ⑤ 전체구조물의 표면에 대한 외관조사 결과는 도면으로 기록하여야 한다.
- ⑥ 구조물 전체 부재별 상태를 평가하고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⑦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결함 정도에 따라 필요한 조사·측정·시험, 구조 계산, 수치해석 등을 실시하고 분석·검토하여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하여야 한다.
- ⑧ 필요한 경우에는 구조물의 사용성, 내진성능 등도 평가하여야 한다.
- ⑨ 정밀안전진단 결과 보수·보강이 필요한 경우에는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수·보강 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현저하게 작용하는 상황에 대한 구조 안전성평가를 포함하여야 한다.



[그림 4.1] 정밀안전진단 흐름도

4.1.4 정밀안전진단의 범위

터널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범위는 [표 4.2]와 같다.

[표 4.2] 터널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범위

구 분	시설물명	비 고
기본 시설물	◦ 본선라이닝	
	◦ 갱문	
	◦ 개착터널	
	◦ 지하차도	
	◦ 지하정거장	
부대 시설물	◦ 연직갱 및 경사갱	
	◦ 환기구	
	◦ 피난연락갱	
	◦ 연결터널(환기시설)	
	◦ 갱구부옹벽	

4.2 정밀안전진단 과업

「지침」 3.8항에 따라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기본과업은 시설물의 구분 없이 기본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을 말한다.
- 선택과업은 시설물의 여건에 따라 실시하여야 하는 과업으로서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표 4.3] 정밀안전진단 과업 내용

과업 항목	기본과업	선택과업 (필요시)
자료수집 및 분석	• 준공도면, 구조계산서, 특별시방서, 수리·수문계산서 • 시공·보수도면, 제작 및 작업도면 • 재료증명서, 품질시험기록, 계측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 기존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검토·분석 •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 구조·수리·수문 계산 (계산서가 없는 경우) • 실측도면 작성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	•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누수, 박리, 박락, 층분리, 백태, 철근노출 등 - 강재 구조물: 균열, 도장상태, 부식 및 접합(연결부) 상태 등 •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시험: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전달 속도시험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강재 비파괴시험(시험량, 시험 부위 등)	•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 계측 • 지형, 지질, 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 누수탐사 •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안전점검 실시결과, 원인 규명이 필요하다고 평가한 경우 필수) • 수리·수문조사 등 •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 조사부위 표면청소 •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건축물 제외) •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재비파괴시험 •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상태평가	• 외관조사 결과분석 •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성평가	•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 내하력 및 구조 안전성평가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구조·지반·수리·수문 해석 (구조계 변화 또는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저하가 예상되는 경우 필수) •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종합평가	•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 안전등급 지정	-
보수·보강 방법	• 보수·보강 방법 제시	• 내진보강 방안 제시 •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보고서작성	•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

4.3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작성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그 실시결과를 관리주체에게 통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도 통보하여야 한다.

시설물의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및 조치해야 할 사항을 다음의 서식에 의해 작성하여 보고서 서두에 첨부하여야 한다.

가.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정밀안전진단 결과표에는 해당시설물의 기본현황과 실시결과 요약을 기술하여야 하며, 특히 「기본현황 라.참고사항」에 다음의 내용이 작성되어야 한다.

- 차기 정기점검 및 정밀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에서의 중점 점검부위 등
- 점검결과 「영」 제12조의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필요한 후속 조치사항을 기재

나. 시설물 현황표

- 정밀점검 현황표의 작성방법을 참조한다.

○○터널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1. 기본현황

가. 일반현황					
용역명		점검/진단기간			
관리주체명		대표자			
공동수급		계약방법			
시설물 구분		종 류		종 별	
준공일		점검(진단) 금액(천원)		안전등급	
시설물 위치		시설물 규모			
나. 진단 실시결과 현황					
중대결함					
점검(진단) 주요결과					
주요 보수·보강					
다. 책임(참여)기술자 현황					
구 분	성 명	과업 참여기간	기술등급		
라. 참고사항					

2. 결과 요약

책임기술자 종합의견	
• • • • •	
책임기술자 : (서명)	

가. 정밀안전진단 외관조사 결과 기본사항

상태평가 결과 및 보수·보강				상태평가 결과 :
결함발생 부재	상태 평가 결과	결함종류	보수·보강(안)	

나. 안전성평가 결과

안전성평가 수행 부재	해석방법	안전성평가 결과 요약	안전율	안전성평가 결과
BOX	강도설계법			
	허용응력법			

다. 내진성능 검토 수행 여부

검토대상 부재	설계적용 여부	결과	검토결과 요약
	Y/N		

라. 현장시험 (비파괴 및 추가시험)

시 험 명	시험 부위	시험 결과	책임기술자 의견
○ 콘크리트 비파괴			
○ 물리탐사			
○ 시추조사			
○			
○			
○			

○○터널 현황표

작성일 : 년 월 일

터널명			
노선명		시행청	
시점		중점	
터널형식		관리주체	
차선수		환기방식	
연장		설계사	
내공단면		시공사	
배수형식		감리사	
종단기울기		착공	
평균선형		준공	
연결통로		개문형식	
주요공법		보조공법	
기타	※ 종·평면도 ※ 중점 점검사항(보수·보강부위, 계측관리부위 등) ※ 별지 이용		

※ 도로터널의 경우

○○터널 현황표

작성일 : 년 월 일

터널명		관리주체	
선명		구간	
위치		연장	
소재지		준공년도	
종단구배		등급	
곡선반경		시공사	
터널형식		착공일자	
열차운행회수		준공일자	
배수형식		갱문형식	
단·복선		공법	주요
			보조
기타	※ 종·평면도 ※ 중점 점검사항(보수·보강부위, 계측관리부위 등) ※ 별지 이용		

※ 철도터널의 경우

○○지하차도 현황표

작성일 : 년 월 일

구 분		내 용	구 분		내 용
시설물명			시설물번호		
준공년도			관리번호		
위 치					
설계하중			노선명(이정)		
제원	연장				
	폭				
BOX 구간	연장		U-TYPE 구간	연장	
	토피고			옹벽 높이	
통과높이			펌프장유무		
신축이음유무			관리주체		
기 타		※ 중 · 평면도 ※ 중점 점검사항(보수 · 보강부위 등을 기재) ※ 별지 이용			

4.4 보고서 작성 방법

가.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 방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 내용을 중심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실시결과 보고서 작성시 세부지침 내용의 수록을 자제하여 실시결과 보고서 분량이 크게 되지 않도록 한다.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본 세부지침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하)력, 사용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해석 및 구조계산을 통한 분석결과
- 수문, 수리 등 해석결과 및 분석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시설물의 내(하)력 평가
- 시설물의 내진성능, 사용성 평가 (관리주체의 요구 등 필요한 경우)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본 세부지침의 제9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본 세부지침의 제10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 11장에서 기술한 내용에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부록의 과업지시서 예문 참조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사전검토 보고서, 과업수행계획서 등 관련자료)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나. e-보고서 작성 방법

- 정밀점검 e-보고서 작성방법을 참조한다.

제 5 장

현 장 조 사

5.1 현장조사 일반

5.2 현장조사 요령

5.3 균열조사 요령

제5장 현장조사

5.1 현장조사 일반

5.1.1 일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실시하는 필요한 현장조사 및 외관조사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의한 시설물의 상태 또는 안전성 평가가 객관적이며,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현장조사와 관련되는 내용의 원칙을 기술하며, 시설물 특성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세부지침」에서는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에 규정하고 있는 안전점검과 정밀안전진단 시 필요한 현장조사 항목에 대해서 기술하며, 이외의 필요한 조사에 대해서는 과업의 범위 및 내용이나 과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책임기술자가 협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당해 시설물의 중요도 및 특성에 따라 보완 또는 추가가 필요한 경우는 새로이 세부서식 등을 작성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등 시설물관리에 사용할 수 있다.

5.1.2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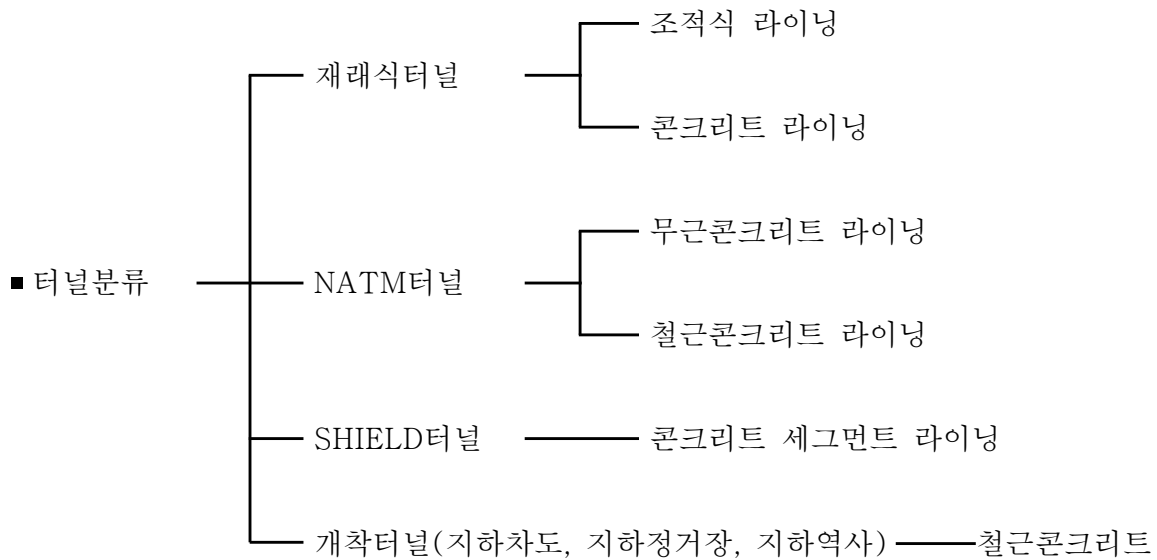
- 현장조사는 기존시설물에 관한 기초자료를 얻고,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구조물의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 등) 및 균열 폭과 길이 등 구성재료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하여 수행한다.
- 시설물 현장에서의 측정은 도면이 없거나 도면상에 나타난 자료를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며, 측정의 정확성은 원하는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정도로 하여야 한다.
- 부식, 노후화 또는 기타 식별이 어려운 결함을 발견하기 위하여 육안으로 근접조사하기 전에 조사부위를 깨끗이 청소하여야 한다.

5.2 현장조사 요령

5.2.1 일반

시설물의 상태평가 시 점검사항은 구조물의 특성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수정, 보완하여 사용한다. 각 세부시설별 점검 사항은 평가결과를 기초로 판단하며, 이는 점검 부위별 각각의 점검사항에 대한 주요 손상상태를 파악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터널 시공방법 및 라이닝의 재질에 따라 터널을 분류하면 [그림 5.1]과 같다.



[그림 5.1] 터널 라이닝 시공방법에 따른 터널 분류

5.2.2 시설물 상태변화의 점검항목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에서 시설물의 상태평가를 적용함에 있어 [표 3.2] 및 [표 4.3]의 기본과업과 선택과업의 내용을 적절히 혼용하여 대상 시설물에 대한 상세한 상태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특히, 정밀점검에서는 선택과업인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의 작성 여부 등에 대해서 관리주체와 책임기술자의 협의를 통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에서 전기 및 기계설비에 대한 조사·시험은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다.

가. 상태변화 점검항목

시설물의 상태변화에 따른 평가는 터널의 라이닝 및 주변 시설물로 구분하며, 지하차도는 철근콘크리트 구조물과 주변상태 등을 상태평가 시 점검사항으로 다음과 같다.

[표 5.1] 터널의 상태변화 점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비 고
라이닝 상태	◦ 균열 ◦ 누수 ◦ 파손 및 손상 ◦ 재질열화 (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철근노출, 탄산화, 염화물)	
터널주변 상태 등	◦ 배수상태 ◦ 지반상태 ◦ 갱문상태 ◦ 특수조건 : 추가점수 부여	

[표 5.2] 지하차도의 상태변화 점검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비 고
철근 콘크리트	◦ 균열 ◦ 누수 ◦ 파손 및 손상 ◦ 재질열화 (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철근노출, 탄산화, 염화물)	
지하차도 주변상태 등	◦ 배수상태 ◦ 갱문상태	

나. 정기점검 점검항목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터널내부	<간단한 외관조사> - 라이닝 등의 변상 : 균열, 누수 등 - 부대시설 등 : 상태변화 여부	- 망원경 - 카메라 - 필기도구 - 줄자 - 망치 - 손전등
터널외부	<간단한 외관조사> - 갱문의 주요변상 : 균열, 침하 등 - 배수로, 사면의 변형유무	

다. 정밀점검 점검항목

점 검 부 위	점 검 항 목	점 검 장 비
터널내부	<면밀한 외관조사> - 라이닝 등 주요변상 · 균열, 누수, 파손 및 손상 · 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 철근노출, 타일균열 및 탈락 등 - 기타조사 <간단한 측정> - 반발경도법에 의한 강도조사 - 탄산화 시험	- 슈미트 해머 - 균열경 및 균열측정기 - 망치, 카메라, 손전등, 필기도구, 줄자, - 탄산화 시험기구
터널외부	<외관조사> - 갱문의 주요변상 · 균열, 침하 등 - 배수로, 사면의 변형유무	

라. 정밀안전진단 점검항목

정밀안전진단 시의 사전조사는 [표 5.3]에 의하고, 정밀안전진단 항목 및 방법은 [표 5.4]에 준하여 실시하며, 추가로 필요한 항목은 관리주체와 협의한다.

[표 5.3] 터널의 일반적인 사전조사 항목

사전조사 항목	검 토 내 용
기초 자료조사 및 검토	- 과업지시서 - 지반조사 현황 및 결과 - 지반분류 현황 및 평가 - 지반 및 재료 특성치 조사 - 기타 폐광 등 터널과 관련된 모든 자료 조사
터널 해석방법 및 결과분석	- 사용 프로그램 확인 - 해석용 입력자료 분석 - 표준 지보패턴 - 콘크리트 라이닝 해석 - 보조 공법의 유무 및 적정성
설계도면 검토	- 터널의 단면 검토 - 방수 및 배수 시스템(System) - 콘크리트 라이닝 철근보강 유무 - 타입(Type)(패턴별 적용구간) - 발파패턴 - 시공순서도 - 해석결과와 설계도면 일치성 비교

[표 5.4] 터널의 일반적인 정밀안전진단 항목 및 방법

점검부위	진 단 항 목	검사방법
터널 내부	○ 균열조사 - 위치, 균열폭, 길이, 깊이, 균열의 진행성여부 등	초음파 검사법 균열측정기 육안조사 등
	○ Joint부 조사(조적식라이닝) - 위치, 크기, 진행성, Seal재열화 등	육안조사 균열측정기 등
	○ 누수조사 - 위치, 누수량, 탁도, 수질 등	적외선 탐사법 육안조사 등
	○ 콘크리트라이닝 - 콘크리트 두께조사 - 콘크리트 강도 - 철근배근 탐사 및 철근부식도 측정 - 열화조사 - 파손 및 손상, 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철근노출 - 탄산화 및 염화물 함유량조사	탄산화시험 레이다탐사법 충격 탄성과 시험 염화물함유량시험 표면타격법 코아채취 시험 초음파 속도 육안조사 등
	○ 내부결함 탐사 - 공동 및 공극 조사 - 강지보공 조사, 설치간격, 규격 등	레이다 탐사법 내시경조사 육안조사 등
	○ 터널 계측 - 내공변위, 단면측량, 라이닝응력측정, 변형률측정	광파측량기, 내공변위계 등
	○ 지반상태 - 풍화정도, 일축압축 강도, R.Q.D.	시추조사 육안조사 등
	○ 배수·공동구상태조사 - 배수상태 - 퇴적물 상태 - 뚜껑파손 상태	육안조사 내시경 조사 등
	○ 진동 및 소음 상태	진동 및 소음측정기 등
	○ 기타조사	육안조사 등
터널 외부	○ 균열조사 - 위치, 균열폭, 길이, 깊이, 균열의 진행성여부	초음파 검사법 균열 측정기 육안조사 등
	○ 누수조사 - 위치, 누수량, 탁도, 수질 등	수질 검사 육안조사 등
	○ 콘크리트 강도 - 반발경도 시험, 일축압축강도	반발경도법 코아채취시험
	○ 터널주변 조사 - 지표 및 지질조사 - 사면조사 - 토지이용조건	보링조사 육안조사 등
	○ 기타조사	
기타	- 표지판 여부 - 퇴적물 상태 - 안전 및 유지관리 계획여부, 청소상태 - 시설물 이력카드 작성 여부 및 보수이력 확인 - 진동 및 소음상태	

5.2.3 현장조사 요령

가. 측점 분할

1) 일반사항

- 측점 분할 작업은 현장조사에서 최초로 실시하는 작업으로서 터널의 진행 방향으로 위치를 표시하는 작업을 말한다.
- 예비조사와 기타 사전조사 시에 입수한 자료를 검토하여 도면에서의 표기 방식을 참고로 현장에서 해당 위치를 표시하고, 위치 표시는 현장에서 쉽게 식별될 수 있도록 하여 추후 유지관리 시에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조사수량 및 측정방법

- 정밀점검(필요시) 및 정밀안전진단 시 측점 분할 간격은 각종 현장 조사 시 좌우로 확인 가능한 거리인 5.0m 내외가 적당하며 면밀한 조사가 필요한 구간에 대하여는 별도로 세분해야 하고, 내업 정리 및 분석 작업은 필요에 따라 5~50m간격으로 조정 가능하다.

3) 결과분석

- 국부적인 표면 오염이나 습기 등이 있는 경우 이를 제거하고 스프레이, 매직, 유성 펜 등으로 표시 하며 석필, 분필 등으로 표시할 수도 있다. 철도 터널, 도로터널과 같이 현장에서 기 표시된 측점은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 측점분할은 통상 터널 입구부터 시작하여 출구에서 끝나며 분할에 따른 오차를 최소화하고, 단면 변화 구간, 횡갱구간, 소화전, 응급 대피소 등 현장에서 직접 확인 가능한 위치는 현장조사 전에 위치를 파악하여, 측점 분할함으로써 오차를 줄인다.

나. 터널단면 측량

1) 일반사항

- 외관조사 결과 터널 내공단면이 불규칙한 곳에 대하여는 정확한 단면상태 및 시공상태의 파악을 위하여 터널의 종·횡단 측량 또는 선형 측량을 실시한다.
- 준공도상의 단면과 현 상태의 차이를 검토하고 건축한계선과 비교하여 보수·보강대책 수립 시와 유지·관리업무 수행 시에도 활용할 수 있도록 한다.

2) 조사수량 및 측량 방법

- 터널 정밀안전진단 시 터널단면 측량은 최소 200m마다 1개소씩 측량하며, 특

히 단면변화구간 및 육안조사 단면의 이상부위는 보다 정확한 측량이 필요하다.

-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종단측량 및 선형측량의 경우 설계 시점부터 종점까지(통상 터널 입구부터 출구) 측량한다.
- 사용하는 장비는 일반적으로 일체형 광과거리계에 의한 측량기를 사용하며, 측정간격은 100~200m 범위에서 변상정도에 따라 위치를 선정하여 측량한다.

3) 결과 분석

- 횡단측량 시 측정된 결과와 설계도면 및 건축 한계선과 비교하여, 도면과 일치 하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이때 건축 한계선을 초과하는 경우는 매우 심각한 단면 변화 구간으로서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

다. 내공변위 측정

1) 일반 사항

- 측정 목적은 터널 라이닝의 상대변위 및 집중현상을 측정하여 터널내부의 붕괴예측과 굴착지반이나 구조물의 변위예측을 위하여 실시한다.
- 내공변위계는 앵커(Anchor)와 자(Tape)로 구성된다. 장점은 간편한 작동, 경량이므로 취급이 용이하다는 점이다

2) 조사수량 및 측정 방법

- 터널 정밀안전진단 시 내공변위 측정은 변위가 예상되거나 발생한 지점에 최소 1개소를 측정한다. 이때의 다이얼게이지의 눈금을 읽어 측정치로 하고 3회 반복 측정치의 산술 평균치를 계측치로 한다.
- 측정하고자 하는 지점에 앵커를 삽입시킬 수 있도록 천공한 다음 앵커를 삽입한 후 그라우팅이나 레진(Resin) 또는 시멘트 모르타르로 고정시키고, 고정된 양단의 앵커에 내공변위계의 후크를 걸고 일정한 장력이 되도록 조작한다.

3) 결과 분석

- 정밀안전진단 시의 내공 변위의 측정은 시공 현장이나, 유지관리 과정에서처럼 정기적으로 조사할 수는 없으므로, 통상 1차 조사 후 15일 또는 30일 단위로 실시하여 내공 변위의 진행성 여부 및 응력 집중 정도를 파악한다.

라. 내부결함 탐사

1) 일반사항

라이닝의 내부결함(라이닝 두께, 배면공동의 규모 등)과 라이닝 내부의 강지보 설치 및 철근의 배근 상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비파괴검사 방법과 보링(Boring)등을

실시하여 조사한다.

2) 조사방법

① 타음검사

햄머(Hammer)로 라이닝 표면을 타격하여 햄머의 반발방향과 타격음에 의해 이상 유무를 조사하는 수단으로 정성적인 방법이지만 적정한 라이닝두께의 유무, 배면공동의 유무, 박리부분의 검사, 압축파괴의 유무, 라이닝표면의 열화상태를 조사하는 방법이다.

건전한 콘크리트라이닝은 타격음이 청음을 내고, 열화된 라이닝은 둔한 소리를 낸다. 또 라이닝배면에 공동이 있는 경우와 압축파괴된 부위도 역시 둔한 음을 낸다. 특히 벽돌·석적으로 시공된 경우의 건전한 라이닝은 금속성의 음을 낸다.

② 전자파법(레이다 탐사법)

100MHz~1GHz정도의 높은 주파수의 전자파를 콘크리트중에 방사하여 라이닝 배면에서의 반사파를 잡아 그 파형을 해석하는 것으로 라이닝 콘크리트의 두께, 공동의 유무를 판정하는 방법이다.

③ 라이닝 보링(Boring)조사

라이닝 두께와 배면의 공동, 지질상황 등을 직접 보링(Boring)에 의해 조사하는 방법으로 사전에 위치, 깊이등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④ 내시경조사

보링(Boring)또는 드릴링에 의해 천공 후 공내에 내시경 조사장비를 삽입하여 라이닝 배면의 상황을 육안 관찰하는 방법이다.

마. 진동 및 소음 측정

1) 일반 사항

- 터널 구조물을 통과하는 각종 차량 및 철도 객차 등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주변공사장 및 중장비 주행 등에 따른 터널 라이닝에 미치는 진동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진동측정을 실시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큰 소리 또는 음(Noise)에 의한 일상생활에 방해가 되는 소리, 감정적 혐오감을 주는 소리를 소음이라 하며, 터널의 사용성을 고려하여 진동측정과 동시에 소음측정도 실시할 수 있다.

2) 조사수량 및 측정방법

- 터널 정밀안전진단 시 진동 및 소음측정은 주변건물 신축 및 열차, 차량 통과 등의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실시 할 수 있다.

- 진동측정기는 물리적인 운동이나 압력을 전류로 바꾸어 주는 변환기 또는 센서, 전류를 전달하는 케이블, 증폭장치 및 최초 신호의 상대 시간변화를 보존하는 저장장치 및 이로부터 재생된 신호를 최후의 영구적인 기록으로 보존하는 출력기록장치로 구분된다.
- 시간적인 변동이 거의 없는 소음에서는 그 읽는 값을 그대로 소음의 크기로 평가하지만 도로터널, 철도터널과 같이 시간별로 소음이 변하거나, 인접의 공사장이 있는 경우 등은 그 소음치가 시간에 따라 변하므로 최고치 및 최저치 등을 조사하여 산출한다.

3) 결과 분석

- 일반적으로 진동규제기준치는 최대입자속도(Peak Particle Velocity)에 따라 결정하여 사용되고 있다. 전반적으로 최대입자속도 5cm/sec보다 작은 발파나 진동의 경우 인접구조물에 손상이 생기지 않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러나 이 기준치는 튼튼한 상가구조물에 대하여는 안전측이 되고 벽돌구조물과 같이 약한 구조물에 대하여는 위험측의 기준이 된다.
- 소음측정 시 유의할 점은 어떤 점의 소음레벨은 주위의 반사음이나, 타 소음원 등의 영향을 받아 나타나는 결과이다. 따라서 주위의 영향을 배제하고 음원의 음 자체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가급적 주위에 반사물 등이 없는 곳에서 또한 음원에 접근하여 소음을 측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바. 수질 조사 및 침전물 분석 시험

- 수질분석 시험은 필요시 지하수 등의 침출수 및 유수가 콘크리트 구조물에 접하거나 침투하여 콘크리트와 화학반응을 일으켜 구조물을 노후화시킬 수 있는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가를 판단하기 위한 시험이다.
- 시료채취 과정에서 오염물질이 혼입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하며, 일반적으로 지하수 등은 오염이 적어 전처리없이 시험을 해도 지장이 없는 때가 많다. 그러나 시료의 상태나 시험의 종류에 따라서는 공존 물질의 방해를 제거하기 위한 전처리를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다.
- 시료 채취 후 시험 실시까지의 기간 동안 보관은 시료 특성에 따라 냉암소 보관, 보관 유효기간 등의 지배를 받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사. 배수상태조사

배수상태조사는 터널과 같은 시설물의 운영 중 발생하는 용수, 강수가 터널 주변의 지표수 및 지하수에 영향을 미쳐 시설물의 안전상태를 미리 예측하고 대처하기 위해 실시하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형은 그 형성과정에서 암질이나 지질구조가 반영된 것이므로, 배수상태 조사시에는 곡밀도(면적당의 하곡의 누계연장), 유로구배, 평균비고(높과 능선 비고의 평균), 유역형상계수(평균 유역폭과 주 유로 연장과의 비) 등을 고려한다.
- 시추자료, 지표의 용수지점, 우물의 수위 등으로 지하수위 등고선을 그리고 그 흐름방향이나 구배를 찾아서 터널용수의 유무나 갈수범위 등을 추정한다. 또한 지하수가 불투수층으로 막혀 낮은 지하수층과 지하수층으로 분리되는 경우 대수층으로 분류한다.
- 위의 결과를 참조하여 터널 주변의 배수상태 즉, 내부와 외부상태를 검토한다.

아. 지반상태조사 (지형 및 지질조사 포함)

1) 현장시험

- 현장시험은 지반정보를 구하는 중요한 방법으로서 특히 지층구성이나 거시적 지반정보를 얻는 것과 원지반 상태 그대로에서 각종 지반정보를 얻는 것이 특징이다.
- 불교란 시료를 채취하기 어려워서 실내시험에서 공학적 특성을 측정할 수 없는 구간에서는 현장 원위치 시험을 실시하여 지반특성을 측정한다.

2) 현장시험의 종류와 적용

시추공을 이용한 시험법에는 시추공 저면을 이용하는 것이 있으며, 시험목적으로 분류하면 원위치 지반의 강도와 변형계수 등의 역학적 정보를 얻기 위한 것과 지하수 정보나 물리 정보를 얻기 위한 것이 있다.

3)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

터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범위 등을 조사한다.

자. 갯문상태 조사

갯문은 터널 입·출부에 위치하여 터널의 안전성에 유해요소를 작용하므로 손상상태를 파악하여 시설물 유지관리에 활용한다.

차. 특수조건조사

전력구 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 등에서 누수로 인한 낙수 및 동결위험도를 조사하여 시설물유지관리에 활용한다.

5.3 균열조사 요령

5.3.1 일반

균열의 발생은 콘크리트 체적변화와 구속조건에 기인하는 것이지만 그 원인은 다양하고 그것이 복합되어 균열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그 때문에 균열이 발생했다면 여러 가지 관점에서 그 원인을 추적할 필요가 있으므로 균열의 형태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

연속된 하나의 균열이라 해도 위치에 따라 폭이 다른 것이 보통이며, 보수·보강의 필요 여부 판정의 자료로 할 경우에는 최대 균열폭을 이용한다. 그러나 최대 폭을 나타내는 부분이 균열의 전체 길이 중 극히 일부분 일 경우나, 균열의 가장자리의 콘크리트가 국부적으로 일그러진 탓으로 다른 부분에 비교하여 큰 최대 폭이 되었을 경우 등에는 과잉 보수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단순히 최대 균열폭에만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균열이 전 구간에 걸친 균열폭의 분포에도 유의해야 한다.

5.3.2 균열조사

가. 균열폭의 측정

- ① 균열폭은 콘크리트의 표면에서 균열 방향에 대해 직각으로 측정한 폭을 측정 기록한다.
- ② 균열폭은 균열 발생의 원인 추정, 보수·보강 필요 여부의 판정, 보수·보강의 판단 자료가 되므로 측정 시 변동 원인을 고려하여 목적에 맞도록 측정해야 한다.
- ③ 균열폭의 측정은 균열스케일(Crack Scale), 균열현미경 등을 사용한다.

나. 변동 균열의 측정

진행성 균열의 측정은 전기적인 측정 방법과 클립게이지를 사용하는 방법, 전기식 다이얼 게이지를 사용하는 방법이 있다. 또 표적기간을 접착게이지를 사용해 측정해도 된다.

균열폭의 변동을 검토할 경우는 초기 값을 측정한 위치를 구조물에 기록하여 두고 그 후 같은 위치에서 측정하며, 다음 사항을 준수하는 것이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바람직한 측정 방법이다.

- ① 균열폭은 온도나 습도에 따라 변화되므로 변동 측정을 할 경우에는 측정시의 온·습도의 조건은 가능한 같도록 하는 것이 원칙이다.
- ② 하루의 온도는 시각에 따라 변화되므로 측정 시각은 가급적 일정하게 하되 측정시 온도를 측정하여 온도와 측정값과의 관계를 분석 필요하다.
- ③ 휨균열이 발생하여 철근의 부식이 문제가 된다고 볼 수 있는 경우에는 철근과 같은 위치의 표면균열 폭을 측정한다.

다. 균열의 진행성

형성된 균열의 진행은 여러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 특히 균열제어 철근이 불충분하면 현저하게 영향을 받는다. 균열의 진행은 보수시 어떤 재료를 사용할 것인가와 언제 시행하는 것이 최적기인가에 영향을 주므로 보수작업을 시행하기 전에 장래 균열 움직임에 대한 평가를 하는 것은 중요하다.

따라서 균열을 발견한 경우는 그것이 진행성인 것인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것은 구조물 변상의 원인 추적, 균열의 성질 판정 및 방법의 결정을 위한 중요한 요소가 된다.

균열이 진행성인 경우 다음 사항을 조사한다.

1) 측정시기와 간격 및 기간

균열의 진행 상태 측정 간격은 균열의 진행 정도에 따라 다르나 초기에는 빈틈이 없이 조사기간 중 1~2주 정도의 간격으로 측정을 하고, 필요시 진행 정도가 둔한 경우에는 순차로 간격을 지연시켜 기간은 반년 이상으로 하는 것이 좋다.

균열이 진행하지 않는 경우라도 계절의 변화(건습이나 온도의 변화)에 따라 균열폭과 길이가 변화되므로 측정은 가급적 장기간 실시하는 것이 좋다. 균열의 진행이 급속한 경우에는 이미 발생된 균열과 균열 사이에 새로운 균열이 발생되는지의 여부를 조사한다.

2) 구조물에 가해지는 하중의 조사

균열의 진행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조물에 작용하는 하중에 대해서 조사한다. 이것은 활하중에 대해서 뿐만 아니라 토압, 기초의 이동, 회전, 침하, 인접 구조물에서의 영향 등 작용하는 하중의 크기와 그 이력에 대해서 조사한다.

3) 구조물의 구조 결함 조사

구조물의 콘크리트가 박락 등의 단면의 결손으로 철근이 부식, PS 강재의 절단 또는 정착부의 이완 등이 생긴 경우에는 부재의 강성이 저하되어 변형이 커지게 되고 균열이 진행되므로 구조상 결함의 유무에 대해서 조사한다.

4) 구조물의 환경 조사

건습의 반복 상태, 한랭지에서의 동결융해 상태 등을 조사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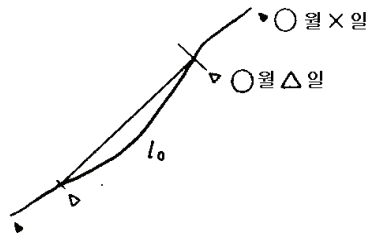
5) 사용재료의 조사

콘크리트 재료의 체적변화를 일으키는 것이 있는 경우, 예를 들면 알칼리 골재 반응을 일으키는 골재, 페이스트의 팽창 계수와 차이가 큰 골재, 팽창물질을 함유한 골재, 혼화재료, 특히 팽창제의 사용 등 균열 발생에 영향을 주는 재료의 사용 유무를 조사한다.

라. 균열의 길이와 형태

균열의 길이는 균열의 원인 추정과 보수·보강의 필요 여부 판정에는 그다지 크게 관계되지 않는 않으며, 길이에 따라서 균열이 국부적인 원인에 의한 것인지, 광범위한 원인에 의한 것인지 등의 파악이 필요하다.

균열의 길이는 주로 보수·보강의 규모 파악과 공사비의 산출에 필요하므로 적어도 균열폭이 0.05mm 정도 이상은 길이를 측정하고 기록할 필요가 있으며, 하나의 연속된 균열에서 보수하는 부분과 보수하지 않는 부분으로 구별하는 일은 거의 없으므로 가능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전구간의 길이를 파악해 놓는 것이 좋다.



[그림 5.2] 균열 길이의 기록 예

마. 균열의 관통 여부

균열이 관통 여부는 물이나 공기가 통하는가의 여부로 판정되며, 관통 여부의 조사는 콘크리트의 양면에서 관찰이 가능한 경우에는 표면과 이면의 형태가 일치되고 있는가 하는 점이 점검사항이 된다.

균열의 관통 여부 측정에는 다음과 같은 방법이 있다.

- ① 균열 부분을 정확하게 육안으로 확인한다.
- ② 액체를 부어서 누수되는 위치나, 모양 등을 확인한다.
- ③ 코어링을 한다.

④ 초음파의 전달속도를 측정한다.

상기 균열조사 ①, ② 방법의 경우 균열에 빨간 잉크 등 색소(액체)를 미리 주입하여 액체와 공기가 통과하는가를 확인하면 된다. 한편, 콘크리트 양면이 관찰될 수 있는 경우는 표면과 이면의 형태가 일치하는가를 확인하면 된다.

바. 균열부 상황의 기록

균열부의 상태에서 이물질 충전의 유무, 백태현상의 유무, 철근의 녹 유무 등을 관찰하여 기록한다.

5.3.3 비파괴시험에 의한 균열깊이 조사¹⁾

가. 일반

콘크리트 구조물에 발생된 균열깊이를 측정하기 위한 기본은 초음파전달속도법에 의하여 비파괴시험 방법으로 측정한다. 초음파의 발·수신자를 균열 근방에 설치하여 균열을 측정하는 방법을 기술한다.

초음파 발·수신자를 설치하는 위치와 탐촉자 직경에 따라 실제의 pulse 전달거리와 전달속도가 다르므로 균열깊이 추정 시에는 주의가 필요로 하며, 다음의 균열깊이 추정에 사용되는 발·수신자의 직경은 5cm, 사용 주파수는 20MHz~60MHz 사이의 탐촉자를 사용하는 경우이다.

나. T-법

T-법은 발진자(Tx)를 고정하고, 수신자(Rx)를 10~15cm 간격으로 이동시켜 전파거리와 전달시간의 관계(주시곡선)로부터 균열 위치의 불연속 시간 T를 도면상에서 다음 식을 이용하여 균열 깊이 h 를 구한다.

$$h = \frac{T \cos \alpha (T \cot \alpha + 2L)}{2(T \cot \alpha + L)} \quad \text{or} \quad h = \frac{L}{2} \left(\frac{T_2}{T_1} - \frac{T_1}{T_2} \right)$$

여기서, $T : T_2 - T_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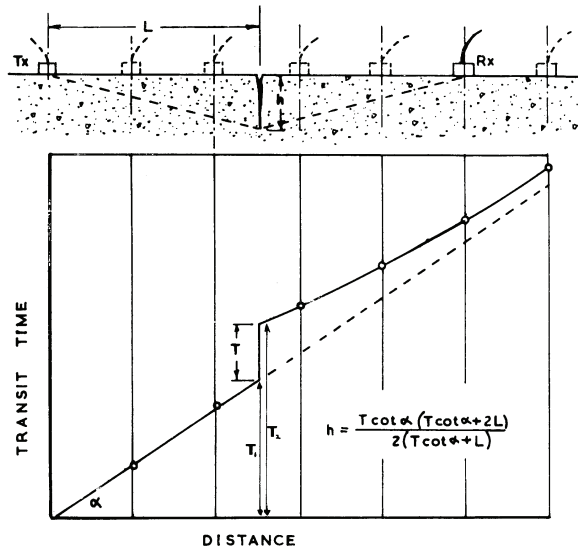
L : 발진자(Tx)에서 균열까지의 거리

α : 주시곡선 시작점에서 균열까지의 전달시간 기울기

T_1 : 주시곡선의 측정 시작점에서 균열까지의 전달시간

T_2 : 주시곡선의 균열 시작점에서 이후의 전달시간

1) 콘크리트 및 강재 비파괴시험 매뉴얼 : 한국시설안전공단('0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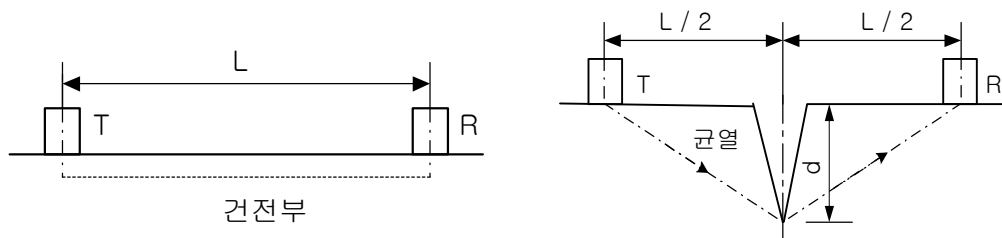
[그림 5.3] T-법

다. Tc-To 법

이 방법은 수신자와 발신자를 균열의 중심으로 등간격 x 로 배치한 경우의 전파시간 T_c 와 균열이 없는 부근 $2x$ 에서의 전파시간 T_o 로부터 균열깊이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균열 면이 콘크리트의 표면과 직각으로 발생되어 있으며, 균열 주위의 콘크리트는 어느 정도 균질한 것이라고 가정하여 유도한 것이다.

이 방법의 균열깊이 탐사 결과는 15% 정도의 오차를 가지고 있으며, 균열에서 발·수신자까지의 거리 x 는 탐촉자까지의 거리이다.

$$h = X \sqrt{\left(\frac{T_C^2}{T_O^2} - 1\righ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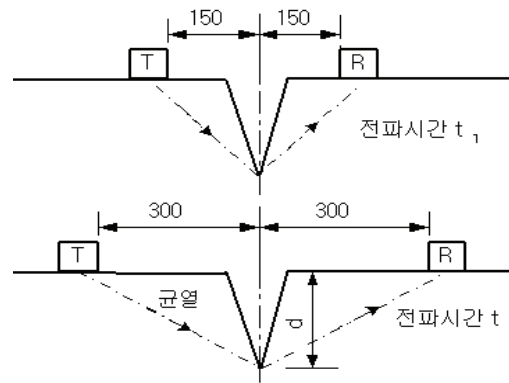
[그림 5.4] Tc-To 법

라. BS 법

BSI 1881 Part No. 203에 규정되어 있는 방법으로 발·수신자 배치를 균열 개구부에서 $a_1=150\text{mm}$ 일 경우의 전파시간 T_1 , $a_2=300\text{mm}$ 일 경우의 전파시간 T_2 를 이용하

여 균열깊이 d 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콘크리트 내부에 존재하는 철근의 영향으로 측정 결과의 오류를 나타낼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d = 150 \sqrt{\frac{(4T_1^2 - T_2^2)}{(T_2^2 - T_1^2)}}$$



[그림 5.5] BS 법

마. 균열깊이 측정의 제약조건¹⁾

- ① 균열깊이가 1,000mm 이상이 되면 수신하는 초음파전달속도가 현저하게 쇠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초음파측정기로는 측정이 곤란하다.
- ② 표층부 철근의 배근깊이가 100mm 이하가 되면 철근 배근깊이 이상인 표면균열의 깊이를 측정하는 것이 곤란하다.
- ③ 콘크리트의 품질불량 및 콘크리트 내부에 곰보나 공동(구멍) 등 다짐불량의 가능성이 있으면 정확한 측정이 곤란하다.
- ④ 균열 내부에 물, 이물질이 있는 대상이나, 미세균열이 밀집되어 있는 경우에는 측정이 곤란하게 된다.
- ⑤ 발생된 균열이 개폐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면 측정이 곤란하다.
- ⑥ 측정 대상과 측정 정밀도
 - 평탄한 측정면에 직각한 균열깊이 : 200mm 이하의 경우 $\pm 5\%$
 - 평탄한 측정면에 직각한 균열깊이 : 1,000mm 이하의 경우 $\pm 3\%$
 - 경사균열의 균열깊이 길이 : $\pm 15\%$

1) 진단장비 활용 · 관리 매뉴얼 : 한국시설안전공단('06.12)

제 6 장

재 료 시 험

- 6.1 재료시험 일반
- 6.2 반발경도시험
- 6.3 초음파전달속도시험
- 6.4 콘크리트 코어시험
- 6.5 철근탐사시험
- 6.6 철근부식도시험
- 6.7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제6장 재료시험

6.1 재료시험 일반

6.1.1 일반

시설물의 상태 평가 및 안전성 평가를 적절히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사전 현장조사, 도면 및 이전의 점검·진단보고서 검토 등을 통하여 필요한 시험항목 및 시험횟수를 산정하여야 한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함에 있어 시설물별로 필요한 재료시험의 최소시험항목과 기준수량은 본 세부지침을 따르며, 시설물의 특성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목적에 따라 이를 조정할 경우에는 실시결과 보고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6.1.2 현장 재료시험

현장 재료시험은 시설물이 위치하는 현장에서 구조물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 강도 및 결함 등을 측정하는 것으로 이에 대한 세부사항은 시설물별 세부지침에 따른다.

재료시험방법은 구조물의 특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시험방법으로 시험장비 및 측정방법의 특징, 적용한계 등을 고려하여 측정하여야 하며, 시험을 실시하는 자는 시험장비의 사용법을 숙지한 충분한 경험을 갖춘 자이어야 하며 검·교정을 필한 장비를 사용하여야 한다.

6.1.3 실내시험

구조물로부터 재료의 일부를 채취하여 시험실에서 실시하는 실내시험은 특정부분에 대한 자료가 필요할 경우 사용되며, 구조물에 손상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전체적인 시설물의 평가에 유용할 경우에만 실시하여야 한다.

또한 재료채취에 의해 손상을 입은 부위는 원래 상태로 복구를 해야 한다.

실내시험은 KS규격을 기준으로 실시하고 KS규격에 없는 시험은 ASTM이나 AASHTO 등의 외국기준에 의해 실시할 수 있다.

실내시험에는 다음과 같은 시험들이 있다.

가. 콘크리트 시험

강도, 수분함량, 공기량, 염화물함유량, 탄산화깊이 시험 등

나. 강재시험

강도 등

다. 토질재료 시험

입도, 함수비, Atterberg한계, 투수, 다짐, 압밀, 압축시험 등

6.1.4 시험결과의 해석 및 평가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그 분야에 경험이 있는 자에 의하여 해석되고 평가되어야 하며 이전에 같은 시험이 실시된 경우에는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분석 평가하여야 한다.

또한 같은 재료 특성을 평가하는데 다른 형식의 시험방법이 사용되는 경우에는 각 시험결과를 비교하여 차이점을 파악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기존자료와 현장 계측자료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기 위하여 모델링을 통하여 이론적 해석을 실시할 수 있다.

6.1.5 시험 보고서

모든 현장 재료시험 및 실내시험 결과는 시험 보고서의 형태로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하여 시설물관리에 필요한 자료의 일부로 사용하여야 한다.

6.2 반발경도시험¹⁾

6.2.1 일반

가. 일반

반발경도시험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를 비파괴로 추정하는 방법의 하나로 경화된 콘크리트 표면을 타격할 때, 측정 반발도(R)와 콘크리트의 압축강도(F_c)와의 사이에 특정 상관관계가 있다는 실험적 경험을 기초로 한다.

반발경도시험 결과로 분석된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는 콘크리트 표면 상태에 국한되고 콘크리트 내부의 강도를 추정할 수 없다는 단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시의 유일한 지표로 사용하기에는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나. 적용 범위

본 세부지침에서는 경화된 콘크리트의 반발경도와 압축강도 사이의 상관관계에 따른 상관식을 도출하여 적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이것이 쉽지 않은 경우 기존의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제안식을 활용하여 평가할 수도 있다. 다수의 신뢰할 수 있는 비파괴강도 추정식이 제시되어 있으나, 추정식의 다양성만큼 비파괴강도가 일정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코어 표본의 압축강도를 구하여 이 측정값과 반발도와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콘크리트 표면의 경도로부터 콘크리트의 비파괴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으로 그 시험 방법, 적용 가능한 강도 범위, 판정식 및 판정의 평가 방법에 대한 고려가 비파괴강도를 판정하는 과정에서 필요하다.

본 세부지침에서는 보통콘크리트의 비파괴강도 추정을 위한 시험 등의 절차에 대해서 기술한다.

다. 측정기의 점검 및 교정

반발경도측정기는 엄밀한 검사를 하더라도 사용 후에 기계적인 오차가 발생하는 것이 단점이 있으므로 사전에 테스트 앤빌(test anvil)에 의한 정기 교정을 실시하

1) ◦ KS F 2730:2003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반발경도시험 방법
◦ 콘크리트 및 강재 비파괴시험 매뉴얼 : 한국시설안전공단('06.12)
◦ 진단장비 활용·관리 매뉴얼 : 한국시설안전공단('06.12)

여야 한다.

테스트 앤빌에 의한 반발경도측정기(N형)의 반발경도 R 은 80을 기준으로 80 ± 2 의 범위를 정상으로 할 경우, 가능한 한 80 ± 1 의 범위이어야 한다. 이 범위의 값을 벗어날 경우 조정하여야 한다. 반발값이 72 정도까지 나타나고 더 이상 반발값이 올라가지 않을 경우에는 다음 식에 의하여 보정하며, 이 이상의 보정값을 필요로 하는 반발경도측정기는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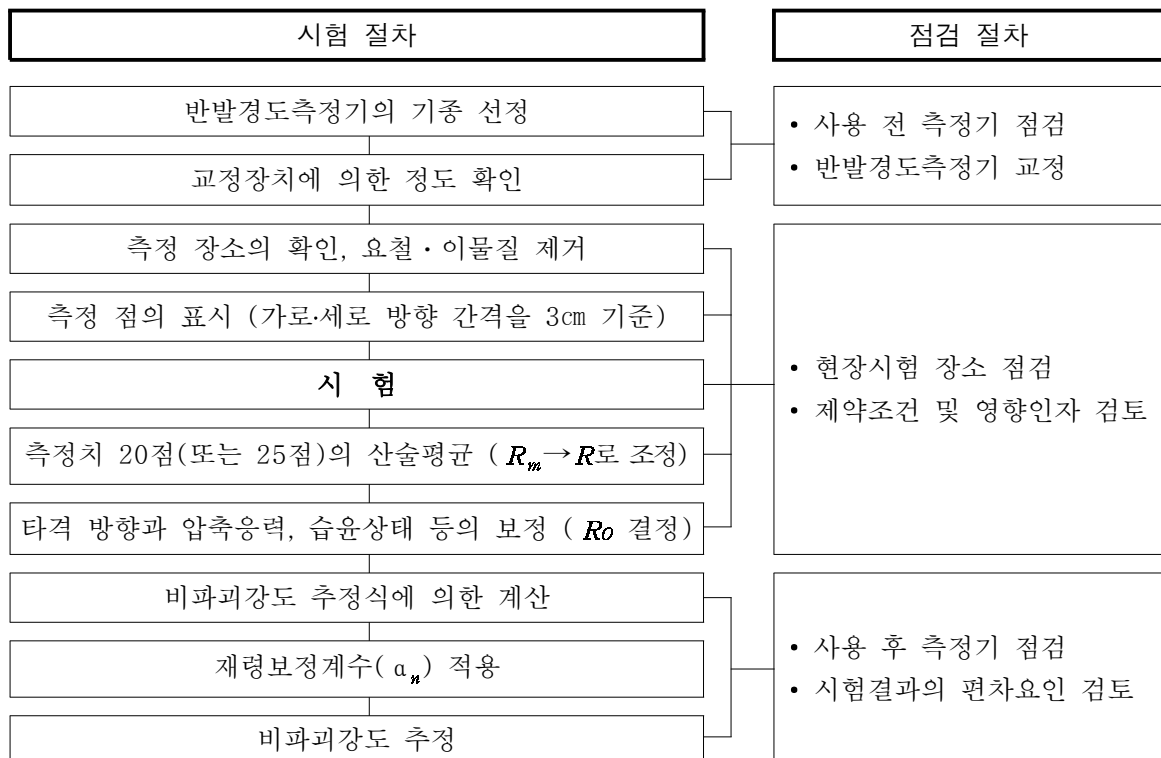
$$R = R_o \times 80 / R_a$$

여기에서 R_a : 테스트 앤빌에 따른 하향 타격시($\alpha = -90^\circ$)의 반발도

R_o : 반발도 R 의 평균값

반발경도측정기와 테스트 앤빌의 보정 특성인 액면 수치(R_a)는 제작사에 따라 교정 반발경도의 치수의 범위는 차이를 나타내므로 유의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이는 제조사가 다른 반발경도측정기와 테스트 앤빌을 혼용하여 이용할 경우에는 그 결과 값(R_a)이 상이하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며, 무심코 이를 혼용하여 사용하였을 경우 평가된 콘크리트 비파괴강도의 신뢰성에 문제점으로 나타난다.

6.2.2 시험 등의 절차



[그림 6.1] 반발경도시험 및 측정기 점검 등의 절차

가. 보정반발경도(R_o)의 계산

- ① 반발경도시험 값(R_m) 20개의 평균을 산정
- ② 평균값에서 $\pm 20\%$ 이상 벗어나는 경우의 시험값은 버리고 나머지 시험값의 평균(R)을 산출
- ③ 시험값 중 버리는 값이 4개 이상인 경우는 시험 부위의 결정에서 문제가 있을 수 있으므로 전체 시험값 군을 무시
- ④ 반발경도시험 현장의 여건 등을 고려하는 반발경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검토하여 각종 보정값(ΔR)을 산정
- ⑤ 산정한 보정값(ΔR)을 평균시험값(R)에 가감하여 보정반발경도(R_o)를 결정하여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에 적용
- ⑥ 보정반발경도(R_o)는 소수 첫째자리 기준

나. 반발경도시험의 제약 조건

1) 반발경도측정기 활용을 위한 제약조건의 검토

- 대상구조물의 제약조건과 종류, 측정범위 등을 파악하여 시험 결과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에서의 반발도와 비파괴강도와의 관계는 각종 영향인자에 따라 다르므로 비파괴강도 추정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인자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반영시켜야 한다.
- 현장측정 및 결과분석에 대한 절차는 KS F 2730의 규정에 준한다.

2) 대상 구조물의 제약조건

- 측정 부재의 선정
 - 부재의 두께 : 측정부의 콘크리트 두께 10cm 이상인 장소 선정
 - 측정 위치 : 보, 기둥 등 모서리로부터 3~6cm 이상 떨어진 장소에서 측정
- 측정 장소의 선정
 - 얇은 바닥판이나, 벽에서는 고정단 부근이나, 지지면에 가까운 장소를 선정
 - 보, 기둥 등에서는 시공이음부, 재료분리, 높이, 방향 등의 강도변화를 고려해서 측정 장소를 선정
 - 측정면이 모르타르, 타일 등 부착물이 있는 장소 등은 회피
 - 미장, 도장이 있을 경우 이것을 제거하여 콘크리트 면을 노출
 - 타격방향은 항상 측정면에 대하여 직각방향으로 조용히 눌러서 측정

다. 반발경도시험에 영향을 미치는 인자

반발경도에 미치는 영향인자와 시험결과에 편차 요인에 대하여 시험 전·후에 이를 파악하여 산정한 각종 보정값(ΔR)을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1) 반발경도에 미치는 영향인자

- 콘크리트 및 반발경도측정기의 온도
- 콘크리트 표면의 함수 상태
- 콘크리트 탄산화(중성화) 정도
- 측정 시 타격방향
- 반발경도측정기의 종류
- 콘크리트의 거동

2) 시험결과에 편차 요인

- 시험결과 편차의 요인과 표준편차
- 콘크리트의 재료와 조합의 관계 : 시멘트, 골재 등
- 측정 대상면의 상태 : 콘크리트 표면상태, 측정 높이, 구속력 등
- 콘크리트의 재령
- 비파괴강도 추정 제안식의 이용

6.2.3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가. 코어 표본을 이용한 반발경도와 압축강도의 상관관계

반발경도와 압축강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방법 중 가장 신뢰할 수 있는 것은 현장 콘크리트의 코어를 통해 정보를 얻는 것이다.

- ① 코어 표본의 반발경도시험은 코어 표본을 채취하고자 하는 위치에서 코어채취 이전에 실시하여야 한다.
- ② 반발경도시험 값 군의 평균과 코어 표본으로 구한 압축강도를 통해 개별 시험 값을 플롯하고 전체 결과에 대한 선형 회귀식을 최소 제곱법에 의해 해당 시설물의 콘크리트 비파괴강도(F_c) 제안식을 도출한다.

$$F_c = k_1 \cdot R_o + C \text{ (MPa)}$$

여기서, R_o : 반발도 R 의 평균값

k_1 , C 는 상수

나. 기존의 제안식을 이용한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반발경도를 이용한 비파괴강도 추정은 가급적 시험 대상 구조체의 수 개소에 대해서 반발경도를 구하고, 상기 성형 및 코어 표본에 의한 반발경도와 압축강도의 비파괴강도 제안식을 이용해야 한다.

다음은 국내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제안식을 정리한 것으로 이외의 신뢰성 있는 제안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안식의 적용은 시험 방법 및 시험 조건에 맞는 제안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6.1] 기존의 비파괴강도 추정 제안식

연구자	추정 제안식 (MPa)	비고
일본재료학회	$F_c = -18.0 + 1.27 \cdot R_o$	
동경 건축재료 검사소	$F_c = (10R_o - 110) \times 0.098$	
일본건축학회	$F_c = (7.3R_o + 100) \times 0.098$	
U.S Army	$F_c = (-120.6 + 8.0R_o + 0.0932R_o^2) \times 0.098$	
木村	$F_c = (9.37 \times (0.987)^t R_o + (1.3t - 109)) \times 0.098$	t는 재령(년)

다. 재령보정계수

콘크리트의 재령이 경과함에 따른 반발경도와 압축강도의 상관관계는 변하게 하며, 탄산화의 효과는 콘크리트의 표면반발경도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장기재령 콘크리트의 강도 추정에서는 재령 28일의 강도추정식에서 구해진 비파괴강도에 슈미트해머 제조사에서 제시하고 있는 [표 6.2]의 재령보정계수(α)를 곱하여 평가한다.

[표 6.2] 재령보정계수, α 의 값 ($F_{28} = F_c \times \alpha$)

재령(일)	28	100	300	500	1000	3000
α	1.0	0.78	0.70	0.67	0.65	0.63

라. 코어강도를 고려한 비파괴강도 보정계수

신뢰성있는 비파괴강도 추정을 위해서는 실구조물에서 채취한 코어강도를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하여 선정된 비파괴강도 제안식에 아래와 같이 보정계수를 산출한 후, 보정계수를 제안식에 곱하여 대상 시설물의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를

추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text{보정계수, } C_t = (\sum_{i=1}^k \frac{R_{pr}}{R_{st}}) / k$$

여기서, R_{pr} : 코어 압축강도(MPa)

R_{st} : 반발경도시험에 의해 추정된 비파괴강도(MPa)

k : 자료의 개수

6.2.4 시험 보고서

시험결과 보고서는 반발경도시험에서 권장하는 사항에 따라 시험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시험조건 및 피시험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작성한다.

- 시험 일자, 시간
- 구조물에서 시험 영역의 위치
- 시험 대상 구조물 또는 표본에 대한 설명
- 콘크리트의 설계 조건
- 시험 위치의 표면 상태
 - 마무리 정도, 균열, 박리, 화재 피해 유무 등
- 시험시의 온도 및 콘크리트의 재령
- 콘크리트 내부의 함수 상태
 - 습윤 상태, 표면 건조 상태, 기건 상태 등
- 반발경도측정기의 종류 및 제품 번호
- 반발경도측정기의 타격 방향
- 시험 부위별 반발경도의 평균값
- 버린 반발경도의 값 및 위치

6.3 초음파 전달속도시험¹⁾

6.3.1 일반

가. 일반

콘크리트에서의 초음파 전달속도시험은 음향적 측정방법인 음속법의 하나로 초음파의 투과속도가 콘크리트의 밀도 및 탄성계수에 따라서 변화하는 것을 이용하며, 초음파가 콘크리트를 통과하는 시간(Pulse Velocity)을 측정하여 이로부터 콘크리트의 비파괴강도, 결함의 유무, 균열 및 콘크리트의 내부 분리, 공동현상 등을 추정하는 비파괴적인 방법에 이용한다.

일반적으로 점검과 진단에서 사용하고 있는 콘크리트 초음파측정기는 측정대상 콘크리트에 동일한 사용목적을 가지며, 초음파 전달속도는 콘크리트의 구성 성분, 다짐 정도, 숙성도, 콘크리트 제품과 구조물 내에 본래부터 존재하는 자유수의 함유량에 따라 결정된다.

나. 적용범위

본 세부지침에서의 초음파 전달속도시험은 콘크리트의 한쪽 끝에 접촉시킨 탐촉자로부터 발신한 초음파 펄스가 콘크리트 내부를 통과하여 반대방향의 다른 끝 쪽에 접촉시킨 탐촉자에 도달할 때까지의 소요시간 및 양 탐촉자간 거리를 측정하여 음속을 구하고, 그 음속값을 이용하여 콘크리트의 비파괴강도를 추정하기 위하여 실시한다.

이 시험 방법은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이외에도 콘크리트의 탄성 계수, 균열 깊이, 내부 결함 등을 검사하는 데 이용할 수 있으며, 콘크리트의 비파괴강도를 추정하는 경우 다수의 신뢰할 수 있는 추정 제안식이 제시될 수 있으나, 추정식의 다양성만큼 비파괴강도가 일정하게 얻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성형 또는 코어 표본의 압축강도를 구하여 이 측정값과 펄스속도와의 상관관계를 구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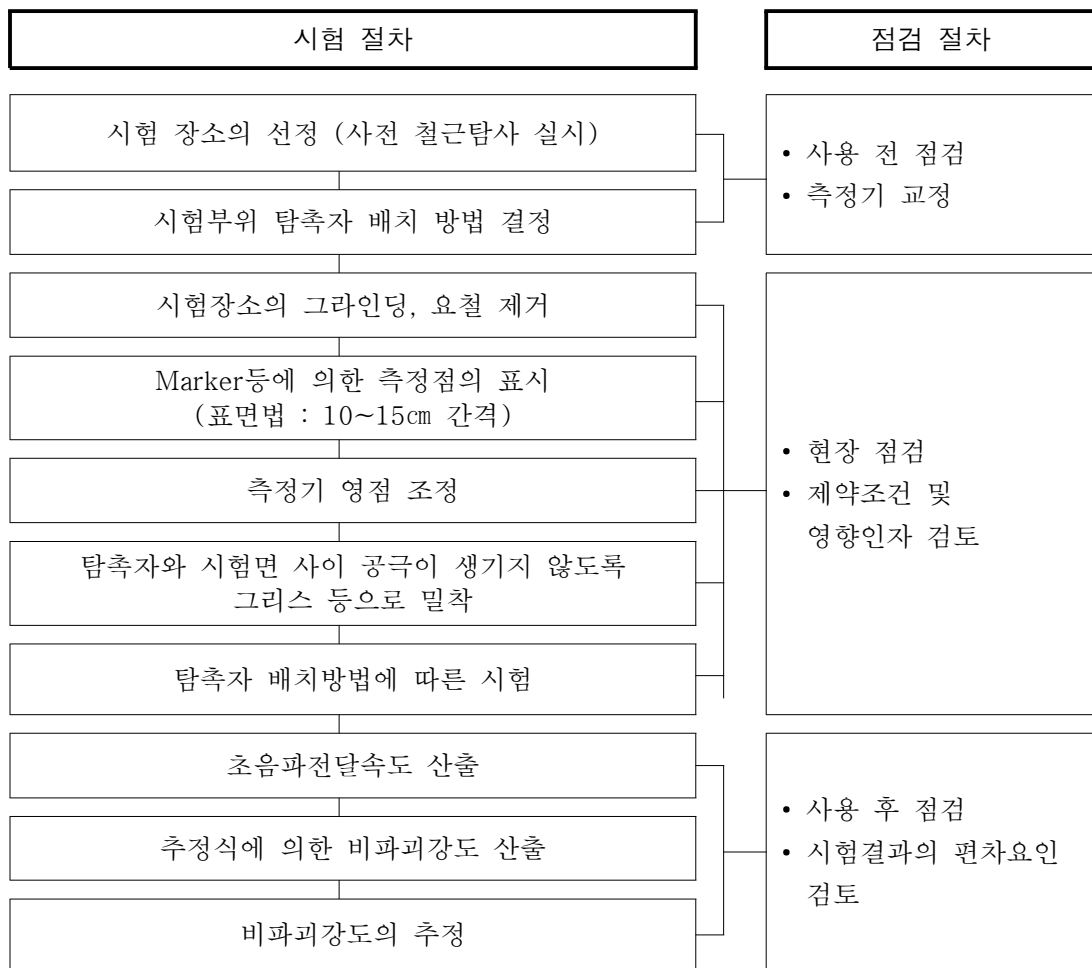
다. 측정기의 영 보정(Zero Setting)

○ 측정기를 사용하기 전에는 반드시 측정기에 대한 교정을 하여야 한다.

-
- 1) ○ KS F 2731:2003 콘크리트 압축강도 추정을 위한 초음파 펄스 속도 시험 방법
○ 콘크리트 및 강재 비파괴시험 매뉴얼 : 한국시설안전공단('06.12)
○ 진단장비 활용·관리 매뉴얼 : 한국시설안전공단('06.12)

- 발신 및 수신 탐촉자를 합쳐서 측정 거리가 Zero의 경우에서 전달시간이 영점으로 타나나는 확인 여부와 측정 전에 표준시험체(교정봉)로 측정해서 미리 영 보정을 하여야 한다.
- 탐촉자 및 케이블의 교체의 경우 매번 영 보정하여야 하며, 전자회로나 케이블의 안정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시로 영 보정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6.3.2 시험 등의 절차



[그림 6.2] 초음파 전달속도시험 및 측정기 점검 등의 절차

나. 초음파 전달속도시험의 제약조건

1) 측정기 활용을 위한 제약조건의 검토

- 측정 대상구조물의 제약조건과 종류, 측정범위 등을 파악하여 측정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중의 초음파전달속도와 압축강도의 관계는 각종 영향인자에 따라 다르다. 비파괴강도 추정이나, 결함탐사의 정도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들 영향인자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반영시켜야 한다.
- 현장측정 및 결과분석에 대한 절차는 KS F 2731의 규정에 준한다.

2) 측정 대상으로 하는 구조물에서의 제약조건

- ① 측정 대상구조물 : 콘크리트 구조물 전반
- ② 제약조건
 - 콘크리트 표면에 도장이나, 외장재 및 구조물 내부에 철근이 과밀 배근되어 있는 경우, 균열 내부에 수분, 충전물, 미세균열, 밀집균열 등이 존재하는 구조물에서의 초음파전달속도의 시험은 곤란하다.
 - 초음파전달속도시험 대상 콘크리트 면에 강재나 공동(구멍), 곰보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초음파전달속도시험 결과가 크게 변화될 수 있다.
 - 초음파전달속도시험에서는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에 대한 병용 시험을 통해서 이를 확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측정하기 전에 측정 위치 부근에 철근탐사장비로 철근이나 강재 등의 배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

다. 초음파전달속도시험에 미치는 영향인자

초음파전달속도에 미치는 영향인자와 시험결과에 편차 요인에 대하여 시험 전·후에 이를 파악하여 산정한 각종 영향계수를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에 적용하여야 한다.

1) 초음파전달속도에 미치는 영향인자

- 콘크리트의 함수량
 - 콘크리트는 습윤상태일수록 초음파전달속도는 커진다.
 - 대상 부재의 함수량 차이를 고려하여 측정된 초음파전달속도를 보정해야 한다.
- 콘크리트의 온도
 - 콘크리트의 온도변화에 따라 초음파전달속도는 변한다.
 - 콘크리트가 고온일 경우 초음파전달속도는 감소하며, 저온으로 동결되었을 경우 초음파전달속도는 증대하므로 이에 대한 보정이 필요하다.
- 측정거리(표면법의 경우 : 탐촉자간의 간격)
 - 콘크리트의 이질적인 성질이 시험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충분히 길어야 한다.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20mm 미만의 경우 측정거리는 100mm 이상
 - 굵은골재의 최대치수가 20~40mm의 경우 측정거리는 150mm 이상

○ 시험체의 형상

- 시험대상이 되는 부재의 단면치수에 따라 초음파전달속도에 영향을 미친다.
- 시험대상의 최소허용 측면 치수를 고려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 철근의 영향

- 강재에서의 초음파전달속도는 약 5.1km/s로 콘크리트보다 크다.
- 강재는 콘크리트에서 추정된 초음파전달속도의 정확도를 감소시키므로 가능한 한 철근이 탐촉자 사이의 직진 경로 그 가까이에 놓여 있지 않는 조건에서 시험해야 한다.
- 철근 간섭을 허용하기 위한 초음파전달속도 시험값의 보정의 경우는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보정한다.
 - － 철근이 초음파 경로와 평행으로 배근된 경우
 - － 철근이 초음파 경로와 직각으로 배근된 경우

○ 접촉매질

- 탐촉자와 콘크리트면과의 접촉(밀착) 상태가 불량한 경우에는 측정치의 재현성은 없어지고, 그 신뢰도 확보가 곤란하다.
- 접촉매질로 인해 콘크리트의 특성이 연속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접촉매질의 층이 얇아져 최소값이 얻어질 때까지 읽기를 반복한다.

2) 측정결과의 편차요인

○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재령

- 콘크리트의 재료, 배합, 재료 등에 따라 초음파전달속도는 다르므로 비파괴강도 추정 전에 반드시 이들 정보를 입수하여 검토한 결과를 반영하여야 한다.

○ 측정 대상면의 상태

- 콘크리트 표면에 모래입자, 먼지, 수분함유, 미세균열 등은 초음파전달속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이를 고려한 시험이 필요하다.

○ 측정기의 사용요령

○ 탐촉자의 연결

○ 초음파전달속도의 관계

○ 비파괴강도 추정식의 이용

6.3.3 초음파전달속도시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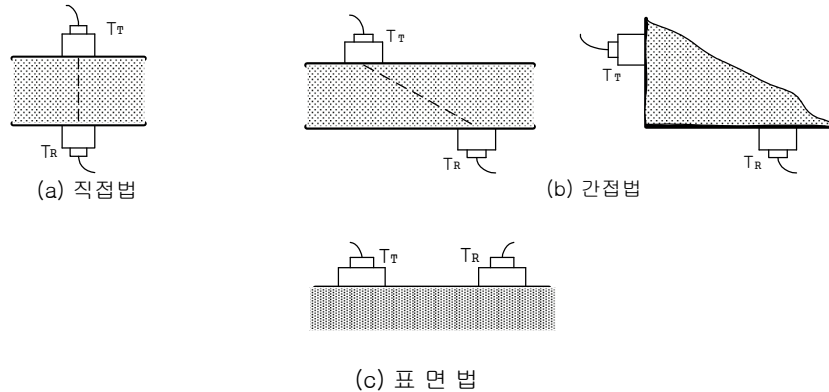
가. 탐촉자의 배치

본 시험의 정확도는 주로 투과 거리 측정의 정확도에 의해 좌우되며, 이 경우 탐

촉자 간의 에너지 이동이 최대이기 때문에 비파괴강도 추정 시에는 [그림 6.3]에서 (a)의 직접법인 대향면의 배치방법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현장에서 탐촉자를 직접법으로 배치할 수 없는 경우 [그림 6.3]의 (b)와 (c)와 같은 간접법과 표면법으로의 측정은 그 신뢰성에 문제가 제기되고 있으나, 현장 조건에서는 표면법 적용의 경우가 많다.

이때 표면법의 탐촉자 간격은 100~150mm 간격으로 측정하는 것이 좋다.



[그림 6.3] 초음파 펄스 시험을 위한 탐촉자 배치 방법

나. 초음파전달속도의 산정

1) 직접법(V_d)

$$V_d = \frac{L}{T}$$

여기에서 V_d : 직접법에 의한 초음파전달속도(m/s)

L : 투과 거리(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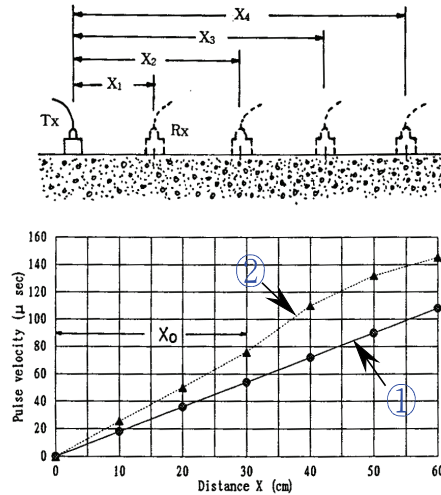
T : 유효 시간(s)

2) 표면법(V_i)

[그림 6.4]에서 ①의 경우로 각 거리 X_i 에 대한 전달시간 T_i 를 측정하여 X_i 와 T_i 의 관계를 그래프에 도시하여 나타나는 회귀직선식 $T = a + b \cdot S$ 의 상관계수에 서 기울기의 함수를 초음파전달속도 V_i 를 결정한다.

$$\frac{dS}{dT} = \frac{1}{b} \quad (= V_i: \text{표면법 초음파전달속도})$$

[그림 6.4] ②의 경우인 콘크리트 내부의 구성 요소와 균열 및 결함 등에 의해 초음파전달속도가 분산되면 경험적으로 3점 이상이 일직선으로 형성되는 구간의 회귀직선식에서 분석된 결정계수 r^2 값이 99% 이상([그림 6.4]에서 X_0 구간)이 되는 전달속도 V_i 를 결정한다.



[그림 6.4] 표면법에 의한 초음파전달속도의 측정

6.3.4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가. 코어 표본을 이용한 초음파전달속도와 압축강도와의 상관관계

본 시험에 의한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를 도출하기 위해서는 구조체의 콘크리트에서 채취한 코어 표본을 이용하는 것이 유효하다.

- 절단과 습윤 처리된 코어 표본의 초음파전달속도는 구조물의 일부로 구성되어 있을 때보다 일반적으로 높게 나타나므로 코어 표본 채취 전에 초음파전달속도를 시험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 초음파전달속도시험 값과 코어 표본으로 구한 압축강도 시험 값을 플롯하고 전체 결과에 대한 선형회귀식을 최소 제곱법에 의해 해당 시설물의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제안식을 도출한다.

$$F_c = k_1 V_d + C \text{ (Mpa)}$$

- 코어 표본의 압축강도 시험은 KS F 2422¹⁾에 따른다.

나. 기존의 제안식을 이용한 콘크리트 비파괴강도 추정

초음파전달속도를 이용한 비파괴강도 추정은 코어 표본에 의한 초음파전달속도와 압축강도의 비파괴강도 제안식을 이용해야 한다.

다음은 국내에서 주로 이용되고 있는 제안식을 정리한 것으로 이외의 신뢰성 있

1) KS F 2422 :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 방법

는 제안식을 이용할 수 있으며, 제안식의 적용은 시험 방법 및 시험 조건에 맞는 제안식을 선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표 6.3] 기존의 비파괴강도 추정 제안식

연구자	추 정 식 (MPa)	비 고
일본건축학회식	$F_c = (215V_d - 620) \times 0.098$	V_d : 직접법에 의한 초음파전달속도 (km/s)
일본재료학회식	$F_c = (102V_d - 117) \times 0.098$	
J.Pysziak의 제안식	$F_c = (92.5V_d^2 - 508V_d + 782) \times 0.098$	
谷川の 제안식	$F_c = (172.5V_d - 499.6) \times 0.098$	

다. 초음파전달속도의 관계

초음파전달속도는 재료의 종류, 배합, 함수율 등 여러 가지의 원인으로 변동을 나타내고 있으며, 현장 콘크리트의 초음파전달속도 관계는 $V_d \approx 1.05 \sim 1.15 V_i$ 의 사이에 있다고 경험적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PUNDIT 사용 설명서에서는 정량적인 콘크리트에서는 $V_d \approx 1.05 V_i$ 의 근사적인 관계로 나타내고 있다고 하였다.

보다 정확한 직접법(V_d)과 표면법(V_i)의 초음파전달속도의 관계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표면법 측정을 수행한 동일한 부위에서 채취한 코어의 종파(직접법)속도를 측정하여 상관관계에 의해 환산하여 이용하는 방법이 바람직하다.

라. 비파괴강도 보정계수

선정된 비파괴강도 제안식에 아래와 같이 보정계수를 산출한 후, 보정계수를 제안식에 곱하여 대상 시설물의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를 추정한다.

$$\text{보정계수 } C_t = \left(\sum_{i=1}^k \frac{R_{pr}}{R_{st}} \right) / k$$

여기서, R_{pr} : 코어 압축강도(MPa)

R_{st} : 초음파전달속도시험에 의해 추정된 비파괴강도(MPa)

6.3.5 시험 보고서

보고서는 초음파전달속도시험이 관련 근거에서 권장하는 사항에 따라 시험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험조건 및 피시험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 시험 일자, 시간
- 구조물에서 시험 영역의 위치
- 시험 대상 구조물 또는 표본에 대한 설명
- 콘크리트의 설계 조건
- 초음파전달 경로와 탐촉자 위치에 대한 스케치
 - 시험 부위 근처의 철근 또는 덕트의 세부 사항 포함
- 시험 위치의 표면상태
 - 마무리 정도, 균열, 박리, 화해 유무 등
- 시험시의 온도 및 콘크리트의 재령
- 콘크리트 내부의 함수 상태
 - 습윤상태, 표면건조상태, 기건상태 등
- 장치의 종류, 신뢰도, 주파수 및 주요 특징
- 투과거리, 시험방법 및 결과의 정확도
- 초음파전달속도의 시험 값
- 철근 간섭으로 보정된 초음파전달속도 값

6.4 콘크리트 코어시험¹⁾

6.4.1 일반

가. 일반

채취한 코어의 시험은 콘크리트 상태평가에 대한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시험 방법이나,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코어를 광범위하게 채취하지 못하는 현장여건의 어려움으로 대표적인 부분에 대해서 코어를 채취하고 광범위하게 실시한 비파괴시험 결과의 모체로서 콘크리트 강도 및 내구성 평가에 이용되고 있다.

현장에서 채취한 코어로부터 압축강도를 추정하는 방법은 국부파괴시험으로 비파괴시험과는 구별되지만, 구조물의 실제 강도를 추정한다는 관점에서 비파괴적인 방법과 함께 실시한다. 그러나 내하 콘크리트 구조물에 있어 휨 부재에 대한 적용은 제한적이며, 구조물에 한정적으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코어채취의 기본적인 제약점들은 소요비용, 채취의 불편함, 콘크리트 구조물의 국부파손 등의 특징이 있다.

나. 적용 범위

채취된 코어의 활용 목적은 다음과 같다.

- ① 대상 콘크리트의 관련 제반 정보 수집
- ② 코어강도와 각 비파괴시험법에 따른 비파괴강도 추정식의 신뢰성 확보를 위한 보정
- ③ 내부철근의 피복과 직경 측정 결과의 확인
- ④ 철근부식 상태 측정 결과의 확인
- ⑤ 발생 균열깊이의 측정 결과의 검증 및 보수상태 확인
- ⑥ 물리성 조사 : 탄산화깊이, 염화물함유량, 알칼리 골재 반응시험 등

다. 코어비트

보통 코어비트의 유효 천공지름으로는 $\phi 10 \sim 400\text{mm}$ 정도이며, 천공지름은 일반적

1) ◦ KS F 2422:200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 시험 방법
◦ KS F 2405:2005 콘크리트의 압축강도 시험 방법
◦ 진단장비 활용·관리 매뉴얼 : 한국시설안전공단('06.12)

으로는 내경을 나타내고 있어 코어채취 시에 코어비트의 두께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습식 코어비트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코어드릴의 비트는 다이아몬드를 절삭재로 사용하여 박아 만든 보링용 비트로 절단 작업 중 코어드릴에 냉각수를 공급하면서 천공하는 습식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코어채취 시 필요한 냉각수의 양과 필요 천공속도를 파악하여야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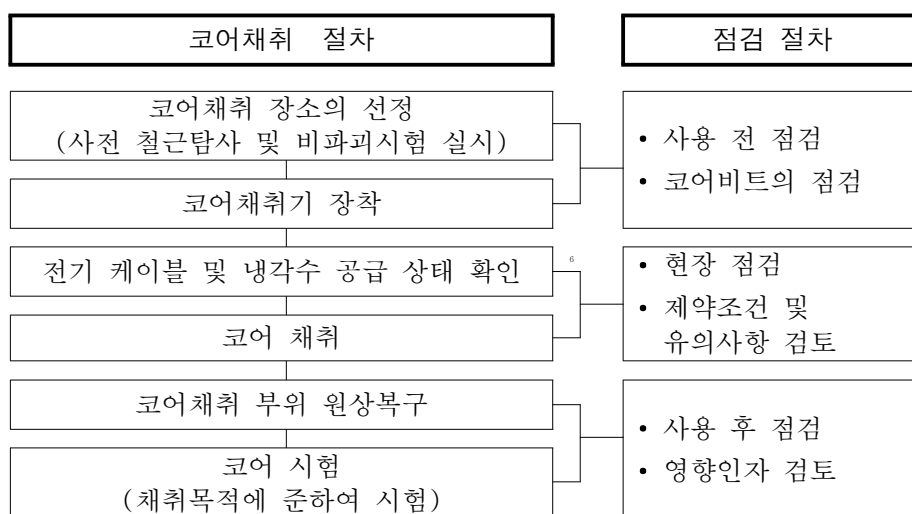
2) 건식 코어비트

코어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콘크리트의 일부 성분의 유출을 방지할 목적으로 실시하는 건식천공은 내열성의 코어비트를 사용한다.

6.4.2 코어채취

가. 채취기의 활용을 위한 제약조건 검토

- 코어채취 대상구조물의 제약조건과 종류, 채취범위 등을 파악하여 결과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열화 손상이 심한 장소에서 코어를 채취할 경우에는 인접하여 비교적 양호한 장소에서도 코어를 채취하여 상호 비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코어채취 과정에서 구조물 및 코어 공시체가 손상이 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채취된 코어의 강도시험 방법은 KS F 2422 규격에 준한다.



[그림 6.5] 코어채취 방법 및 기기 점검 등의 절차

나. 코어채취의 유의사항

1) 코어채취 장소의 선정

① 코어채취 방향

- 코어채취 방향, 위치 및 수분공급의 유무 등에 의해 콘크리트의 품질이나 열화 정도가 다르기 때문에 조사목적에 맞는 채취 방향과 위치를 정하여야 한다.

② 코어채취장소의 선정

- 코어채취에 앞서 다음 사항에 대한 사전조사가 반드시 필요하다
 - 철근이나 배관·배선 등의 유무나 위치의 확인
 - 예정되어 있는 채취 장소의 작업환경에 대한 검토
 - 작업에 따르는 소음과 냉각수(배수·먼지 등)가 주변에 끼치는 영향

2) 대상 시설물에 따른 코어 채취 장소

- 철근콘크리트 라이닝에서는 주철근을 절단하는 경우가 없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 코어를 완전 추출 또는 중간 추출할 것인지 등의 판단이 필요하다.
- 코어를 추출한 장소에 대해서는 신속히 보수하여야 한다.

3) 채취 코어의 직경 결정

- 강도평가의 경우 코어 공시체의 지름은 일반적으로 굵은골재 치수의 3배 이상으로 하고, 어떤 경우에도 2배 이하로 되어서는 안 된다.
- 조사 목적에 따라 콘크리트 중 일부 성분의 유출이 방지되도록 건식 코어비트의 사용이 필요하다.

4) 코어의 보관

- 코어 추출 즉시 코어에 부착되고 있는 가루 및 먼지 등을 씻어 내고, 철근이나 균열 등의 유무를 확인하고, 사진촬영 한다.
- 세척된 코어 표면의 변색깊이나 탄산화 깊이 등을 조사해 둔다.
- 세척과 확인 및 사진촬영이 끝나면 즉시 습기 찬 형겅 등으로 코어를 감싼 후 두꺼운 비닐봉투에 수납하여 시험을 하는 장소로 발송한다.

5) 강도시험용 코어의 조건

- 채취한 코어는 거의 완전한 원기둥 모양의 공시체를 채취할 수 있어야 한다.
- 코어 공시체에 재료분리, 공극의 과다 및 코어의 단면 전체에 굵은골재가 포함될 경우 등은 강도시험용 공시체로서는 부적절이다.
- 코어의 표층으로부터 1cm 정도의 부분은 공시체로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다.
- 시험 중에 코어가 파손될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비 코어 공시체가 있는 것이 바람직하다.
- 채취된 코어는 채취 후 3~4일 이내에 시험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6.4.3 코어강도에 미치는 영향인자

가. 코어의 보존

- 코어의 수분함유에 있어서 포화건조상태는 공기 중 건조상태에 비해 10~15% 정도의 적은 값을 나타내므로 채취된 코어와 현장 콘크리트의 수분 상태를 고려하여 시험하는 것이 중요하다.

나. 높이/직경비의 영향

- 코어 공시체의 높이/직경비(h/d)가 적어질수록 겉보기 압축강도는 커진다.
- 공시체 높이가 직경의 2배보다 작을 경우에는 보정계수를 곱하여 공시체의 높이가 직경의 2배가되는 코어 공시체의 압축강도로 환산하여야 한다.

다. 매입 철근의 영향

- 코어를 가로지르는 철근은 강도시험 결과 5~10% 정도가 감소된다.
- 코어 축에 수직으로 철근이 존재한다면 압축강도는 보정을 하며, 보정 값이 10%를 초과하는 코어강도는 제외한다.

라. 드릴링의 영향

- 절단토크와 코어강도의 관계는 절단토크에 반비례해서 코어강도가 감소한다.
- 드릴링에서 토크(Torque)의 세기가 크면 클수록, 드릴링 속도가 빠르면 코어강도는 저하한다.

마. 코어채취 위치와 방향의 영향

- 일반적으로 콘크리트 채취방향이 콘크리트 타설방향과 직각인 경우(보통 수평방향 채취)는 평행인 경우에 비하여 약 8% 강도 저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 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바. 코어 직경의 영향

- KS F 2405에서 사용되는 콘크리트강도 시험용 표준공시체는 $\phi 15 \times 30\text{cm}$ 의 원주형 공시체를 사용
- 공시체의 형상이 얇은편이면 공시체의 치수가 작을수록 압축강도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설계기준에서는 $\phi 10 \times 20\text{cm}$ 공시체로 시험한 압축강도의 97%를 $\phi 15 \times 30\text{cm}$ 의 공시체 강도로 환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6.4.4 시험 보고서

보고서는 코어채취 및 강도시험 등의 관련 근거에서 권장하는 사항에 따라 시험되었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시험조건 및 피시험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 코어의 번호
- 코어의 채취 위치
- 코어의 채취방법
- 재령
 - 채취 시의 재령 및 시험 시의 재령, 또는 그 어느 것으로 한다.
- 코어의 평균 지름(mm), 평균 높이(mm) 및 보정계수
- 최대 시험하중(N)
- 코어 압축강도(MPa)

6.5 철근탐사시험¹⁾

6.5.1 일반

가. 일반

철근콘크리트의 철근량은 구조물 안전성 평가 결과에 영향을 크게 미치는 인자이므로 대상 구조물의 정확한 철근 정보를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철근탐사장비의 사용법에 있어서는 제작사의 매뉴얼에 의하여 비교적 쉽게 사용 가능하지만 탐사 결과의 판독에 있어서는 각 장비마다 제공하는 탐사 가능 범위 및 오차가 실제와는 다른 경우가 많고, 분석 방법에 따라 또는 판독자에 따라 많은 오차 가능성을 포함하고 있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철근탐사 방식은 보편적으로 전자기유도(자기감응) 방식과 전자파레이더 방식 등이 있다.

나. 적용 범위

전자기유도 및 전자파레이더 방식에 의한 철근탐사 장비를 사용하여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에 배근된 철근의 위치, 지름, 콘크리트 피복 두께의 탐사에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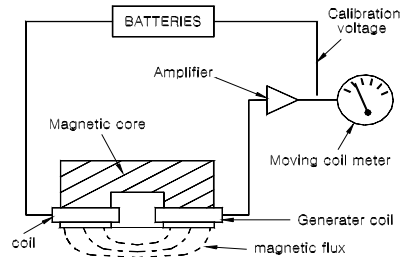
- ① 철근의 위치, 지름, 콘크리트 피복 두께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의 내력을 평가하는 데 이용할 수 있다.
- ② 콘크리트 강도, 품질 및 내구성 조사에 앞서 철근의 위치를 탐사하는 예비시험 방법으로 적용할 수 있다.
- ③ 탐사한 철근 위치, 지름, 그리고 콘크리트 피복 두께는 콘크리트 타설 후의 각 부재 배근의 적절성 여부를 판단하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다.

다. 전자기유도 방식

전자기유도 방식을 이용한 장비는 기본적으로 평행 공진(共振)회로의 전압진폭 감소에 기초를 두고 있으며, Probe나 Scanner에서 만들어진 코일에 전류를 흘려 교

1) ◦ KS F 2734:2004 전자기유도법에 의한 철근 탐사 시험 방법
◦ KS F 2735:2004 전자파레이더법에 의한 철근탐사 시험 방법
◦ 콘크리트 및 강재 비파괴시험 매뉴얼 : 한국시설안전공단('06.12)
◦ 진단장비 활용·관리 매뉴얼 : 한국시설안전공단('06.1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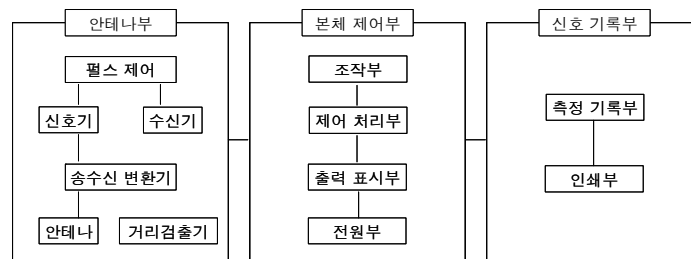
류자장을 만들어 내고, 코일 전압의 변화는 자장내 자성체의 특성 및 거리에 의해 변하기 때문에 콘크리트 내부에 철근의 위치 및 직경 등을 구하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다.



[그림 6.6] 전자기유도 방식에 의한 철근탐사장비의 구성

라. 전자파레이더 방식

해당 물체 내의 송신된 전자파가 전기적 특성(유전율 및 전도율)이 다른 물질(철근, 매설물, 공동 등)의 경계에서 반사파를 일으키는 성질을 이용해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내부를 향해 전자파를 안테나로부터 방사하여 목표물에서 반사해 온 신호를 안테나로 수신한 후 콘크리트 내부의 상태를 수직 단면도로 본체 표시기에 나타내어 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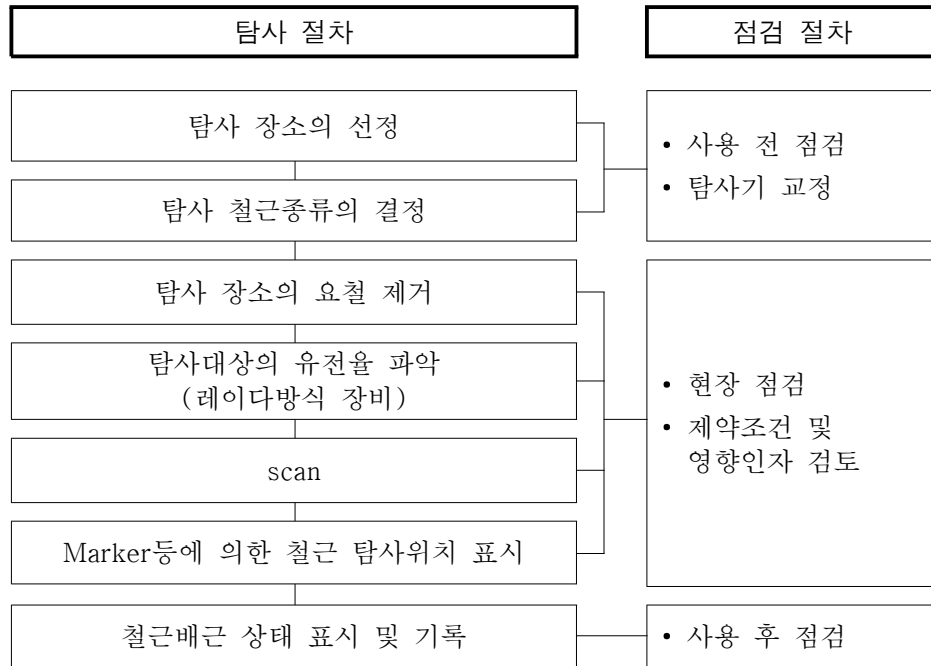
[그림 6.7] 전자파 레이더법에 의한 철근탐사장비의 장치 구성도

6.5.2 시험 등의 절차

가. 철근탐사시험을 위한 제약조건 검토

- 콘크리트 중의 각종 영향인자에 따라 철근탐사 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들 인자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반영시켜야 한다.
- 탐사 대상구조물의 제약조건과 종류, 탐사범위 등을 파악하여 탐사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탐사 장소의 이동 시 마다 전자파레이더 방식 장비는 탐사 대상체의 유전율을 최소한의 드릴링에 의한 실측 피복두께 파악하여 이를 고려한 교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철근탐사시험 방법에 대한 절차는 KS F 2734 및 KS F 2735의 규정에 준한다.



[그림 6.8] 철근탐사 및 장비 점검 등의 절차

나. 철근탐사장비별 시험 정밀도를 위한 제약조건

철근탐사장비의 특성에 따라 탐사 및 결과 처리방법이 상이하므로 이의 시험정밀도를 높일 수 있도록 다음의 사항을 검토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또한, 탐사방식에 따른 환경과 영향인자 등을 고려하여 시험하여야 한다.

- 탐사조건 및 적용한계
- 활용에서의 주의사항
- 활용 제고를 위한 조건

6.5.3 시험 보고서

보고서에는 탐사방식에 따른 시험의 관련 근거에서 권장하는 사항에 따라 시험되었음을 명확히 하고, 시험조건 및 피시험체와 관련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도록 기록하여야 한다.

가. 전자기유도 방식

- 날짜, 시간, 측정 장소, 기온, 습도
- 시험 대상 구조물이나 부재에 대한 상세
- 시험 부위의 콘크리트 상세
- 시험 위치
- 사용한 철근탐사 시험기의 유형과 검 · 교정한 날짜
- 보정법에 대한 상세
- 철근의 지름, 위치 그리고 콘크리트 피복 두께에 대한 시험값
- 정밀도
- 시험한 철근의 배근상태에 대한 그림
- 참고 문헌

나. 전자파레이더 방식

- 날짜, 시간, 시험 장소, 기온, 습도
- 시험 대상 구조물에 대한 설명이나 탐사 시의 현장 조건
- 시험 위치
- 시험 한계 (잡음의 원인, 장애물 등등)
- 시험값과 필터, 안테나 주파수 등의 매개변수의 표시
- 시험 대상 면에서의 안테나 횡단 위치, 작동 방향 및 방위
- 피복두께와 철근의 지름에 대한 실측값과 보정한 값
- 정밀도
- 시험한 철근의 배근상태에 대한 그림
- 참고 문헌

6.6 철근부식도시험¹⁾

6.6.1 일반

가. 일반

철근콘크리트에 매입되어 있는 철근부식은 전기화학적 반응에 의거하여 진행하므로 철근부식시험은 전기화학적 방법을 적용한다. 정상적인 콘크리트는 강알칼리성으로 철근은 부동태로 전위는 $-100 \sim -200\text{mV}(\text{CSE})$ 를 나타내지만, 염화물의 침투와 탄산화(중성화)로 철근이 활성상태로 되어 부식이 진행하면 전위는 부(-)방향으로 진행한다.

철근의 전위는 철근부식 장소의 검출과 상태를 파악하는데 효과적이나, 현장 구조물에서 철근부식은 위치와 진행 속도 등 불균일하게 발생하기 쉬워 현장시험 상의 제약으로 시험방법과 결과의 분석에서 여러 가지의 곤란한 문제가 따른다는 것을 유의해야 한다.

나. 적용 범위

본 세부지침에서는 철근부식시험과 관련하여 시험기구 및 시험방법 등의 비교에서 사용 빈도가 높은 자연전위법을 대상으로 기술한다.

[표 6.4] 철근의 부식진단에 관한 전기화학적 비파괴시험 방법

시험 종류	측정 내용	적용성		부식의 유무
		실험실	현장	
자연전위법	자연전위 측정으로 철근 부식 상태 판정	높다	높다	정성적
표면전위차법	전위 기울기의 측정으로 철근 부식 상태 판정	높다	높다	정성적
분극저항법	미소 직류의 인가로 분극저항 측정으로 철근부식 속도 측정	높다	중간	정량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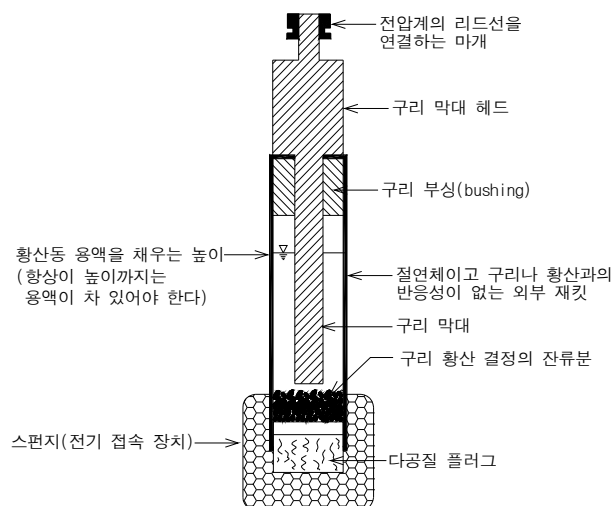
자연전위법은 조사시점에서 부식 가능성을 진단하는 것으로 구조물 내에서 철근부식 가능성이 높은 장소를 찾아내며, 공용 중에 내부철근이 부식되고 이로 인해 콘크리트에 균열이 발생할 때까지 철근이 부식하는 초기 단계를 파악하는 것에 유효하다.

-
- 1) ◦ KS F 2712:2002 콘크리트 내부 철근의 반전지 전위 시험 방법
 ◦ 콘크리트 및 강재 비파괴시험 매뉴얼 : 한국시설안전공단('06.12)
 ◦ 진단장비 활용·관리 매뉴얼 : 한국시설안전공단('06.12)

- 자연전위법은 조사시점에서의 철근의 부식 가능성에 대해서 진단하는 것이며, 철근의 부식속도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다.
- 보다 정확한 철근부식의 진단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시험결과를 종합하여 철근의 부식 정도를 판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철근의 피복두께
 - 콘크리트 중의 염화물함유량
 - 콘크리트의 탄산화(중성화) 깊이
 - 콘크리트의 저항률 측정
 -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상황 등의 관찰

다. 반전지

동-황산동 반전지는 동이나 황산동과 반응하지 않는 절연체로 된 딱딱한 튜브 또는 용기, 모세관 현상에 의해 습윤 상태로 유지되는 다공질의 나무 또는 플라스틱 플러그 그리고 포화 황산동 용액이 담겨 있는 튜브 속에 침지된 구리 막대로 구성된다.



[그림 6.9] 동-황산동 반전지의 단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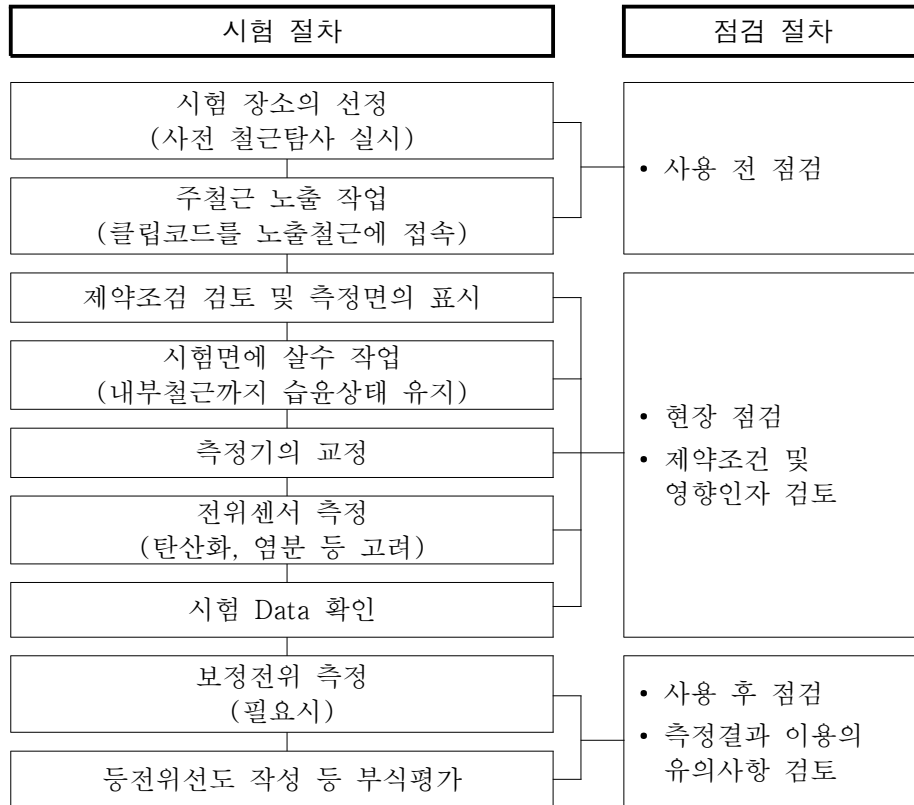
6.6.2 시험 등의 절차

가. 철근부식 측정장비의 활용을 위한 제약조건 검토

- 시험 대상구조물의 제약조건과 종류, 측정범위 등을 파악하여 시험 정밀도를 높일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콘크리트 중의 각종 영향인자에 따라 측정결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이들 인

자에 관한 정보를 입수하여 이를 반영시켜야 하며, 시험 대상은 시험정밀도의 저하 혹은 시험 불가능한 조건이 아닌 범위에 있어서는 자연전위의 측정이 가능하다.

- 현장시험 및 결과분석에 대한 절차는 KS F 2712의 규정에 준한다.



[그림 6.10] 철근부식도시험 및 측정기 점검 등의 절차

나. 시험 정밀도를 위한 제약 조건

1) 시험 정밀도

- 동일 반전지로 동일 위치에서 반전지를 연결했을 때와 끊었을 때의 반전지 전위 측정값의 차이가 10mV를 넘어서는 안 된다.
- 두 개의 서로 다른 반전지로 동일 위치에서 측정했을 때 측정값의 차이가 20mV를 넘어서는 안 된다.
- 자연전위는 1mV의 단위까지 측정한다.

2) 자연전위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 콘크리트 표면이 대단히 건조해 전기적으로 절연체에 가까울 경우
- 콘크리트 표면에 도장 등의 절연재료가 피복되어 있는 경우

- 콘크리트 표면이 물에 잠겨 있는 경우
- 내부철근이 에폭시 수지도장, 아연도금 등의 표면 코팅되어 있는 경우

3) 전위센서의 선정

- 막대형 전극 : 임의의 점을 개별적으로 측정
- 회전형 전극 : 한번에 연속해서 동일한 간격의 점을 복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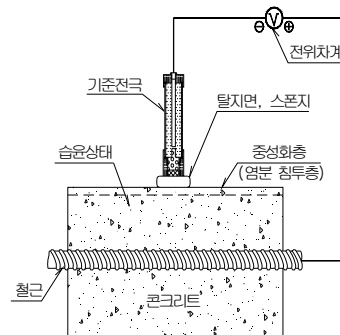
4) 대상지점의 고려 사항

- 콘크리트 표면상태 : 동결, 습윤상태, 표면도장 여부 등
- 내부의 강재상태 : 강재표면에 절연재료의 피복 여부 등

다. 측정간격의 선정

1) 통형 기준전극을 사용할 경우의 측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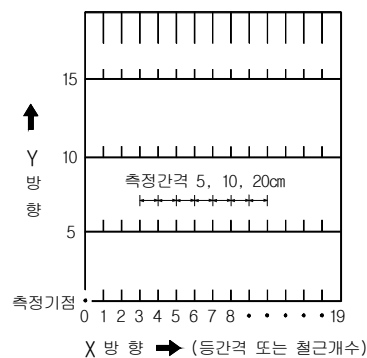
- [그림 6.11]에서 탈지면 등에 물을 적시고 충분히 짜내서 철근 바로 위 콘크리트 표면의 격자 상에서 한 점씩 측정하여 기록한다.



[그림 6.11] 자연전위의 측정방법

2) 회전식(휠) 기준전극을 사용할 경우의 측정

- 회전식 기준전극의 둘레에 고흡수성 스폰지를 장착한 회전식 기준 전극이 [그림 6.12]와 같이 선상이나 격자상으로 측정한다.



[그림 6.12] 측정범위의 표시

라. 철근부식도시험 조건

1) 대상지점의 내부철근과의 통전 시험

- 시험 대상으로 하는 철근의 모두가 전기적으로 서로 연속하고 있는지를 통전시험 등을 통하여 파악하여야 한다.

2) 시험면과 내부철근 사이의 습윤 유지

- 콘크리트 표면에 살포되는 물이 콘크리트에 충분히 침투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후에 자연전위 측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 측정 중에 콘크리트 표면이 충분한 습윤상태에 있는지를 확인하여 그러하지 않을 경우에는 다시 콘크리트 표면을 습윤 시킬 필요가 있다.

3) 대상 콘크리트의 품질상태 보정

- 시험결과와 정밀도는 콘크리트의 품질(함수상태, 탄산화 정도, 염분함유량 등), 온도, 대조전극의 종류 등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므로 이의 조건 등을 파악하여 기록하며, 측정결과와 보정에 이용하여야 한다.
- 철근까지 탄산화가 진행한 경우에서의 전위 해석은 반드시 충분한 전문지식을 가진 부식 기술자나 전문가에 의해 분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4) 대상 콘크리트 표면과 내부의 전위차 보정

- 자연전위의 측정은 피복 콘크리트의 품질에 따라서 큰 액간전위차나 전압강하 등의 오차를 포함하여 측정되는 오차를 보정하기 위해서 보정 전위 측정이 필요하다.
- 보정전위는 표면전위와 내부전위와의 실측값 전위차이다.

6.6.3 철근부식 판정

철근부식 유무의 판정은 KS F 2712에서 제시하고 있는 기준을 참고하여 다음 표와 같이 판정한다. 한편, 측정장비의 제조사에서 제시하는 판정기준을 적용할 경우 그 기준을 기술하여야 한다.

[표 6.5] 철근부식 유무의 판정기준 (자연전위 : CSE 기준)

부식 등급	KS F 2712 규격	
	자연전위 E (mV)	부식확률 P(%)
I	$E > -200$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없음
II	$-200 \geq E > -350$	불명확
III	$-350 \geq E$	90% 이상의 확률로 부식 있음

6.6.4 시험 보고서

시험 보고서는 다음 사항을 기록한다.

- 반전지의 종류(동-황산동 반전지 외에 다른 전지를 사용한 경우)
- 측정시 반전지의 평균 온도 예측값
- 콘크리트 표면의 사전 침윤 방법과 철근과의 접촉 방법
- 철근의 접촉 위치를 나타내는
 - 등전위도
 - 누적 도수 분포도
 - 또는 상기 두 가지 모두
- -350mV 보다 (음의 방향으로) 낮은 전위값의 백분율
- -200mV 보다 (음의 방향으로) 낮은 전위값의 백분율

6.7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¹⁾

6.7.1 일반

가. 일반

본 세부지침에서는 콘크리트 내에 매입된 철근을 부식시킬 수 있는 탄산화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페놀프탈레인 용액의 분무에 의한 탄산화 깊이를 측정하는데 목적이 있다.

나. 적용 범위

이 측정 방법은 실험실 또는 현장에서 제작하여 옥내 또는 옥외 등에 보존된 콘크리트 및 모르타르 공시체, 콘크리트 구조물 또는 콘크리트 제품에서 채취된 코어 공시체, 사용 중인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채취한 시료 등에 적용할 수 있다.

다. 측정 장치

측정용 장치 및 기구는 다음 중 필요한 것을 이용하도록 한다.

- 공시체의 할렬 시험이 가능한 압축 시험기, 휨 시험기, 만능 시험기, 해머 등의 장치 및 기구
- 콘크리트 구조물을 깎아 낼 수 있는 정, 드릴, 콘크리트 커터 등의 기구
- 콘크리트의 작은 조각이나 가루 등을 제거 할 수 있는 솔, 전기 청소기
- 버니어캘리퍼스
 - 정규 눈금 0.5mm까지 읽어낼 수 있는 것
- 시 약
 - 탄산화 깊이를 측정할 때 이용하는 시약에는 KS M 8238에서 규정한 페놀프탈레인 용액 또는 이와 같은 성능을 갖는 시약을 이용한다.
 - 지시약으로 사용되는 페놀프탈레인 용액은 95% 에탄올 90mL에 페놀프탈레인 분말 1g을 녹여 증류수를 첨가하여 100mL로 한 것이다.

1) ○ KS F 2596:2004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방법

○ 콘크리트 및 강재 비파괴시험 매뉴얼 : 한국시설안전공단('06.12)

6.7.2 시험방법

가. 콘크리트 구조물에서 깎아낸 면에서 시험하는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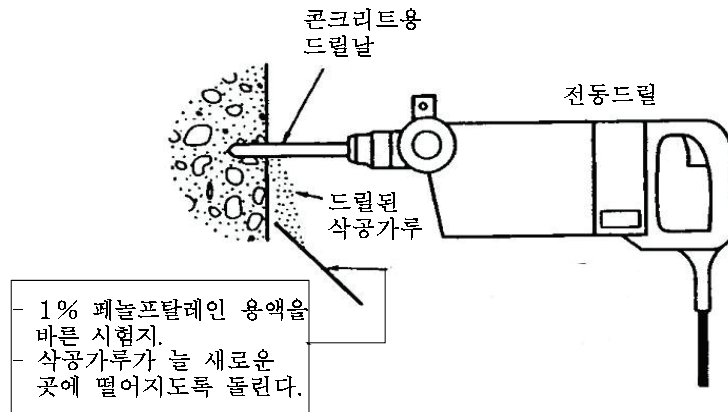
- 철근 위치를 파악한 후에는 시험 위치를 결정
 - 시험개소 · 부위 · 노면 아래조건 · 주위 환경 등에 의한 방법을 적시에 선택한 후에 분진의 비산방지책을 검토해야 한다.
- 깎아낸 콘크리트 표면에 콘크리트 조각이나, 가루를 완전히 제거한다.

나. 코어 공시체를 이용하는 경우

- 코어 공시체의 지름
 - KS F 2422 「콘크리트에서 절취한 코어 및 보의 강도시험 방법」에서 규정하는 굵은골재 최대치수의 3배 이상으로 한다.
- 코어 공시체의 길이
 - 철근 피복깊이 정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코어는 구조물의 어디에서 채취한 것인지, 표면 측인지 어느 쪽인지 등의 정보를 기입해 둔다.
- 시험조건
 - 양생에 관해서는 코어표면을 충분히 세척하여 수건 등으로 표건 정도까지 닦은 후에 비닐자루로 밀봉 저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코어공시체를 할렬하고, 할렬면을 측정대상으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
- 코어 측면에서의 시험은 가능하면 피한다.
 - 코어비트 마찰에 의한 조성 변화, 커팅시의 수분에 의한 영향 등으로 시험 결과가 다를 수 있다.

다. 드릴을 이용하는 경우

[그림 6.13]과 같이 $\phi 10\text{mm}$ 의 드릴링에 의해 채취되는 콘크리트가루를 이용하여 탄산화깊이를 시험하는 방법으로 드릴링에 의해 발생하는 콘크리트가루가 페놀프탈레인용액을 적신 원형시험지에 떨어져 변색되는 시점을 탄산화깊이로 정하고 있다.



[그림 6.13] 드릴에 의한 탄산화깊이 측정

6.7.3 탄산화 깊이 측정

가. 측정 준비

- 측정면의 처리가 종료된 후 바로 측정면에 시약을 분무기로 액체가 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분무한다.
- 측정면의 처리가 종료된 후 바로 측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비닐필름 등으로 측정면을 밀봉한다.

나. 탄산화깊이 측정

- 콘크리트 표면으로부터 적자색으로 변색한 부분까지의 거리를 0.5mm 단위로 측정한다.
- 선명한 적자색으로 변색된 부분보다 옅은 부분에 흐린 적자색의 부분이 나타나는 경우
 - 선명한 적자색 단면까지의 거리를 탄산화 깊이로서 측정함과 동시에 연한 적자색 부분까지의 거리도 함께 측정한다.
- 평균 탄산화깊이는 측정값의 합계를 측정 개수로 나누어 구하고, 반올림하여 소수점 이하 한 자리까지 구한다.

다. 측정 지점

- 공시체의 할렬면이나 절단면을 측정면으로 하는 경우
 - 탄산화의 상황에 따라 10~15mm간격마다 1곳
- 코어 공시체의 측면을 측정면으로 하는 경우는 5곳 이상

- 콘크리트 구조물의 깎아낸 면에서 측정하는 경우
 - 깎아낸 면의 크기에 따라 4~8곳 정도

[표 6.6] 페놀프탈레인 분무 시기와 측정 시기

측 정 면	청소방법 전처리법	시약의 분무시기	탄산화깊이 측정시기 (분무 후의 경과시간)
• 현장 깎아낸 면 • 코어 할렬면	blow 뿜기	직후	직후
		3~6시간 직후	1~10분 후
		1~7일 후	1분~2일 후
	blow 뿜기 후 물축임	직후~1일 후	직후
		2~4일 후	직후~2일 후
		5~7일 후	직후
• 임의 추출 코어 표면 • 콘크리트 커터 절단면	물씻기 후 표면 건조	1일 후	10분~2일 후
• 수중 양생 후의 할렬면	blow 뿜기	직후~1일 후	직후
• 수중 양생 후 콘크리트 커터 절단면	물씻기 후 표면건조, 분무 전 물축임	1일 후	10분~2일 후

6.7.4 탄산화속도계수 산정

탄산화속도는 경과시간 t 의 평방근에 비례하여 진행한다고 하는 $\sqrt{t}$ 법으로 표현된다. 탄산화깊이 C 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C = A \times \sqrt{t}$$

여기서, C : 탄산화깊이 (mm)

A : 탄산화속도계수 (mm/ $\sqrt{\text{년}}$)

t : 재령(년)

6.7.5 시험 보고서

가. 반드시 기록하여야 할 사항

보고할 사항 중 명확히 파악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확인되지 않음]으로 표기한다.

- ① 구조물의 명칭
- ② 구조물의 경과 연수
- ③ 코어 채취 및 떼어냄을 행한 연월일 및 시험일

- ④ 코어 채취 및 떼어냄을 행한 위치
 - 옥내, 옥외, 부위, 방위, 높이 등
- ⑤ 사용 골재의 종류(보통 골재, 경량 골재)
- ⑥ 측정면의 종류
 - 코어의 측면, 코어의 할렬면, 구조물의 떼어낸 면 등
- ⑦ 시 약
- ⑧ 측정 기구
 - 버니어 캘리퍼스, 눈금자 등
- ⑨ 시약 분무로부터 탄산화 깊이까지의 시간
- ⑩ 탄산화 깊이의 측정 장소의 각 측정값, 평균값, 최대값
- ⑪ 연한 적자색으로 변색된 부분의 유무
 - 있는 경우 그 상황을 사진 등으로 기록한다.

나. 필요에 따라 기록하여야 할 사항

- ① 코어 채취 또는 떼어냄을 행한 위치에서의 누수 유무
- ② 구조물 주변의 탄산가스 농도
- ③ 콘크리트 압축 강도
 - 설계기준강도 또는 코어 강도
- ④ 탄산화 상황의 사진
- ⑤ 철근의 피복두께
- ⑥ 탄산화 속도 계수

제 7 장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

7.1 일반

7.2 재료시험 항목 및 기준수량

제7장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

7.1 일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 내용에서 현장조사 및 시험 항목 중 기본적인 재료 시험 항목에 대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조사수량을 구체적으로 명시함으로써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의 현장조사 범위 및 내용이 일정수준 이상 유지되도록 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시설물의 상태평가 또는 안전성 평가가 객관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함에 있다.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은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에 의한 시설물의 상태 또는 안전성 평가가 객관적이며, 보편타당하게 이루어지고 이를 위한 기초자료를 충분히 확보할 수 있도록 결정하여야 한다.

7.2절의 재료시험 항목 및 기준수량에서 선택과업 재료시험의 실시여부는 과업의 내용에 의거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과업의 내용에는 해당 재료시험의 기준수량이 명시되어야 한다. 다만 선택과업 재료시험에서 기준수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해당 재료시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소수량으로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본 장에서 제시되는 내용을 원칙으로 하되 시설물 특성 및 제반여건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할 수 있다.

7.2 재료시험 항목 및 기준수량

7.2.1 정기점검

정기점검은 외관조사 수준의 관찰에 의해 시설물의 외관 상태를 중심으로 점검하며, 점검결과에 의해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매기지 않으므로 특별한 재료시험 및 수량 기준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는다.

7.2.2 긴급점검

긴급점검은 특별한 경우에 실시되는 점검으로서 점검의 범위 등은 정밀점검 내용을 기본으로 실시하나, 긴급점검의 필요 내용과 그 상황에 따라 크게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 역시 크게 달라지므로 점검의 범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하여 관리주체와 점검 책임기술자의 협의에 의하여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을 정하도록 한다.

7.2.3 정밀점검

가. 재료시험 항목 및 평가방법

정밀점검은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결과에 의해 해당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재료시험 항목에 대하여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 등의 내용으로 구분되며, 기본과업에 의한 재료시험은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선택과업의 재료시험 실시 여부는 정밀점검의 범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한 과업의 내용에 따른다.

[표 7.1] 정밀점검의 재료시험 항목

구 분	기본과업	선택과업
콘크리트 라이닝	○ 측정분할 ○ 콘크리트 강도 (비파괴 : 반발경도시험) ○ 탄산화깊이 측정 시험	○ 콘크리트 강도 (국부파괴 : 코어시험) ○ 염화물함유량시험¹⁾

주1) ○ 염화물함유량시험 대상은 다음 표에서 정하는 해안에서 250m 이내 거리에 위치하고

있는 시설물을 대상으로 하며 시험부재의 철근깊이까지 10mm 또는 20mm 단위로 깊이별로 구분하여 KS F 2713(2002)의 산-가용성 염화물시험방법으로 실시하여 염화물의 분포를 파악하여야 한다.

- 또한, 동절기 염화칼슘 등의 사용 등에 따라 염해의 우려가 있는 시설물도 포함한다.

[염해에 관한 외적 성능 저하요인의 구분]

구분	해안에서 거리	염소이온의 침투정도
심한 염해 지역	0m 부근	조수간만 및 파도에 의해 빈번히 해수에 접한다.
보통 염해 지역	100m 이내	강풍시에 해수적(海水滴)이 비래하고, 콘크리트 면이 해수에 젖는다.
경미한 염해지역	250m 이내	해염입자가 비래하고 콘크리트중에 유해량의 염화물이 축적된다.
염해를 고려하지 않아도 좋은 지역	250m 초과	콘크리트중에 유해량의 염화물이 거의 축적되지 않는다.

출처 : 염해 및 탄산화에 대한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의 내구성 설계·시공·유지관리 지침 : 한국콘크리트학회('03.4)

[표 7.2] 정밀점검의 재료시험 평가방법

구 분	재료시험 항목	평가 방법
기본과업	○ 측점분할	○ 신축이음부 또는 평가단위로 분할
	○ 콘크리트강도 - 비파괴시험법 : 반발경도시험	○ 외관상 건전부위와 불량부위에 대한 비교평가 필요함.
선택과업	○ 콘크리트강도 - 국부파괴시험법 : 코어시험	○ 콘크리트강도 평가의 기준 ○ 필요시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 철근탐사 시험 - 철근배근상태 - 철근피복두께	○ 구조검토를 위한 철근조사 ○ 콘크리트의 강도 및 물성시험 등을 위한 철근위치 탐사
	○ 콘크리트 염화물 함유량	○ 시료채취 및 평가

나. 재료시험 기준수량

상태평가를 위한 기본과업의 재료시험에 대한 기준수량은 [표 7.3]과 같으며, 선택과업에 의한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표 7.4]와 같으나, 이외의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에 대해서는 과업의 내용에 따른다.

[표 7.3] 정밀점검 기본과업의 재료시험 기준수량

구 분	재료시험 기준수량	비 고
측정분할	○ 5~20m 간격	○ 책임기술자 조정 가능
반발경도시험	○ 총수량 = (총연장 ÷ 300m)개소	○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탄산화깊이 측정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 총연장 1,000m 미만 : 2개소 - 총연장 1,000m 이상 : 최소2개소+1,000m당 1개소 추가	○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표 7.4] 정밀점검 선택과업의 재료시험 기준수량

구 분	재료시험 기준수량	비 고
코어채취 ¹⁾	○ 총연장 = • 1,000m 미만 : 2개소 • 1,000m 이상 : 최소2개소+1,000m당 1개소 추가	○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 실내시험 선택과업
염화물 함유량 시험		○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주1) 이전의 실내시험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고, 평가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기존 자료 이용 가능

7.2.4 정밀안전진단

가. 재료시험 항목

시설물에 대한 상태평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이에 필요한 재료시험 항목에 대하여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 등의 내용으로 구분되며, 기본과업에 의한 재료시험은 정밀안전진단에서 필수적으로 실시한다.

다만, 선택과업에 대한 재료시험의 실시 여부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 및 내용 등을 고려한 과업의 내용에 따른다.

[표 7.5] 정밀안전진단의 재료시험 항목

구 분	기본과업	선택과업
콘크리트 라이닝	○ 측정분할 ○ 터널 단면측량 ○ 콘크리트 강도 - 비파괴 : 반발경도시험, 초음파법 ○ 철근배근탐사 - 철근간격 - 철근피복두께 ○ 탄산화 깊이 측정 ○ 철근부식도조사 ○ 균열깊이조사 ○ 염화물함유량시험¹⁾	○ 콘크리트 강도 - 국부파괴 : 코어시험 ○ 내공변위 측정 ○ 진동 및 소음측정 ○ 변형률 측정 ○ 수질조사 및 침전물 분석 ○ 지표·지질조사 등 - 시추조사 - 지반탐사

주1) 염화물함유량 시험은 [표 7.1]에 따라 실시한다.

[표 7.6] 정밀안전진단의 재료시험 평가방법

구 분	재료시험 항목	평가 방법
기본과업	○ 측정분할	○ 신축이음부 또는 평가단위로 분할
	○ 터널 단면측량	○ 내공단면의 상태파악 ○ 종·횡단측량 및 선형측량
	○ 콘크리트강도(비파괴시험법) :반발경도시험, 초음파법	○ 외관상 건전부위와 불량부위에 대한 비교평가 필요함.
	○ 철근탐사시험 - 철근배근상태 - 철근피복두께	○ 구조검토를 위한 철근조사 ○ 콘크리트의 강도 및 물성시험 등을 위한 철근 위치 탐사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 현장측정 ○ 탄산화속도계수 산정
	○ 철근부식도시험	○ 주요부재의 철근 대상 ○ 철근부식확률 평가
	○ 염화물함유량시험	○ 시료채취 및 평가
	○ 균열깊이 조사	○ 철근 매입깊이 이상 발견 또는 관통 여부 등 평가

[표 7.6] 정밀안전진단의 재료시험 평가방법 (계속)

구 분	재료시험 항목	평가 방법
선택과업	○ 콘크리트 강도(국부파괴법)	○ 콘크리트강도 평가의 기준 ○ 필요시 콘크리트 물성시험 등
	○ 내공변위 측정	○ 터널의 붕괴징후 및 변위 예측
	○ 진동 및 소음측정	○ 터널 라이닝에 미치는 영향 평가
	○ 변형율 측정	○ 터널 라이닝의 안전성평가
	○ 수질조사 및 침전물 분석	○ 콘크리트와의 화학반응 여부 판단
	○ 시추조사	○ 과업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결정
	○ 지반탐사	○ 과업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결정

나. 재료시험 기준수량

상태평가를 위한 기본과업의 재료시험에 대한 기준수량은 [표 7.7]과 같으며, 선택과업에 의한 재료시험 기준수량은 [표 7.8]과 같으나, 이외의 재료시험 항목 및 수량에 대해서는 과업의 내용에 따른다.

[표 7.7] 정밀안전진단 기본과업의 재료시험 기준수량

구 분	재료시험 기준수량	비 고
측정분할	○ 5~50m 간격	○ 책임기술자 조정 가능
단면측량	○ 총수량 = (총연장÷200m)+1개소	○ 책임기술자 조정 가능
반발경도시험	○ 총수량 = (총연장÷100m)×2개소	○ 동일 부위 시험 원칙 ○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초음파법		
철근탐사시험	○ 총연장 1,000m 미만 = 4개소 ○ 총연장 1,000m 이상 = 최초 4개소 + 500m당 1개소 추가	○ 가능한 한 이전의 시험부위와 중복 피함 ○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염화물 함유량시험	<상 동>	○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탄산화 깊이 측정	<상 동>	○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철근부식도시험	○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조사 및 수량 결정	
균열깊이 조사	○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수량 결정	

[표 7.8] 정밀안전진단 선택과업의 재료시험 기준수량

구 분	재료시험 기준수량	비 고
코어채취 ¹⁾	○총연장 1,000m 미만 = 4개소 ○총연장 1,000m 이상 = 최초 4개소 + 500m당 1개소 추가	○실내시험 실시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내공변위 측정	○과업 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진동 및 소음측정	○과업 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변형율 측정	○과업 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수질 및 침전물조사	○과업 내용에 의해 조사 및 수량 결정	

주1) 이전의 실내시험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고, 평가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기존 자료 이용 가능

제 8 장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8.1 일반

8.2 상태평가 기준

8.3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8.4 상태평가 결과 산정 방법

제8장 상태평가 기준 및 방법

8.1 일반

시설물의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본 장은 정량적이고 객관적인 상태평가를 위하여 시설물의 외관조사 및 내구성조사 등 각 항목에 대한 상태평가 기준을 수록하였고, 시설물의 평가체계에 따라 평가결과를 산정하는 절차를 정리·예시하였다.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수행 책임기술자는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 및 절차에 따라 조사 및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본 장에 기술되지 않은 결함 및 손상이 시설물의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본 장에 기술된 것과 같이 5단계의 상태평가 기준 및 평가유형을 제시하고 의견서를 첨부하여 시설물의 평가에 반영할 수 있다. 또한 시설물의 특성 및 제반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절히 응용할 수 있다.

8.2 상태평가 기준

8.2.1 상태평가 기준

가. 정기점검

정기점검에서는 「세부지침」의 점검서식에 따라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 종류별로 평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나. 정밀점검

정밀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다만, 선택과업으로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였을 경우에는 정밀안전진단의 상태평가 절차에 따라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다. 정밀안전진단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라. 기본시설 및 부대시설

터널의 기본시설과 부대시설은 [표 8.1]과 같다.

터널 부대시설 중에서 시설물의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작으며 본선 구조물에 부분적으로 확폭 또는 접속된 별도공간인 비상주차대, 대피소/변압기굴, 덕트슬래브, 배전실/통신실/기재갱 등은 상태평가지 기본시설에 포함하여 평가한다.

시설물의 중요도 및 규모 등이 상대적으로 큰 연직갱/경사갱, 환기구, 피난연락갱, 연결터널 등은 별도평가 후 부대시설 가중치를 적용하여 시설물을 평가한다.

상태평가 대상구간에 무근콘크리트 라이닝과 철근콘크리트 라이닝 또는 개착터널과 NATM터널 구간이 교호하여 시공된 경우 각각 평가 후 각 길이를 환산한 가중치를 적용한 가중산술평균 방법으로 평가한다

터널 갱구부에 비탈면 또는 옹벽 등이 존재하는 경우 상태평가기준은 세부지침에서 설정하고 있는 상태평가기준을 각각 적용한다.

[표 8.1] 터널의 기본시설물과 부대시설물의 종류

기본시설물	부대시설물
○ 본선라이닝	○ 연직갱 및 경사갱
○ 갯문	○ 환기구
○ 개착터널	○ 피난연락갱
○ 지하차도	○ 연결터널(환기시설)
○ 지하정거장	○ 갯구부옹벽

마. 상태평가 항목

터널의 상태평가는 라이닝 상태평가와 터널주변 상태평가로 구분하여 실시하며 상태평가지 고려해야할 주요 평가항목은 다음과 같다.

[표 8.2] 터널 상태평가 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터널상태 평 가	라이닝 상 태	○ 균 열 ○ 누 수 ○ 파손 및 손상 ○ 재질열화(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재료분리, 철근노출, 탄산화, 염화물)
	터널주변 상 태	○ 배수상태 ○ 지반상태 ○ 갯문상태 ○ 공동구상태 ○ 특수조건 : 도심지 토사터널, 전력구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 (추가점수 부여)

8.2.2 기본시설 결함지수 산정기준

가. 터널별 결함지수 산정기준

터널 시설물 분류에 따른 터널별 상태평가를 위한 결함점수와 결함지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여기서, 라이닝 결함지수(f)는 터널주변 항목점수를 제외한 라이닝만의 결함점수인 총점 36점(조적식 : 26점, 무근콘크리트 : 27점)으로 계산되며, 터널 결함지수(F)는 라이닝의 결함점수 및 터널주변 결함점수를 모두 합한 총점 43점(조적식 : 33점, 무근콘크리트 : 34점, 지하차도 등 : 42점)으로 계산하여 상태평가 결과를 산정하면 된다.

1) 재래식터널(조적식 라이닝)

평가기준		a	b	c	d	e
		$0 \leq f < 0.15$	$0.15 \leq f < 0.30$	$0.30 \leq f < 0.55$	$0.55 \leq f < 0.75$	$0.75 \leq f$
라 이 닝	줄눈균열	0~2	3~5	6~8	9~11	12~13
	누 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채질 열화	박 리	0	0	1	1
		충분리 및 박락	0	0	1	2
	백 태	0	0	1	1	1
터 널 주 변	배수상태	오 염 됨 : 1				
		배수불량 또는 막힘 : 2				
	지반상태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	영향범위 내 : 2 ~ 3			
			영향범위 외 : 1			
	갯문상태	손 상 : 0.5~1				
	공동구상태	덮개파손 및 오염됨 : 0.5				
이물질 퇴적 및 침수 : 1						
특수조건		도심지 토사터널, 전력구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에서 낙수 및 동결위험 (추가점수) : 1~3				
$\text{라이닝 결함지수 (f)} = \frac{\Sigma \text{결함점수}}{26}, \text{터널결함지수 (F)} = \frac{\Sigma \text{결함점수}}{33}$						

2) 재래식터널(무근콘크리트 라이닝)

평가기준		a	b	c	d	e	
		$0 \leq f < 0.15$	$0.15 \leq f < 0.30$	$0.30 \leq f < 0.55$	$0.55 \leq f < 0.75$	$0.75 \leq f$	
라이닝	균열	0~2	3~5	6~8	9~11	12~13	
	누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재질 열화	박리	0	0	1	1	1
		충분리 및 박락	0	0	1	2	3
		백태	0	0	1	1	1
		재료분리	0	0	1	1	1
터널 주변	배수상태	오염됨 : 1					
		배수불량 또는 막힘 : 2					
	지반상태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	영향범위 내 : 2 ~ 3				
			영향범위 외 : 1				
	갱문상태	손상 : 0.5~1					
	공동구상태	덮개파손 및 오염됨 : 0.5					
이물질 퇴적 및 침수 : 1							
특수조건		도심지 토사터널, 전력구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에서 낙수 및 동결위험 (추가점수) : 1~3					
$\text{라이닝 결함지수 (f)} = \frac{\Sigma \text{결함점수}}{27}, \quad \text{터널결함지수 (F)} = \frac{\Sigma \text{결함점수}}{34}$							

3) NATM터널(무근콘크리트 라이닝)

평가기준		a	b	c	d	e	
		$0 \leq f < 0.15$	$0.15 \leq f < 0.30$	$0.30 \leq f < 0.55$	$0.55 \leq f < 0.75$	$0.75 \leq f$	
라 이 닝	균열	0~2	3~5	6~8	9~11	12~13	
	누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재질 열화	박리	0	0	1	1	1
		충분리 및 박락	0	0	1	2	3
		백태	0	0	1	1	1
		재료분리	0	0	1	1	1
터 널 주 변	배수상태		오염됨 : 1				
			배수불량 또는 막힘 : 2				
	지반상태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	영향범위 내 : 2 ~ 3				
			영향범위 외 : 1				
	갱문상태		손상 : 0.5~1				
	공동구상태	덮개파손 및 오염됨 : 0.5					
		이물질 퇴적 및 침수 : 1					
특수조건		도심지 토사터널, 전력구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에서 낙수 및 동결위험 (추가점수) : 1~3					
$\text{라이닝 결함지수 (f)} = \frac{\Sigma \text{결함점수}}{27}, \text{터널결함지수 (F)} = \frac{\Sigma \text{결함점수}}{34}$							

4) NATM터널(철근콘크리트 라이닝)

평가기준		a	b	c	d	e	
		$0 \leq f < 0.15$	$0.15 \leq f < 0.30$	$0.30 \leq f < 0.55$	$0.55 \leq f < 0.75$	$0.75 \leq f$	
라이닝	균열	0~2	3~5	6~8	9~11	12~13	
	누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재질 열화	박리	0	0	1	1	1
		충분리 및 박락	0	0	1	2	3
		백태	0	0	1	1	1
		재료분리	0	0	1	1	1
		철근노출	0	1	2	3	4
		탄산화	0	1	2	3	—
염화물	0	1	1	2	—		
터널주변	배수상태	오염됨 : 1					
		배수불량 또는 막힘 : 2					
	지반상태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	영향범위 내 : 2 ~ 3				
			영향범위 외 : 1				
	갱문상태	손상 : 0.5~1					
	공동구상태	덮개파손 및 오염됨 : 0.5					
이물질 퇴적 및 침수 : 1							
특수조건		도심지 토사터널, 전력구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에서 낙수 및 동결위험 (추가점수) : 1~3					
$\text{라이닝 결함지수 (f)} = \frac{\Sigma \text{결함점수}}{36}, \quad \text{터널결함지수 (F)} = \frac{\Sigma \text{결함점수}}{43}$							

5) TBM 터널(콘크리트 세그먼트 라이닝)

TBM(Tunnel Boring Machine)터널은 소규모 굴착장비나 발파방법에 의하지 않고 굴착에서 버력처리까지 기계화·시스템화되어 있는 대규모 굴착기계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open TBM과 shield TBM으로 구분한다. 본 상태평가기준은 콘크리트 세그먼트 라이닝이 설치되는 TBM터널에 적용한다.

평가기준		a	b	c	d	e	
		$0 \leq f < 0.15$	$0.15 \leq f < 0.30$	$0.30 \leq f < 0.55$	$0.55 \leq f < 0.75$	$0.75 \leq f$	
라 이 닝	균 열	0~2	3~5	6~8	9~11	12~13	
	누 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재질 열화	박 리	0	0	1	1	1
		충분리 및 박 락	0	0	1	2	3
		백 태	0	0	1	1	1
		재료분리	0	0	1	1	1
		철근노출	0	1	2	3	4
		탄 산 화	0	1	2	3	—
염 화 물	0	1	1	2	—		
터 널 주 변	배수상태	오 염 됨 : 1					
		배수불량 또는 막힘 : 2					
	지반상태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	영향범위 내 : 2 ~ 3				
			영향범위 외 : 1				
	갯문상태	손 상 : 0.5~1					
	공동구상태	덮개파손 및 오염됨 : 0.5					
이물질 퇴적 및 침수 : 1							
특수조건		도심지 토사터널, 전력구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에서 낙수 및 동결위험 (추가점수) : 1~3					
		$\text{라이닝 결합지수 (f)} = \frac{\Sigma \text{결합점수}}{36}, \text{터널결합지수 (F)} = \frac{\Sigma \text{결합점수}}{43}$					

6) 개착식터널(BOX형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개착식터널에 대한 상태평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평가방법에 준하며, 본 상태평가 기준을 적용하는 경우 철근콘크리트 구조물에 대한 평가방법을 적용한다.

평가기준		a	b	c	d	e	
		$0 \leq f < 0.15$	$0.15 \leq f < 0.30$	$0.30 \leq f < 0.55$	$0.55 \leq f < 0.75$	$0.75 \leq f$	
철근	균열	0~2	3~5	6~8	9~11	12~13	
	누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콘크리트 구조물	재질 열화	박리	0	0	1	1	
		충분리 및 박락	0	0	1	2	3
		백태	0	0	1	1	1
		재료분리	0	0	1	1	1
		철근노출	0	1	2	3	4
		탄산화	0	1	2	3	—
		염화물	0	1	1	2	—
		터널 주변	배수상태	오염됨 : 1			
배수불량 또는 막힘 : 2							
지반상태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		영향범위 내 : 2 ~ 3				
			영향범위 외 : 1				
갯문상태	손상 : 0.5~1						
공동구상태	덮개파손 및 오염됨 : 0.5						
	이물질 퇴적 및 침수 : 1						
특수조건		도심지 토사터널, 전력구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에서 낙수 및 동결위험 (추가점수) : 1~3					
		$\text{라이닝 결합지수 (f)} = \frac{\Sigma \text{결합점수}}{36}, \text{터널결합지수 (F)} = \frac{\Sigma \text{결합점수}}{43}$					

7) 지하차도, 지하정거장 및 지하역사

지하차도, 지하정거장 및 지하역사에 대한 상태평가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의 평가방법에 준하여 적용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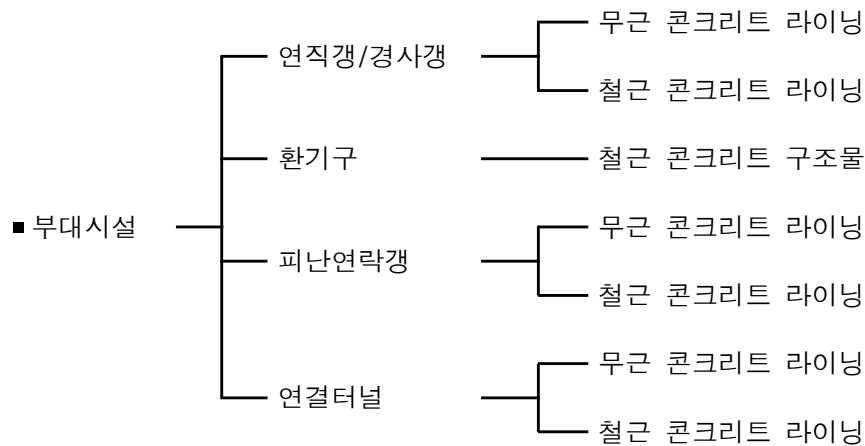
지하차도의 부대시설인 U-Type 옹벽의 상태평가는 구조물별 「세부지침」 중 「옹벽」에서 설정하고 있는 상태평가기준을 적용하여 각각 평가한다.

평가기준		a	b	c	d	e
		$0 \leq f < 0.15$	$0.15 \leq f < 0.30$	$0.30 \leq f < 0.55$	$0.55 \leq f < 0.75$	$0.75 \leq f$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균열	0~2	3~5	6~8	9~11	12~13
	누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재질열화	박리	0	0	1	1
		충분리 및 박락	0	0	1	2
		백태	0	0	1	1
		재료분리	0	0	1	1
		철근노출	0	1	2	3
		탄산화	0	1	2	3
		염화물	0	1	1	2
주변상태	배수상태	오염됨 : 1~2				
		배수불량 또는 막힘 : 3~4				
	갯문(접속부) 상태	손상 : 1~2				
		$\text{철근콘크리트 결함지수}(f) = \frac{\Sigma \text{결함점수}}{36}, \quad \text{터널결함지수}(F) = \frac{\Sigma \text{결함점수}}{42}$				

8.2.3 부대시설 결합지수 산정기준

가. 터널 부대시설 분류

터널 부대시설 중에서 중요도 및 규모가 상대적으로 큰 별도평가 부대시설을 기능 및 구조물의 재질에 따라 분류하면 [그림 8.1]과 같다.



[그림 8.1] 부대시설 분류

나. 부대시설 상태평가 항목

터널 부대시설은 기본시설과 같이 무근 및 철근콘크리트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상태평가지 고려해야할 주요 평가항목은 다음 [표 8.3]과 같다.

부대시설 중에 숏크리트, 록볼트 등으로 터널의 안전성이 확보되거나 지반이 견고하여 풍화의 우려가 없고 사용상 지장이 없어 콘크리트 라이닝을 생략한 경우에는 책임기술자가 현장여건을 고려하여 상태평가 항목 및 평가기준을 조정할 수 있다.

[표 8.3] 부대시설 상태평가 항목

구 분	평 가 항 목
부 대 시 설 상 태 평 가	◦균 열 ◦누 수 ◦파손 및 손상 ◦재질열화(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재료분리, 철근노출, 탄산화, 염화물)

다. 부대시설 가중치

부대시설 평가결과를 기본시설을 포함한 전체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에 반영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기본시설과 별도로 부대시설 결합점수에 따른 가중치를 정하였으며, 부대시설 평가기준은 기존의 산정 개념과 유사하게 보수적인 관점에서 하위상태에 비중을 두어 산정한다.

부대시설 가중치 적용은 기본시설 결합지수(F)에 부대시설 가중치(W)를 곱하여 전체 시설물의 결합지수(F)를 산정하고,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text{시설물의 결합지수(F)} = \text{기본시설 결합지수(F)} \times \text{부대시설 가중치(W)}$$

[표 8.4] 부대시설의 가중치

가중치(W)	1.0	1.00	1.02	1.05	1.10
부대시설 결합지수	$0 \leq f < 0.15$	$0.15 \leq f < 0.30$	$0.30 \leq f < 0.55$	$0.55 \leq f < 0.75$	$0.75 \leq f$
시설물 상태평가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기능수행에 영향이 없으나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부재의 손상이 있으나 기본 시설 기능 수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	부재의 손상이 중대하여 기본시설에 영향을 주는 상태	기본시설의 기능수행에 문제를 일으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

부대시설의 상태평가는 개별 부대시설을 각각 평가한 후 산술평균하여 부대시설 결합지수를 산정하고 부대시설 상태평가 결과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text{부대시설의 결합지수(f)} = \sum(f_n) / N$$

여기서, f_n : 개별 부대시설의 상태평가 결합지수

N : 개별 부대시설의 개수

부대시설 상태평가 결과 산정

- A등급(우수) : 터널 결합지수(f) $0.00 \leq f < 0.15$
- B등급(양호) : 터널 결합지수(f) $0.15 \leq f < 0.30$
- C등급(보통) : 터널 결합지수(f) $0.30 \leq f < 0.55$
- D등급(미흡) : 터널 결합지수(f) $0.55 \leq f < 0.75$
- E등급(불량) : 터널 결합지수(f) $0.75 \leq f$

라. 부대시설 결함지수 산정기준

터널 부대시설 구조물 분류에 따른 상태평가를 위한 결함점수와 결함지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무근 콘크리트

평가기준		a	b	c	d	e
		$0 \leq f < 0.15$	$0.15 \leq f < 0.30$	$0.30 \leq f < 0.55$	$0.55 \leq f < 0.75$	$0.75 \leq f$
균열		0~2	3~5	6~8	9~11	12~13
누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재질 열화	박리	0	0	1	1	1
	충분리 및 박락	0	0	1	2	3
	백태	0	0	1	1	1
	재료분리	0	0	1	1	1

$$\text{부대시설 결함지수 (f)} = \frac{\Sigma \text{결함점수}}{27}$$

2) 철근 콘크리트

평가기준		a	b	c	d	e
		$0 \leq f < 0.15$	$0.15 \leq f < 0.30$	$0.30 \leq f < 0.55$	$0.55 \leq f < 0.75$	$0.75 \leq f$
균열		0~2	3~5	6~8	9~11	12~13
누수		0	1	2	3	4~5
파손 및 손상		0	0	1	2	3
재질 열화	박리	0	0	1	1	1
	충분리 및 박락	0	0	1	2	3
	백태	0	0	1	1	1
	재료분리	0	0	1	1	1
	철근노출	0	1	2	3	4
	탄산화	0	1	2	3	—
	염화물	0	1	1	2	—

$$\text{부대시설 결함지수 (f)} = \frac{\Sigma \text{결함점수}}{36}$$

8.3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8.3.1 기본시설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평가항목은 기존의 국내 세부지침 기준과 같이 5단계로 세분하였고, 평가항목별 상태평가기준은 터널 상태평가 결과와의 차이를 두기 위하여 소문자 a, b, c, d, e 로 표기한다.

세부기준은 기존 국내기준과 국외기준을 참고하여 결정하였으며, 설문조사를 통한 실무자들의 의견과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여 정하였다. 또한, 각각의 평가항목에 대한 상태평가는 가장 대표적인 것을 기준으로 하여 결정하도록 하며, 여러 개소에서 조사될 경우에는 하향평가 한다. 터널 라이닝의 상태평가 단위길이는 일반적으로 30m를 기준으로 한다. 상태평가 단위길이는 터널 라이닝의 신축이음(약 20~30m)을 고려하여 책임기술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가. 균 열

평가기준		a	b	c	d	e
구 분						
콘크리트 라이닝	무균(균열)	0.1mm 미만	0.1mm 이상 0.3mm 미만	0.3mm 이상 1.0mm 미만	1.0mm 이상 3.0mm 미만	3.0mm 이상
	철근(균열)	0.1mm 미만	0.1mm 이상 0.3mm 미만	0.3mm 이상 0.5mm 미만	0.5mm 이상 0.7mm 미만	0.7mm 이상
개착터널	BOX(균열)	0.1mm 미만	0.1mm 이상 0.2mm 미만	0.2mm 이상 0.3mm 미만	0.3mm 이상 0.5mm 미만	0.5mm 이상
조적식 라이닝	줄눈균열	없 음	아주 경미한 줄눈깨짐	벽돌 2개소 이하	벽돌 2~5개소	벽돌 5개소 이상

주) 진행성 균열의 경우 상태평가 결과가 "d" 이하 또는

교정 균열의 경우 면적율 20% 이상으로 "e" 이면 2.6.2절의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해 설>

- 1) 진행성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며 진행성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는 하향조정 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관찰하도록 한다.
※ 진행성 여부의 판별은 주기적인 점검(정기점검) 결과를 활용해 판단한다.
- 2) 균열형상은 종균열, 횡균열, 경사균열, 망상균열로 구분하며 횡균열을 제외한 균열은 평가는 하향조정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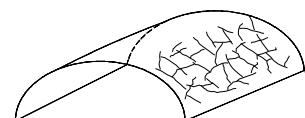
(종균열)



(횡균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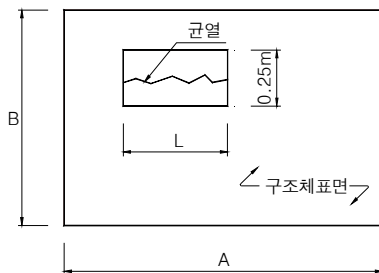


(경사균열)



(망상균열)

- 3) 균열이 다음 스팬에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 평가는 하향조정할 수 있다.
- 4) 구조적 균열은 설계 오류로 인한 균열, 외부 하중에 의한 균열, 단면 및 철근량의 부족에 의한 균열 등이 있다. 콘크리트 구조의 구조적 균열은 콘크리트와 철근사이의 응력, 변형률, 미끄러짐(slip), 부착응력 등에 따라 균열형성단계와 균열안정화 단계의 2단계로 형성된다. 구조적 균열발생시 면적율에 관계없이 평가는 1단계 하향조정하고, "d"이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를 통하여 과하중의 양상과 그 결과의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 5) 조적식 라이닝의 경우 줄눈깨짐의 연속성 정도에 따라 평가는 하향 조정하도록 한다.
- 6) 보수·보강부위는 기존의 균열폭과 길이의 변화, 새로운 균열 및 들뜸의 진행성 유무 등을 주기적인 점검(정기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7) 면적율이 20% 이하일 경우는 해당 상태평가결과를 기재하고, 면적율 20% 이상과 구조적 균열 및 단차균열일 경우의 평가는 a→b, b→c, c→d, d→e, e→e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균열의 발생면적은 균열길이당 0.25m의 폭을 차지하는 것으로 하다.



$$\frac{\text{균열발생면적}}{\text{구조체표면(점검단위)면적}} \times 100 = \frac{\text{균열길이(L)} \times 0.25}{A \times B(\text{m})} \times 100 = \quad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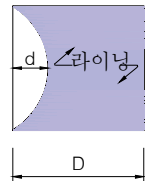
나. 누수

평가기준 구분	a	b	c	d	e
	없음	스며 있음	떨어짐	흐름	분출
누수					
해설	1) 누수발생부위는 아치부와 측벽부, 노면으로 구분하며, 아치부에 누수가 발생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평가는 하향조정하도록 한다. 2) 아치부에 발생된 누수가 열어 고드름이 형성된 경우와 측벽부에 발생된 누수가 열어서 건축한계를 초과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평가는 하향조정 하도록 한다. 3) 노면에 토사유출 또는 동결이 발생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될 경우에는 평가는 하향조정하고, 그 원인을 정밀조사하도록 한다. 4) 누수가 배수공과 시공이음, 신축이음의 결함, 균열, 배면공동, 수맥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될 경우에는 수압 등에 의한 구조적 결함을 유발 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5) 누수는 건기시와 우기시에 따라 계절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절적 요인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6) 보수·보강부위는 누수상태(수질, 수량, 물흐름)의 변화 유무 등을 주기적인 점검(정기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주) 상태평가 결과가 "d" 이하이며, 토립자와 함께 나와 구조적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거나 고드름 및 측벽 등으로 차량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6.2절의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다. 파손 및 손상

평가기준 구 분		a	b	c	d	e
콘크리트 라이닝	손 상 도	없 음	1/6 미만	1/6 이상 1/3 미만	1/3 이상 1/2 미만	1/2 이상
	손상면적	없 음	아주 경미한 상태	경미한 손상 (10cm×10cm미만)	중간 손상 (10cm×10cm이상, 30cm×30cm미만)	극심한 손상 (30cm×30cm이상)
조적식 라이닝	손상두께	없 음	벽돌부분 손상	벽돌 1개 이하	벽돌 1~2개	벽돌 2개 이상
해 설		1) 손상도는 콘크리트 라이닝에 대한 것으로 라이닝 두께에 대한 손상된 두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라이닝 설계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라이닝 측정두께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다. ※ 손상도 = d (파손 및 손상두께) / D (라이닝두께) 2) 조적식 라이닝에서 파손 및 손상두께는 벽돌두께를 기준으로 적용한다. 3) 조적식 라이닝인 경우 파손 및 손상면적은 벽돌크기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도록 한다. 4) 지반탐사 등으로 측정된 라이닝 두께가 설계두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손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5) 파손 및 손상발생부위는 아치부와 측벽부로 구분하며, 아치부에 파손 및 손상이 발생하여 낙하위험이 있는 경우 평가는 하향조정한다. 6) 면적율이 20% 이하일 경우는 해당 상태평가결과를 기재하고, 면적율이 20% 이상일 경우의 평가는 a→a, b→c, c→d, d→e, e→e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주) 파손 및 손상에 대한 면적율이 20%이상으로 상태평가 결과가 "d" 이하이면 2.6.2절의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라. 재질열화(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재료분리, 철근노출, 탄산화, 염화물)

평가기준 구 분	a	b	c	d	e
박 리	없 음	0.5mm 미만	0.5mm 이상 1.0mm 미만	1.0mm 이상 25mm 미만	25mm이상 이거나 조골채 손실
층분리 및 박락	없 음	깊이 12mm미만 또는 직경 75mm미만	깊이 12~25mm미만 또는 직경 75~150mm미만	깊이 25mm이상 또는 직경 150mm이상	박락이 극심하여 즉시 보수를 요하는 상태
백 태, 재료분리	없 음	면적율 5%미만	면적율 5~10%	면적율 10~20%	면적율 20%이상
철근노출	없 음	면적율 1%미만	면적율 1~3%미만	면적율 3~5%미만	면적율 5%이상
탄산화 잔여깊이	30mm 이상	10mm 이상 ~ 30mm 미만	0mm 이상 ~ 10mm 미만	0mm 미만	-
전염화물 이온량	0.3kg/m ³ 이하	0.3kg/m ³ 초과 ~ 1.2kg/m ³ 미만	1.2kg/m ³ 이상 ~ 2.5kg/m ³ 미만	2.5kg/m ³ 이상	-
해 설	1) 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재료분리는 콘크리트의 재질에 대한 평가로서 경년이나 주변환경영향 등에 따라 열화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2) 박리는 콘크리트 라이닝의 박리된 깊이를 기준으로 하며, 층분리 및 박락은 콘크리트 박락된 깊이, 직경,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3) 박리층분리 및 박락이 심한 경우에는 다른 변상조건들과 비교·검토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한다. 4) 백태 및 재료분리의 경우 발생범위와 정도로부터 판단하도록 한다. 5) 철근노출은 철근콘크리트 라이닝인 경우에 적용하며, 심한 부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식도를 측정하여 철근의 부식상태를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철근노출 발생 면적은 철근 노출 길이당 0.25m의 폭을 차지하는 것으로 한다. 6) 탄산화 깊이에 대한 평가는 철근으로부터 탄산화의 남은 깊이를 지표로 하여 탄산화에 의한 강재부식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탄산화에 의한 단독 열화에 대하여 적용하며, 콘크리트 품질평가 기준인 탄산화는 직접적인 손상항목이 아닌 철근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관한 항목으로써 상태평가 기준 범위를 "a~d"로 한다. 평가는 철근의 피복은 조사 위치에서의 실측치를 기준으로 한다. <일본구조물진단기술협회 「비파괴시험을 이용한 토목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전도 진단 매뉴얼」(2003년)> 7) 채취 코어의 전염화물 이온 시험결과에서 염화물에 의한 강재부식 가능성을 평가하며, 염화물 함유량은 직접적인 손상항목이 아닌 철근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관한 항목으로써 상태평가 기준 범위를 "a~d"로 한다. 염화물 함유량 분석은 철근 깊이까지 깊이별(10mm 또는 20mm)로 단계를 구분하여 염화물 분포를 파악함을 원칙으로 하며, 염화물 이온농도의 분포를 도시한다. <일본구조물진단기술협회 「비파괴시험을 이용한 토목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전도 진단 매뉴얼」(2003년)> 8) 박리, 층분리 및 박락의 면적율이 20% 이하일 경우는 해당 상태평가결과를 기재하고, 면적율이 20% 이상일 경우의 평가는 a→a, b→c, c→d, d→e, e→e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주) 탄산화 잔여깊이 또는 전염화물 이온량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가 "d"등급이고, 철근노출의 상태평가 결과가 "e"등급이면 2.6.2절의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마. 배수상태

구 분	오 염 됨	배수불량 및 막힘 (배수시설 작동불량)
결함점수	1 (1~2)	2 (3~4)
해 설	1) 배수상태는 지하수를 유도하여 배수를 허용하는 배수형 터널의 경우에 한하며, 배수형터널이 아닌 경우에는 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별도로 적용하도록 한다. 2) 배수된 물의 함유성분에 의한 오염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수질을 조사하여 오염의 원인을 평가하도록 한다. 3) 배수된 물에 토사가 섞여 나오는 경우에는 지속적인 토사유출로 라이닝 배면에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토사유출량과 터널안정성에 대해 정밀조사하도록 한다. 4) 집수정이 설치된 경우 배수시설(펌프설비 등)의 작동유무, 정작상태, 전원설비상태 등을 점검하고 작동이 안되거나 정작이 불량한 경우 관리주체에 통보하여 교체 또는 수리 등의 조치가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주) : 결함점수에서 ()은 지하차도, 지하정거장 및 지하역사에 적용한다.

바. 지반상태

구 분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			
	풍화변질	단 층 파 쇄 대		
		영향범위 외	영향범위 내	
			중소규모 단층	대규모 단층
결함점수	1	1	2	3
해 설	1) 기시공된 터널에서는 주변지반상태를 육안으로 확인하는 것이 쉽지 않으므로 설계 및 시공자료를 참고하여 판단하도록 하며, 안전성 평가시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지반상태를 평가하도록 한다. 2) 지반상태가 터널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는 0.5D를 기준으로 한다. 3) 지반의 풍화변질상태는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갱구부 주변의 지반이나 노출된 암반으로부터 평가하도록 한다. 4) 터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지질구조(단층, 습곡, 선구조선)의 영향은 지질도나 시공자료, 지표지질조사결과 그리고 필요시 인공위성사진, 항공사진 등을 이용하여 검토하도록 한다. 5) 이완토압, 편토압, 소성압 등으로 인하여 내공변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단층파쇄대의 영향범위 내에 해당하는 점수를 부여한다. 6) 도심지 터널의 경우 낮은 심도로 인하여 불량지반, 복합지반에 위치하는 경우에 지반상태를 평가하고 영향범위에 따른 점수를 부여한다.			

사. 갱문(접속부)상태

구 분	손 상	
	보통인 상태	불량한 상태
결함점수	0.5 (1)	1 (2)
해 설	1) 갱구부는 터널의 입출구부로서 차량의 통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갱문(접속부)상태를 반영하여 손상여부를 평가한다. 2) 갱문(접속부)의 평가방법은 일반 콘크리트구조물에서의 평가방법에 준하며, 특히 주변지반의 변화상태 등에 유의하여야 한다. 3) 갱문(접속부)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한 경우, 주변 지반조사를 실시하여 손상원인을 규명 하도록 한다.	

주) : 결함점수에서 ()은 지하차도, 지하정거장 및 지하역사에 적용한다.

아. 공동구상태

구 분	덮개파손 및 오염됨	이물질 퇴적 및 침수
결함점수	0.5	1
해 설	1) 통신케이블, 신호용케이블, 전기케이블 등의 보호를 위해 터널내에 설치되는 공간을 가리키며, 일반적으로 배수구와 병행하여 시공된다. 2) 공동구의 오염상태, 덮개파손, 이물질의 퇴적이나 침수 등을 조사하여 상태를 평가하도록 한다.	

자. 특수조건(추가점수)

구 분	도심지 토사터널		전력구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		
	주의범위 (1D~2D)	제한범위 (1D 미만)	측벽부 낙수	아치부 낙수	동결위험
결함점수	1	2	1	2	3
해 설	1) 도심지 토사터널은 터널심도, 인접시설물(건축물, 철도, 도로 등)과의 거리 등을 검토분석하고 터널에 영향을 미치는 범위를 고려하여 이를 반영한다. 2) 전력구터널,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은 전기를 사용하므로 누전문제에 대한 위험성을 상태평가에 추가 반영하도록 하고, 특히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은 동결시 차량운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므로 이를 반영한다. 3) 기타 일반적인 터널조건과 다른 특수터널인 경우, 조사자의 판단에 따라 상태평가에 특수조건을 부과하여 가점하도록 한다.				

8.3.2 부대시설 상태평가 항목 및 기준

가. 균 열

구 분 \ 평가기준	a	b	c	d	e
무근 콘크리트 라이닝	0.1mm 미만	0.1mm 이상 0.3mm 미만	0.3mm 이상 1.0mm 미만	1.0mm 이상 3.0mm 미만	3.0mm 이상
철근 콘크리트 라이닝	0.1mm 미만	0.1mm 이상 0.3mm 미만	0.3mm 이상 0.5mm 미만	0.5mm 이상 0.7mm 미만	0.7mm 이상
철근 콘크리트 구조물 (개착 구조물)	0.1mm 미만	0.1mm 이상 0.2mm 미만	0.2mm 이상 0.3mm 미만	0.3mm 이상 0.5mm 미만	0.5mm 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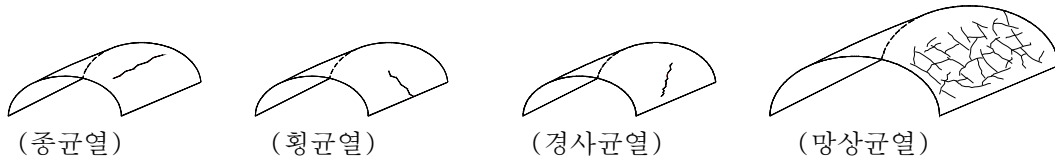
주) 진행성 균열의 경우 상태평가 결과가 "d" 이하 또는
고정 균열의 경우 면적율 20% 이상으로 "e" 이면 2.6.2절의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해 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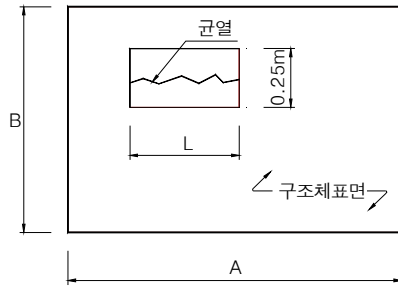
- 1) 진행성의 유무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에 적용하며 진행성이 확인되는 경우 평가는 하향조정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여 정기적으로 관찰하도록 한다.

※ 진행성 여부의 판별은 주기적인 점검(정기점검) 결과를 활용해 판단한다.

- 2) 균열형상은 종균열, 횡균열, 경사균열, 망상균열로 구분하며 횡균열을 제외한 균열의 평가는 하향조정할 수 있다.



- 3) 균열이 다음 스팬에 연속적으로 이어져 있는 경우 평가는 하향조정할 수 있다.
- 4) 구조적 균열은 설계 오류로 인한 균열, 외부 하중에 의한 균열, 단면 및 철근량의 부족에 의한 균열 등이 있다. 콘크리트 구조의 구조적 균열은 콘크리트와 철근사이의 응력, 변형률, 미끄러짐(slip), 부착응력 등에 따라 균열형성단계와 균열안정화 단계의 2단계로 형성된다. 구조적 균열발생시 면적율에 관계없이 평가는 1단계 하향조정하고, "d"이상으로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안전성평가를 통하여 과하중의 양상과 그 결과의 분석을 실시하도록 한다.
- 5) 보수·보강부위는 기존의 균열폭과 길이의 변화, 새로운 균열 및 들뜸의 진행성 유무 등을 주기적인 점검(정기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 6) 면적율이 20% 이하일 경우는 해당 상태평가 결과를 기재하고, 면적율 20% 이상과 구조적 균열 및 단차균열일 경우의 평가는 a→b, b→c, c→d, d→e, e→e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 균열의 발생면적은 균열길이당 0.25m의 폭을 차지하는 것으로 한다.



$$\frac{\text{균열발생면적}}{\text{구조체표면(점검단위)면적}} \times 100 = \frac{\text{균열길이}(L) \times 0.25}{A \times B(m)} \times 100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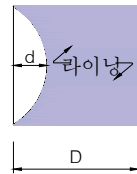
나. 누수

평가기준 구분	a	b	c	d	e
	없음	스며있음	떨어짐	흐름	분출
누수					
해설	1) 누수발생부위는 아치부와 측벽부, 노면으로 구분하며, 아치부에 누수가 발생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 평가는 하향조정하도록 한다. 2) 아치부에 발생된 누수가 얼어 고드름이 형성된 경우와 측벽부에 발생된 누수가 얼어서 건축한계를 초과하여 차량통행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는 평가는 하향조정하도록 한다. 3) 노면에 토사유출 또는 동결이 발생되어 차량통행에 지장이 될 경우에는 평가는 하향조정하고, 그 원인을 정밀조사하도록 한다. 4) 누수가 배수공과 시공이음, 신축이음의 결합, 균열, 배면공동, 수맥 등의 영향으로 인하여 발생될 경우에는 수압 등에 의한 구조적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는지의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5) 누수는 건기시와 우기시에 따라 계절별로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절적요인을 반영하여 평가할 수 있다. 6) 보수·보강부위는 누수상태(수질, 수량, 물흐름)의 변화 유무 등을 주기적인 점검(정기점검) 결과를 활용하여 평가할 수 있다.				

주) 상태평가 결과가 "d" 이하이며, 토립자와 함께 나와 구조적 결함을 유발시킬 수 있거나 고드름 및 측빙등으로 차량통행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2.6.2절의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다. 파손 및 손상

평가기준 구 분		a	b	c	d	e
콘크리트 라이닝	손 상 도	없 음	1/6 미만	1/6 이상 1/3 미만	1/3 이상 1/2 미만	1/2 이상
	손상면적	없 음	아주 경미한 상태	경미한 손상 (10cm×10cm미만)	중간 손상 (10cm×10cm이상, 30cm×30cm미만)	극심한 손상 (30cm×30cm이상)
해 설		1) 손상도는 콘크리트 라이닝에 대한 것으로 라이닝 두께에 대한 손상된 두께를 말하며, 일반적으로 라이닝 설계두께를 기준으로 하고, 라이닝 측정두께가 있는 경우 이를 기준으로 한다. ※ 손상도 = d (파손 및 손상두께) / D (라이닝두께) 2) 지반탐사 등으로 측정된 라이닝 두께가 설계두께에 못 미치는 경우에는 이를 손상으로 평가 할 수 있다. 3) 파손 및 손상발생부위는 아치부와 측벽부로 구분하며, 아치부에 파손 및 손상이 발생하여 낙하위험이 있는 경우 평가는 하향조정한다. 4) 면적율이 20% 이하일 경우는 해당 상태평가결과를 기재하고, 면적율이 20% 이상일 경우의 평가는 a→a, b→c, c→d, d→e, e→e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주) 파손 및 손상에 대한 면적율이 20%이상으로 상태평가 결과가 "d" 이하이면 2.6.2절의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라. 재질열화(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재료분리, 철근노출, 탄산화, 염화물)

평가기준 구 분	a	b	c	d	e
박 리	없 음	0.5mm 미만	0.5mm 이상 1.0mm 미만	1.0mm 이상 25mm 미만	25mm이상 이거나 조골재 손실
층분리 및 박락	없 음	깊이 12mm미만 또는 직경 75mm미만	깊이 12~25mm미만 또는 직경 75~150mm미만	깊이 25mm이상 또는 직경 150mm이상	박락이 극심하여 즉시 보수를 요하는 상태
백 태, 재료분리	없 음	면적율 5%미만	면적율 5~10%	면적율 10~20%	면적율 20%이상
철근노출	없 음	면적율 1%미만	면적율 1~3%미만	면적율 3~5%미만	면적율 5%이상
탄산화 잔여깊이	30mm 이상	10mm 이상 ~ 30mm 미만	0mm 이상 ~ 10mm 미만	0mm 미만	-
전염화물 이온량	0.3kg/m ³ 이하	0.3kg/m ³ 초과 ~ 1.2kg/m ³ 미만	1.2kg/m ³ 이상 ~ 2.5kg/m ³ 미만	2.5kg/m ³ 이상	-
해 설	1) 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재료분리는 콘크리트의 재질에 대한 평가로서 경년이나 주변환경영향 등에 따라 열화되는 특성을 나타낸다. 2) 박리는 콘크리트 라이닝의 박리된 깊이를 기준으로 하며, 층분리 및 박락은 콘크리트 박락된 깊이, 직경, 상태 등을 고려하여 판단하도록 한다. 3) 박리·층분리 및 박락이 심한 경우에는 다른 변상조건들과 비교·검토하여 그 원인을 조사하도록 한다. 4) 백태 및 재료분리의 경우 발생범위와 정도로부터 판단하도록 한다. 5) 철근노출은 철근콘크리트 라이닝인 경우에 적용하며, 심한 부식이 우려되는 경우에는 부식도를 측정하여 철근의 부식상태를 평가하도록 한다. 또한, 철근노출 발생 면적은 철근 노출 길이당 0.25m의 폭을 차지하는 것으로 한다. 6) 탄산화 깊이에 대한 평가는 철근으로부터 탄산화의 남은 깊이를 지표로 하여 탄산화에 의한 강재부식 가능성을 나타낸 것으로 탄산화에 의한 단독 열화에 대하여 적용하며, 콘크리트 품질평가 기준인 탄산화는 직접적인 손상항목이 아닌 철근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관한 항목으로써 상태평가 기준 범위를 "a~d"로 한다. 평가는 철근의 피복은 조사 위치에서의 실측치를 기준으로 한다. <일본구조물진단기술협회 「비파괴시험을 이용한 토목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전도 진단 매뉴얼」(2003년)> 7) 채취 코어의 전염화물 이온 시험결과에서 염화물에 의한 강재부식 가능성을 평가하며, 염화물 함유량은 직접적인 손상항목이 아닌 철근부식을 유발할 수 있는 환경에 관한 항목으로써 상태평가 기준 범위를 "a~d"로 한다. 염화물 함유량 분석은 철근 깊이까지 깊이별(10mm 또는 20mm)로 단계를 구분하여 염화물 분포를 파악함을 원칙으로 하며, 염화물 이온농도의 분포를 도시한다. <일본구조물진단기술협회 「비파괴시험을 이용한 토목 콘크리트구조물의 건전도 진단 매뉴얼」(2003년)> 8) 박리, 층분리 및 박락의 면적율이 20% 이하일 경우는 해당 상태평가결과는 기재하고, 면적율이 20% 이상일 경우의 평가는 a→a, b→c, c→d, d→e, e→e로 하향 조정할 수 있다.				

주) 탄산화 잔여깊이 또는 전염화물 이온량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가 "d"이고, 철근노출의 상태평가 결과가 "e"이면 2.6.2절의 중대한 결함으로 본다

8.4 상태평가 결과 산정방법

8.4.1 기본시설 상태평가결과 산정

가. 제1단계 : 라이닝 결함지수(f) 산정

- 1) 라이닝 단위길이별 평가항목에 대해 최저의 결함점수를 부여한다. 균열의 결함점수는 일반적으로 평균값으로 취하며 단차, 폭, 깊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2) 라이닝 단위길이별 결함지수를 구한다
- 3) 라이닝 전체에 대한 결함지수(f)를 구한다. 이때에 라이닝 단위길이별 평가항목에 대한 결함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구한다.

나. 2단계 : 라이닝 상태평가 결과 산정

- 1) 라이닝 단위길이별 평가항목과 결함지수에 대한 평가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 2) 라이닝 전체의 평가항목(산술평균값)과 결함지수(f)에 대한 평가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다. 3단계 : 터널 주변 상태 결함점수 산정

- 1) 터널 주변 상태에 대한 배수, 지반, 갭문, 공동구상태의 결함점수를 부여한다.
- 2) 특수조건에 해당 될 경우에는 추가점수를 부여한다. 터널결함지수(F) 산정시 분모에 대한 영향은 고려하지 않는다.

라. 제4단계 : 터널 상태평가 결과 산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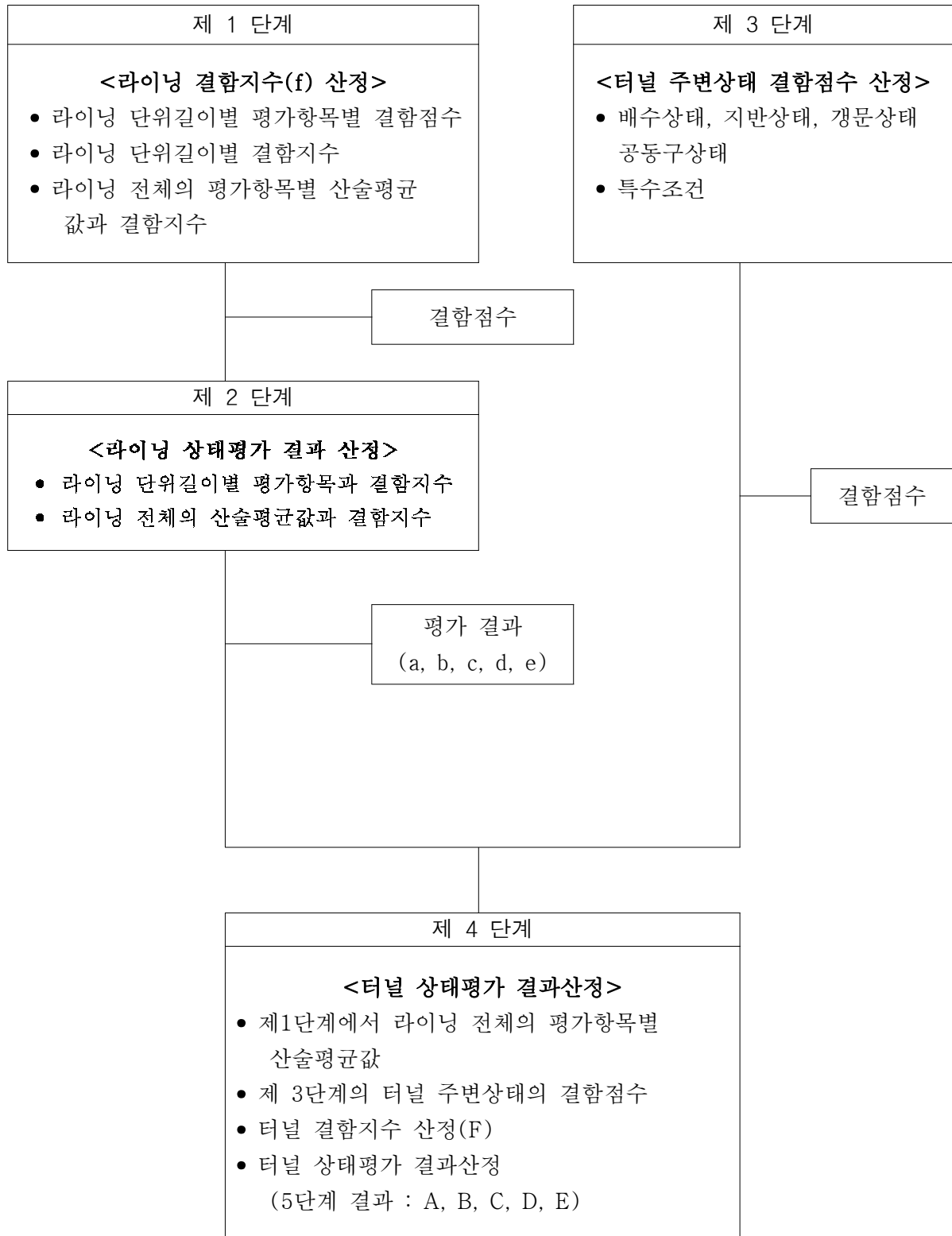
- 1) 제1단계의 라이닝 결함지수(f) 산정시 사용한 평가항목별 결함점수 산술평균값과 제3단계의 터널 주변상태 평가 결함점수를 합한다.
- 2) 터널 결함지수(F)를 산정하고, 터널 상태평가 결과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3) 터널 상태평가 결과 산정

- A등급(우수) : 터널 결함지수(F)	$0.00 \leq F < 0.15$
- B등급(양호) : 터널 결함지수(F)	$0.15 \leq F < 0.30$
- C등급(보통) : 터널 결함지수(F)	$0.30 \leq F < 0.55$
- D등급(미흡) : 터널 결함지수(F)	$0.55 \leq F < 0.75$
- E등급(불량) : 터널 결함지수(F)	$0.75 \leq F$

라이닝 상태평가

터널주변 상태평가



[그림 8.2] 상태평가 결과 산정절차

8.4.2 부대시설 상태평가결과 산정

가. 제1단계 : 부대시설 결합지수(f) 산정

- 1) 부대시설 평가단위별 평가항목에 대해 최저의 결합점수를 부여한다. 균열의 결합점수는 일반적으로 평균값으로 취하며 단차, 폭, 깊이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 2) 부대시설 평가단위별 결합지수를 구한다
- 3) 부대시설에 대한 결합지수(f)를 구한다. 이때에 부대시설 평가항목에 대한 결합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구한다.

나. 2단계 : 전체 부대시설 상태평가 결과 산정

- 1) 부대시설별 평가항목과 결합지수에 대한 평가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 2) 평가항목(산술평균값)과 결합지수(f)에 대한 평가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 3) 개별 부대시설을 각각 평가한 후 산술평균하여 부대시설 결합지수를 산정하고 전체 부대시설 상태평가 결과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text{부대시설의 결합지수}(f) = \sum(f_n) / N$$

여기서, f_n : 개별 부대시설의 상태평가 결합지수

N : 개별 부대시설의 개수

다. 3단계 : 전체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 산정

- 1) 기본시설 결합지수(F)에 부대시설 가중치(W)를 곱하여 전체 시설물의 결합지수(F)를 산정하고, 시설물 상태평가 결과를 5단계(A, B, C, D, E)로 매긴다.

$$\text{시설물의 결합지수}(F) = \text{기본시설 결합지수}(F) \times \text{부대시설 가중치}(W)$$

[표 8.5] 부대시설의 가중치

가중치(W)	1.00	1.00	1.02	1.05	1.10
부대시설 결함지수	$0 \leq f < 0.15$	$0.15 \leq f < 0.30$	$0.30 \leq f < 0.55$	$0.55 \leq f < 0.75$	$0.75 \leq f$
시설물 상태평가	문제가 없는 최상 의 상태	기능수행에 영향이 없으나 일부 보수가 필요한 상태	부재의 손상이 있으나 기본시설 기능수행에 문제가 없는 상태	부재의 손상이 중대하여 기본시설 에 영향을 주는 상태	기본시설의 기능수행에 문제를 일으켜 즉각적인 조치가 필요한 상태

8.4.3 상태평가 결과 산정 예시

무근 콘크리트 라이닝의 터널 상태평가 결과 산정(예)는 단계별로 구분하여 예시하였다.

가. 제1단계 : 라이닝 결함지수 산정

SPAN No.	균열	파손 및 손상	누수	재 질 열 화			결함점수 합 계	라이닝 결함지수
				박리	충분리 및 박락	백태		
1	7	1	3	1	2	1	15	0.58
2	4	1	4	1	1	1	12	0.46
3	4	1	2	1	1	0	9	0.37
4	7	1	5	1	1	1	16	0.61
5	4	0	1	1	2	0	8	0.31
산술평균	5.2	0.8	3.0	1.0	1.4	0.6	12.0	0.46

- 1) "SPAN No 1"의 평가항목에 대한 최저등급의 결함점수를(균열 c-7, 파손 및 손상 c-1, 누수 c-3, 박리 d-1, 충분리 및 박락 d-2, 백태 e-1) 부여한다. 라이닝의 결함점수 15점을 구한다.
- 2) "SPAN No 1"의 라이닝의 결함지수를 구한다. 이때에 무근콘크리트 라이닝 결함지수(Σ 결함지수(15점)/26=0.58)를 구한다.
- 3) 상기 1) 2)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SPAN에 대하여 구한다. 라이닝 5개 SPAN의 평가항목에 대한 산술평균값을 구한후 라이닝 결함지수를 구한다.
 - 평가항목 결함점수 : 균열 5.2, 파손 및 손상 0.8, 누수 3.0, 박리 1.0, 충분리 및 박락 1.4, 백태 0.6, 결함점수 합계 12점
 - 라이닝 결함지수(f) : 0.46(12/26=0.46)

나. 제2단계 : 라이닝 상태평가 결과 산정

SPAN No.	균열	손상	누수	재 질 열 화			라이닝등급
				박리	박락	백태	
1	c	c	c	d	d	e	d
2	b	c	d	e	c	e	c
3	b	c	b	d	c	b	c
4	c	c	e	d	c	e	d
5	b	b	a	b	d	b	c
산술평균	b	c	c	d	c	e	c

- 1) 라이닝 스판별 평가항목과 결함지수에 대한 등급을 5단계(소문자 a, b, c, d, e)로 매긴다.
- 2) 라이닝 5개 스판의 평가항목에 대한 산술평균값과 결함지수에 대한 등급을 5단계(소문자 a, b, c, d, e)로 매긴다.

다. 제3단계 : 터널 주변상태 결함점수 산정

항목	배수상태	지반상태	갱문상태	특수조건	합계
결함점수	1	2	1	1	5

- 1) 배수상태가 오염되었으므로 1점, 지반상태는 풍화변질 및 단층파쇄대가 영향범위 내에 위치하였으므로 2점, 갱문상태는 손상되어 있으므로 1점을 부여한다.
- 2) 특수조건은 전차선을 설치한 터널에서 낙수 및 동결위험이 있으므로 1점을 부여한다.

라. 제4단계 : 터널상태평가 결과 산정

항목	라 이 닝						터 널 주 변				합계
	균열	손상	누수	재 질 열 화			배수상태	지반상태	갱문상태	특수조건	
				박 리	박 락	백 태					
결함점수	5.2	0.8	3.0	1.0	1.4	0.6	1	2	1	1	17.0

결함지수	0.53
터널상태평가결과	c

- 1) 제1단계의 라이닝 결함지수 산정시 사용한 평가항목별 결함점수 산술평균값과(결함점수 : 균열 5.2, 파손 및 손상 0.8, 누수 3.0, 박리 1.0점, 백태 0.6점, 합계12점), 터널주변 상태평가 결함점수(결함점수 : 1+2+1+1=5점)을 합하여 17점을 구한다.
- 2) 터널 결함지수{결함지수(F) : $\Sigma \text{결함점수}(17\text{점})/32=0.53$ }를 구한후 결함지수에 대한 5단계(A, B, C, D, E)등급중 해당등급(C급)을 매긴다.

[표 8.6] 부재별 평가항목(라이닝 외관상태, 터널 주변상태) 조사결과표 예시

시설물명	부재명	조사망번호				표번호	
○○○ 터널	라이닝 외관상태	NO.1				NO.2	
조 사 결 과 표							
일련번호	평가항목	결함정도				결함점수	비 고
		폭	길이	깊이	면적		
1-1	균열	0.5mm	2m	10cm		7	"예"
1-2	백태	0.1mm	0.3m	-	0.03m ²	1	"예"
1-3							
조사일시	20 년 00월 00일			조사자		홍 ○ ○	

※ 일련번호 앞은 조사망번호, 뒤는 평가항목 결함번호임.

[표 8.7] 평가항목별 상대평가 결과 산정표(스판별) 예시

시설물명	○○○ 터널	평가항목	균열	표번호
부재총면적	(슬래브 5m + 벽체 7m × 2) = 19m ²			NO.6
스판 NO.	일련번호	결함점수	상태평가 결과	
1	1 - 1	4	b	
	1 - 5	4	b	
	1 - 8	7	c	
	결함점수=최저점수	7	c	
2	2 - 1	4	b	
	2 - 5	2	a	
	2 - 6	4	b	
	결함점수=최저점수	4	c	
3	3 - 2	4	b	
	3 - 7	4	b	
	3 - 10	1	a	
	결함점수=최저점수	4	b	
4	4 - 1	4	b	
	4 - 5	4	b	
	4 - 10	7	c	
	결함점수=최저점수	7	c	
5	5-1	4	b	
	5-10	4	b	
	5-11	4	b	
	결함점수=최저점수	4	b	
결함점수	결함점수 = 5.2 $\{(7 + 4 + 4 + 7 + 4) \div 5 = 5.2\}$			c

※ 일련번호는 “가”항의 평가항목별 일련번호와 일치 할 것.

[표 8.8] 터널의 상태평가 결과 산정표 예시

시설물명		○○○ 터널				표번호
근거표번호		NO.6,				
터널 시설물		결함점수	평가항목별 등급	총 점	결함지수	상태평가 결과
터 널 라 이 닝	① 균열	5.2	b	12	f = 0.46 (12÷26=0.46)	c
	② 누수	3.0	c			
	③ 파손 및 손상	0.8	c			
	④ 박리	1.0	d			
	⑤ 층분리 및 박락	1.4	c			
	⑥ 백태	0.6	e			
	⑦ 철근노출	—	—			
	⑧ 탄산화	—	—			
	⑨ 염화물	—	—			
터 널 주 변	⑩ 배수상태	1	오 염	4	—	—
	⑪ 지반상태	2	영향범위 내			
	⑫ 갯문상태	1	손 상			
⑬ 특수조건		1	전차선 설치	1	—	—
합계(Σ)		—	—	17	F = 0.53	C
터널 상태평가 결과		○ 라이닝결함지수(f) = ① +⑥/26 = 0.46 → c ○ 터널 주변 결함점수 = 4점 ○ 특수조건 결함점수 = 1점 ○ 터널 상태평가 결과(터널 결함지수 F) : 17 / 32 = 0.53 → C				

※ 결함점수는 “나”의 산술평균 점수를 이기 할 것.

제 9 장

안전성평가 기준 및 방법

9.1 일반

9.2 안전성평가 기준

9.3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방법

제9장 안전성평가 기준 및 방법

9.1 일반

가. 일반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는 정밀안전진단시에 실시한다. 다만, 정밀점검 또는 긴급 점검시 일부 부재에 대하여 안전성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선택과업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결함이 광범위하고 중대한 경우에는 「법」 제7조제1항에 따라 정밀 안전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터널의 안전성 평가는 외관조사 및 비파괴 현장시험에 의한 터널 부재별 상태평가를 분석하고, 필요시 지형 및 지질조사, 지반탐사(GPR 등), 누수탐사, 각종 계측 등의 실시결과를 고려하여 이론적 계산과 해석적 검증을 통하여 터널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 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나. 안전성평가를 위한 과업

시설물의 안전성평가의 목적은 시설물이 제 기능 및 역할을 유지할 수 있는 구조적 및 운영상의 안전성 확보여부를 평가하는데 있으므로 현장조사부터 시설물의 현황과 상태 및 특성을 충분히 파악하여 제반 문제점을 도출하고 기초자료 분석 및 구조검토·해석 등에 의해 문제점에 대한 원인을 규명함과 더불어 안전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안전성 평가를 위하여 기본과업 이외의 필요한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의 선택과업을 시설물 종류 및 구조적 특성에 따라 책임기술자는 관리주체와 협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설계자료 검토, 시공방법과 사용재료의 검토, 기록을 통한 운영 이력의 분석, 부재별 상태평가 결과 및 각종 계측·측정·조사·시험 등을 통하여 충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며, 안전성평가 시 검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 ① 비파괴 시험결과 분석
- ② 지질조사 등의 결과 분석
- ③ 시설물의 변형/변위 및 거동 등의 측정결과 분석
- ④ 구조물의 구조검토·해석결과 분석
- ⑤ 기타 안전성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

다. 안전성평가 방법

터널의 안전성 평가방법은 일반적으로 주변지반의 응력상태를 고려한 해석적 방법에 의해 이루어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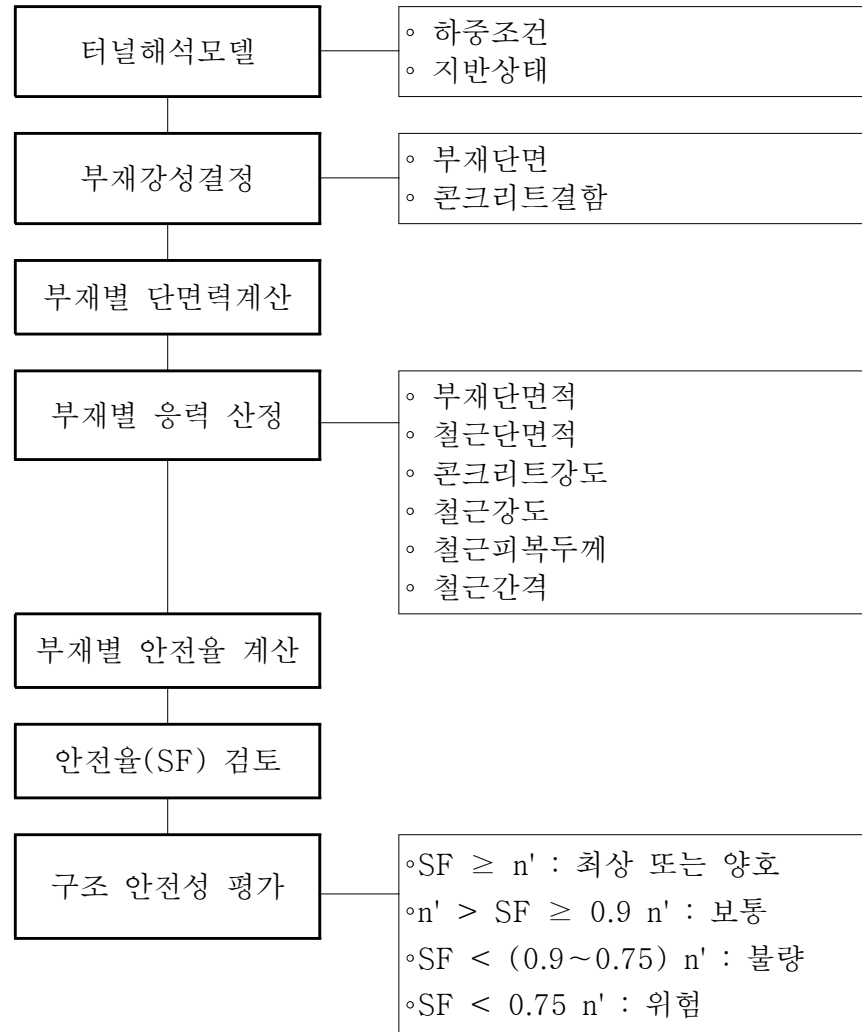
해석적 방법에 의해 구조물의 안전성을 평가하는 경우 현장조사 및 수집자료에 의해 얻어진 구조물의 치수, 시공상세도, 재료의 성질 및 구조물의 결함, 주변지반조건 등을 종합하여 실제상태에 대한 해석을 통해 올바른 평가를 기대할 수 있으므로 관련 설계 및 안전에 관한 제반기준을 적용하고 공인된 신뢰도가 있는 해석방법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구조물의 해석 시 안전여유율이 고려되어 있으므로 현재상태의 구조물에 대한 구조해석 결과가 「콘크리트시방서」의 안전도 기준에 미흡하다고 해서 구조물이 불안전 하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구조물의 안전여유율이 적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구조해석에 의한 구조물의 안전성 평가는 현재상태의 구조물이 얼마나 안전여유율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정도를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수 있다.

즉, 구조해석 결과 안전여유율이 등가안전율(n') 이상인 경우는 안전성이 충분히 확보된 구조물로 평가하고 등가안전율 미만이나 안전여유율이 등가안전율의 약 75% 이상일 때는 안전성은 있지만 충분치 못한 상태로서 구조물의 상태를 주기적으로 점검 및 과대하중 재하억제 등의 관리가 필요한 상태로 평가하며, 안전여유율이 등가안전율의 약 75% 미만인 경우에는 사용제한여부의 판단이 요구되거나 사용금지를 요하는 안전성이 결여된 구조물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구조물의 안전성평가 방법을 그림으로 도시하여 표현하면 [그림 9.1]과 같다.



[그림 9.1]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방법

라. 내진성능 평가

내진성능 평가는 필요시에 실시하는 것으로 내진설계 성능기준 및 기타 연구결과¹⁾에서 해당 시설물의 내용을 참고하고 지진의 발생빈도와 지반운동의 세기, 시설의 중요도에 따라 요구되는 내진성능을 기능수행기준과 붕괴방지 수준으로 구분하여 만족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1) 기존 시설물의 내진성능 평가 및 향상요령(2004.05) : 국토해양부, 한국시설안전공단

9.2 안전성평가 기준

정밀점검(필요시)이나 정밀안전진단 시에는 안전성평가 결과를 산정한다.

정밀점검의 경우에는 라이닝 상태평가 시 터널안전성에 직접 관련된 주요 구조 부재의 손상항목이 D급 이하로 판정되거나 혹은 전문가에 의해 안전성평가 요구가 있을 경우 원인분석을 위한 구조검토 결과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를 산정한다.

터널은 대부분 지표면 아래에 축조되는 구조물로서 지하수의 부력, 지반의 부등침하 및 누수에 의한 지반함몰 등의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터널의 설계·준공도서 및 기존의 안전점검 또는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을 검토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거나 실제 주요부재의 상태평가 결과가 불량하게 나타나 현장조사 시 문제점이 발생한 부위를 대상으로 안전율(Safety factor, SF) 검토를 수행하여 구조물의 안전성을 판단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내에서의 구조물 안전성평가는 평가대상 항목의 안전율을 이용하여 수행하고 있으며, 안전율 검토는 허용응력설계법(부재의 발생응력과 허용응력의 비)이나 강도설계법(부재의 소요강도와 설계강도의 비)에 따라 구조물의 각 부재에 작용하는 외력에 의한 응력을 산정하여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터널은 지반과의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구조적 거동이 이루어지므로 구조해석에 필요한 경계조건, 지반상수 등은 설계·준공도서 또는 지반조사에 의해 얻거나 구조물의 설계기준 등에 나와 있는 값을 참고로 하여 구한다.

상기와 같은 내용을 근간으로 검토한 휨, 전단, 압축 등의 구조적 최저 안전율 정도에 따라 구조물의 안전성에 대한 평가기준을 설정하면 다음 [표 9.1]과 같다.

[표 9.1]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기준

기준	내 용
A	안전율(SF)이 1.0 이상이고 주부재에 손상이 없는 경우
B	안전율(SF)이 1.0 이상이고 주부재에 손상(단면손실)이 있는 경우
C	안전율(SF)이 1.0 미만~0.9이상
D	안전율(SF)이 0.9 미만~0.75이상
E	안전율(SF)이 0.75 미만

- 안전성평가 결과의 산정은 가급적 상태평가 기준과 균형을 맞추도록 등급 분류체계를 구성하여 설계가 적절하게 된 신설터널에서 B등급이 나오는 모순을 없애기 위하여 안전하게 설계된 경우는 A등급으로 평가되도록 하였다.
- 보수·보강 혹은 사용제한 등 검토가 필요한 D, E등급 안전율 개념을 이용하였다.

9.3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방법

9.3.1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가. 개착터널(cut and cover : BOX, 지하차도), Shield 터널

구조물의 해석방법에는 강도설계법과 허용응력설계법이 있으며 이 중 강도설계법을 원칙으로 하지만 특별한 경우에는 허용응력설계법을 적용할 수 있다.

강도설계법에서는 구조물의 안전여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고려하는데 하나는 하중의 변경, 구조해석 시의 가정과 계산을 간단하게 함으로써 야기될지 모르는 초과하중의 영향을 고려한 하중계수이며, 다른 하나는 설계계산상의 불확실성, 부재의 다양한 형식에 대한 상대적 중요도, 재료의 설계강도 및 실제단면치수와 제작 시공 기술 등에 관련된 다소의 불리한 오차들이 개별적으로는 허용한계에 있더라도 총체적으로 결합 시 부재의 강도감소를 초래할 가능성에 대비한 강도감소계수이다.

이러한 하중계수와 강도감소계수에 의한 설계상의 구조물 안전여유율을 등가안전율이라 하며 다음 식으로 표현된다. 이의 값은 활하중/고정하중의 비(L/D)와 휨부재 혹은 전단부재의 여부에 따라 차이를 갖는데 휨응력에 대해서는 약 1.5~2.0이고, 전단응력에 대해서는 1.7~2.5정도의 값을 갖는다.

$$n' = \frac{\gamma_D + \gamma_L L/D}{\Phi(1 + L/D)}$$

여기서, n' : 등가안전율
 γ_D : 고정하중계수
 γ_L : 활하중계수
L/D : 활하중과 고정하중의 비
 Φ : 강도감소계수

일반적으로 설계개념의 안전율을 도입하는 개착터널(cut and cover), Shield 터널 등은 안전율 산정이 가능하므로 [표 9.1]과 같은 방법으로 안전성 평가결과를 산정한다.

- ① 안전성평가는 일반적으로 수치해석을 통한 부재의 응력크기로 평가
- ② 안전율 SF=1 이상인 경우 : A등급으로 표현
- ③ 안전율 SF=1 이상이거나 같은 경우로서 손상이 있는 경우 : B등급으로 표현
- ④ 안전율 SF=1보다 작은 경우 : C, D, E등급으로 표현

- C급 : $0.90 \leq SF < 1.0$
- D급 : $0.75 \leq SF < 0.90$
- E급 : $SF < 0.75$

여기서, 강도설계법 안전율 : $SF = \frac{\text{설계강도}}{\text{소요강도}} = \frac{\phi Mn}{Mu}$

허용응력설계법 안전율 : $SF = \frac{\text{허용응력}}{\text{발생응력}} = \frac{f_a}{f_a + f_i}$

나. 굴착터널(Mined Tunnel : 재래식, NATM 터널)

굴착터널에 대한 안전성 평가는 설계개념의 안전율을 도입했을 경우에는 안전율 산정이 가능하므로 [표 9.1]과 같은 방법으로 안전성평가 결과를 산정한다. 그러나 설계개념의 안전율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터널상태평가 시 지반상태와 라이닝 변상 등이 기 반영하였고, 안전성평가를 정량화하여 A, B, C, D, E 등급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므로 안전, 불안전 여부만을 평가할 수 있다.

- 일반적으로 터널은 지반조건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대표단면 선정의 타당성, 지반정수의 정확성, 단층 및 절리 등의 불연속면 특성의 포함여부, 해석방법 등에 따라 안전성평가 결과가 좌우되고
- 산악터널과 도심지 터널의 주변지반조사의 어려움으로 인해 지반정수의 가정을 통한 터널해석에는 많은 오차를 포함하고 있으며
- 설계개념의 안전율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터널해석은 각종 변상과 변위에 따라 수치해석 및 역해석을 실시하여 보수·보강 범위를 산정하고 있으므로 안전성평가를 정량화하여 A, B, C, D, E 등급으로 분류하기가 곤란하여 반영하지 않고 안전, 불안전 여부만을 평가할 수 있다.

다만, 터널의 수치해석에 의한 안전성평가 시에는 수치해석에 필요한 지반정수가 지반조사에 의하여 획득될 경우 터널의 라이닝에 작용하는 하중조건과 터널라이닝의 변상상태를 역해석적 방법이나 일반적인 라이닝 구조해석 방법으로 터널의 안전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런 경우 콘크리트 라이닝의 강도특성과 지반특성을 수치해석에 반영하여 터널 라이닝의 설계기준강도와 대비하여 안전율을 판단하여 안전성여부를 평가하는데 참고자료로 활용한다.

9.3.2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방법

가. 안전율을 도입한 경우의 방법

개착터널(cut and cover)과 굴착터널(Mined Tunnel)중 설계당시 안전율을 도입한 경우에는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 방법을 다음과 같이 예시 하였다.

[표 9.2] 터널의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개착터널) 예

시설물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표			
시설물명	○○○ 터널		표번호 TS. NO.3
부재구분	안전율(SF)	평가결과	비 고
상부슬래브(횡방향) 휨모멘트	1.08	a	
상부슬래브(종방향) 휨모멘트	0.92	c	
상부슬래브 전단력	1.03	b	손상(단면감소)발생
안전성평가 결과	◦ 최저 안전성평가 결과 = C		

[표 9.3] 터널의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ASSM 터널) 예

시설물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표			
시설물명	○○○ 터널		표번호 TS. NO.4
부재구분	안전율(SF)	평가결과	비 고
콘크리트라이닝 전단응력	2.5	a	
콘크리트라이닝 압축응력	1.8	a	
안전성평가 결과	◦ 최저 안전성평가 결과 = A		

나. 안전율을 도입하지 않을 경우의 방법

안전율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수치해석에 의한 안전성평가 방법은 다음과 같다.

[표 9.4] 터널의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NATM터널) 예

시설물 안전성평가 결과 산정표			
시설물명	○○○ 터널	표번호	TS. NO.5
부재구분	변위 또는 응력	안전성 여부 (안전, 불안전)	비 고
○ 변위발생경향	(단위 : mm)		- 정성적표현
- 천단변위	0.78	안전	
- 내공변위	2.89	안전	
○ 응력발생경향	(단위 : kgf/cm ²)		- 정성적표현
- 휨압축응력	12 kgf/cm ²	안전	
- 전단응력	5.19 kgf/cm ²	안전	
안전성평가 결과	○ 안전성 평가결과 : 안전 ※ 일반터널(Mined Tunnel)에서 안전성평가를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없는 경우는 정성적으로 표시함.		

제 10 장

종합평가 기준 및 방법

10.1 일반

10.2 종합평가 기준

10.3 종합평가 결과 산정 방법

제10장 종합평가 기준 및 방법

10.1 종합평가 기준

가. 일반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구조물 부재의 결함 및 손상에 대하여 평가기준 및 상태평가 기법에 따라 수행한 상태평가 결과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고려하여 개별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하거나 또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각각 실시한 후 이들 결과를 기초로 종합하여 이루어진다. 즉, 상태평가만 실시하는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가름하여 상태평가 결과가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최종적인 종합평가 결과를 부여하게 된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가 동시에 실시되는 경우에 대하여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객관적이고 정량적이며 통일성 있는 종합평가가 이루어지고 합리적인 종합상태평가 결과가 결정될 수 있도록 종합평가 기준을 설정하고 그 평가방법 및 절차를 수립한다.

나. 종합평가 기준

시설물의 종합평가는 상태평가만 실시한 경우에는 상태평가결과에 의해 부여된 상태평가등급이 그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등급으로 결정되지만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를 동시에 실시한 경우에는 각각의 결과로 부여된 상태평가결과와 안전성평가결과를 비교하여 최저평가결과를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한다.

10.2 종합평가 결과 산정 방법

10.2.1 종합평가 산정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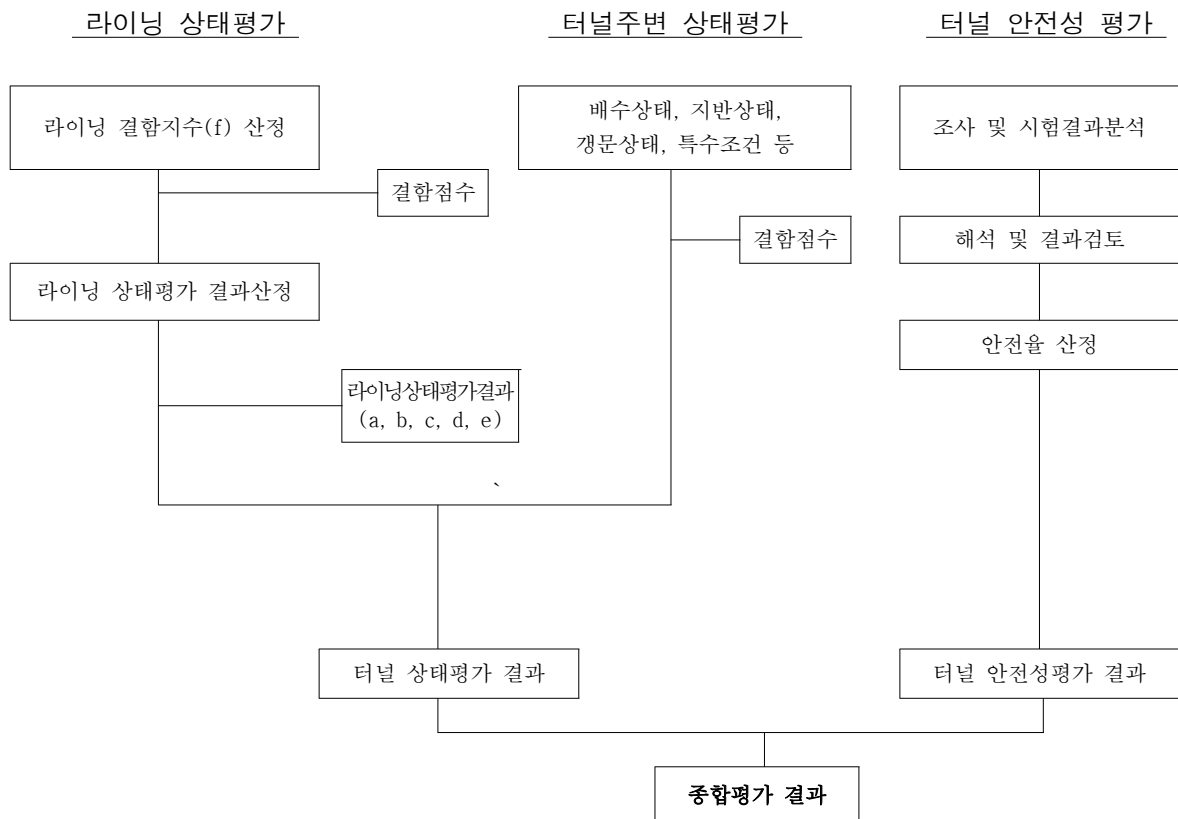
터널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 2개 등급 중 최저등급을 터널 종합평가 결과로 하여야 하고 [그림 10.1]의 절차에 따라 결정한다.

가. 정밀점검

터널 라이닝 상태평가와 터널 주변상태평가(필요시)를 종합하여 터널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하며, 터널 안전성평가를 시행한 경우에는 상태평가 결과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비교하여 최저등급을 터널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한다.

나. 정밀안전진단

터널 상태평가 결과(라이닝 상태평가+터널주변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 중 최저 등급을 터널 종합평가 결과로 결정한다.



[그림 10.1]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 산정절차

10.2.2 종합평가 결과 산정 방법

터널에는 분야별로 크게 개착터널(cut and cover), 굴착터널(Mined Tunnel)로 분류하여 설계당시 안전율을 도입한 경우의 종합평가 결과 산정 방법과 안전율을 도입하지 않은 경우 종합평가 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표 10.2] 터널의 종합평가 결과 산정(개착터널) 예

시설물 종합평가 결과 산정표				
시설물명	○○○ 터널		표번호	TS. NO.6
평가구분	터널결함지수	평가결과	비 고	
상태평가	F=0.51	C	근거 표번호	
안전성평가	－	A	근거 표번호	
종합평가	－	C		
종합평가 결과	○ 개착터널에서는 안전성평가를 정량적으로 표시할 수 있으므로 안전성평가 결과를 표시함. ○ 터널의 종합평가 결과 : C			

[표 10.3] 터널의 종합평가 결과 산정(ASSM터널) 예

시설물 종합평가 결과 산정표				
시설물명	○○○ 터널		표번호	TS. NO.7
평가구분	터널결함지수	평가결과	비 고	
상태평가	F=0.45	C	근거 표번호	
안전성평가	－	A	근거 표번호	
종합평가	－	C		
종합평가 결과	○ 일반터널에서 안전성평가를 정량적으로 표시할수 있는 경우는 등급으로 표시함. ○ 터널의 종합평가 결과 : C			

[표 10.4] 터널의 종합평가 결과 산정(NATM터널) 예

시설물 종합평가 결과 산정표				
시설물명	○○○ 터널		표번호	TS. NO.8
평가구분	터널결함지수	평가결과	비 고	
상태평가	F=0.65	D	근거 표번호	
안전성평가	－	안정	근거 표번호	
종합평가	－	D		
종합평가 결과	○ 일반터널에서 안전성평가를 정량적으로 표시할수 없는 경우는 정성적으로 표시함. ○ 터널의 종합평가 결과 : D			

제 11 장

안전등급 지정

제11장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법」 제10조의2 및 「영」 제11조의5에 따라서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표 11.1] 안전등급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 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제 12 장

보수 · 보강 방법

12.1 일반

12.2 보수 · 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12.3 보수 · 보강 방법

12.4 유지관리 방안 제시

제12장 보수·보강 방법

12.1 일반

구조물에 대한 보수·보강은 손상 구조물의 영향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환경 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한다.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12.2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또한 단계별 평가에서 시설물에 대한 종합평가는 부재 및 시설물에 발생한 결함 및 손상의 심각성과 부재 및 시설물의 중요도가 반영되어 있다. 따라서 보수·보강의 우선순위는 평가단계의 역순으로 추적하여 평가결과가 나쁘고, 중요도가 큰 부재 및 시설물 순서로 우선순위를 결정할 수 있다.

12.3 보수·보강 방법¹⁾

12.3.1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세부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12.3.2 보수·보강의 수준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12.3.3 보수·보강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 시 내하력, 내구성, 기능 및 미관 등을 검토하여 결정하며, 이 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 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를 기초로하여 결함 발생원인에 대한 정확한 추정 후 보수·보강공법을 선택한다.

가. 균열

콘크리트 균열보수공법에는 표면처리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 및 침수성방수제도포공법 등이 있으며, 균열기준은 구조물의 중요도, 특성 등에 따라 다양하므로 구조물의 특성 및 균열현상 등을 고려하여 적절한 보수공법을 사용해야 한다.

1) ○ 시설물의 열화진단 보수·보강 전자매뉴얼 개발 : 한국시설안전공단(2008)
○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 누수 보수·보강 전문시방서 : 한국시설안전공단(1999)

콘크리트균열의 보수목적과 균열상태에 따른 보수공법별 적정성을 비교하면 다음 [표 12.1]과 같다.

[표 12.1] 콘크리트 균열의 보수공법 적정성 비교

보수 목적	균열현상 · 원인		균열폭 (mm)	보 수 공 법				
				표면처리 공법	주입공법	충전공법	침투성 공법	기타
방수성	철근부식 미발생시	균열폭 변동이 작음	0.2 이하	○	△		○	
			0.2~1.0	△	○	○		
		균열폭 변동이 큼	0.2 이하	△	△		○	
			0.2~1.0	○	○	○	○	
내구성	철근부식 미발생시	균열폭 변동이 작음	0.2 이하	○	△	△		
			0.2~1.0	△	○	○		
			1.0 이상		△	○		
		균열폭 변동이 큼	0.2 이하	△	△	△		
			0.2~1.0	△	○	○		
			1.0 이상		△	○		
	철근부식		—					□
	염 해		—					□
	반응성 골재		—					□

주1) 균열폭 3.0mm 이상의 균열은 구조적인 결함을 수반하는 일이 많으므로 여기에 표시하는 보수공법 뿐만 아니라 구조내력의 보강을 포함하여 실시하는 일이 보통이다.

주2) ○ : 적당 △ : 조건에 따라 적당 □ : 기타

나. 배면공동 보수

라이닝 배면공동은 원지반의 결함이나 시공 결함 등에 의한 공동과 준공 후 누수 등에 의한 공동으로 구분되며, 이러한 공동은 비파괴시험 등에 의해 조사하고 터널 시설물의 안전이 유지되도록 공동부분을 채워 작용압력을 균일화시킴으로써 라이닝의 내하력을 유효하게 작용할 수 있게 한다.

이 방법에는 모르터 주입 등에 의하여 충전하는 공법이 있다.

다. 라이닝 보강

1) 지보공에 의한 보강

라이닝 콘크리트의 노후화가 심하거나 균열의 정도가 현저한 경우 사용하는 대책공법으로 강지보공 록볼트 등 지보공에 의해 보강하는 방법이다.

2) 라이닝 콘크리트 내부 두께 보강에 의한 보수

내공단면에 여유가 있는 경우, 손상상태, 시공조건 등에 따라 철근 콘크리트 또는 뿔어붙임 콘크리트로 시공한다. 내부 두께 보강은 라이닝 콘크리트의 강도증가 대책으로서 재료의 품질약화에 대한 대책으로는 적당하나 누수 등 다른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때는 이 요인을 제거 혹은 경감하는 대책을 병용한다.

3) 인버트 설치

주위 지형이 팽창성 지질, 지내력이 부족한 경우 등은 측압에 견디도록 또는 지지력을 분산시켜 부풀음을 방지하기 위하여 인버트를 설치한다.

4) 라이닝 콘크리트 교체

라이닝의 노후화 및 균열로 기능상실, 내공단면에 내부두께 보강을 할 수 있는 여유가 없을 때 부분적 또는 전체적으로 라이닝을 교체한다.

5) 성토 및 절취 등

지형적인 원인 혹은 사면활동 등 지표의 거동으로 터널에 이상을 주는 경우에는 성토 및 절취, 지반보강공, 활동억지공, 배수공 등 다양한 대책공법을 고려한다.

라. 백태(Efflorescence)

노후화된 콘크리트 표면에 생기는 백색의 결정으로 콘크리트중의 황산칼슘, 황산마그네슘, 수산화 칼슘등이 물에 녹아 침출되어 공기중의 탄산가스와 화합한 것이다. 이 현상은 모세관 공극을 감소하도록 물-시멘트비와 단위수량을 작게하면 억제 가능하다. 즉, 수밀성이 약한 콘크리트나 모르터에 물이 새어나면서 탄산칼슘이 표면에 퇴적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 탄산칼슘은 시멘트 경화체와 대거나 물 속의 이산화탄소로 형성된다.

그 대책으로는 누수대책 등으로 콘크리트를 완전히 건조시킨후 백태를 제거하고 폴리머 모르터 등으로 마감한다. 백태의 제거방법은 희석한 염산(1:5~1:10)으로 처리하거나 모래방사에 의해 제거하도록 한다. 인산으로 처리할 때는 처리 후에 잔류인산을 물로 완전히 씻어내며 직사광선을 피하고 바람이 없는 날에 작업을 한다.

마. 동해

동해대책공은 누수대책공, 단열공법, 가열공법 등으로 터널의 환경조건에 따라 효율성, 내구성 및 경제성을 고려하여 적절한 대책공을 선정한다.

동해대책공의 목적으로는

- 1) 동결융해에 의한 라이닝 재료의 열화방지
- 2) 배면지반의 동상압에 의한 터널의 변상방지
- 3) 고드름·측빙·빙판의 발생에 의한 차량운행에 유해한 영향 방지
- 4) 터널내 작업의 안전성 확보
- 5) 고드름 제거 등 보수작업의 용이성 확보 등이 있다.

바. 누수

누수대책공은 도수공법, 흠파기공법, 지수공법, 뿔어붙임 및 도포공법, 방수판, 방수쉬트, 배면주입공법, 수위저하공법 등이 있다.

대책공의 목적으로는 누수에 의한 터널의 기능, 갱내설비의 기능, 안전운전, 갱내 작업 환경의 개선 등이며, 누수의 발생 상황을 정확히 조사하여 대책공의 효과, 시공성, 경제성 및 내구성을 고려하여 안전하게 시행할 수 있어야 한다.

누수에 대한 대책공은 [표 12.2]와 같다.

[표 12.2] 누수에 대한 대책

요인 분류	누수상태	선 상		면 상		비 고				
	누 수 량	소 량	다 량	소 량	다 량					
	내공단면여유	유 무	유 무	유 무	유 무					
선상 대책 공법	도 수 공 법	○	-	○	-	△	-	△	-	• U, V 커트 공 • 면상대책공법의 전처리로서도 시행 • 누수량이 물방울 형성 정도이고 범위가 한정되는 경우 적용 가능
	흠 파 기 공 법	-	○	○	○	-	○	-	○	
	지 수 공 법	△	△	-	-	-	-	-	-	
면상 대책 공법	뿔 어 붙 임 공 법	-	-	-	-	○	-	○	-	• 철망, 앵커 및 도수공의 병용 필요
	도 포 공 법	-	-	-	-	△	△	-	-	• 누수 정도가 경미할 때에만 적용
	방 수 판	-	-	-	-	-	-	○	-	
	방 수 시 트	-	-	-	-	○	-	○	-	• 내부라이닝 개축 등을 행할 경우
배면주입공법		-	-	○	○	-	-	○	○	• 토피가 작고 지표수와 우수가 터널 배면공동을 통하여 직접 터널내로 유입하는 경우
수위저하공법		-	-	○	○	-	-	○	○	• 지하수위가 높은 상태에서 용수나 열차 하중의 반복하중에 의한 지반재료의 배출

주) ○ : 적용 가능한 공법

△ : 경우에 따라 적용할 수 있는 공법

사. 라이닝의 재료열화

터널 라이닝의 재료열화 현상은 시간의 경과에 따른 노후화로 인식되고 있지만 누수와 관련된 것이 많고 그 밖의 유해수, 동해, 염해 등의 외적 요인이 작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내적요인으로서는 콘크리트의 시멘트량이 부족한 경우, 간혹 나타나는 골재의 알칼리골재반응, 황산이온 영향 등 여러요인에 의하여 재료열화 현상이 나타난다.

라이닝의 재료열화 조사는 어느 요인으로 그리고 어느 범위까지 노후화 됐는지를 정확히 조사하여 적절한 대책공법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하므로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인 라이닝의 재료열화 현상별 원인과 대책은 [표 12.3]. [표 12.4]와 같다.

[표 12.3] 재료열화 현상별 원인과 대책

노후화 현상	원인	구 분	영 향 인 자	억 제 대 책
철근 부식	염 해	내적요인	콘크리트 내부 허용 Cl^- 량 초과	해사세척에 의한 Cl^- 제거
		외적요인	제설제 살포 또는 해안환경에 의한 염화물 침입	표면을 기밀성 도료로 도장
	탄산화	내적요인	콘크리트 W/C, 공극이 큼	적정의 W/C 선정
		외적요인	대기의 CO_2 농도증가로 탄산화가 철근 깊이까지 도달	기밀성 도료로 표면 도장
균열 박리	알칼리 골재반응	내적요인	알칼리 반응성 골재를 사용할 때 시멘트 중의 K_2O 가 다량 함유	반응성 골재의 사용제한 저 알칼리성 시멘트를 사용
		외적요인	콘크리트가 습윤상태에 있음.	콘크리트를 건조상태로 보존, 수밀성 도장
	건조수축	내적요인	단위수량이 높음	단위수량이 적은 무수축시멘트 사용
		외적요인	콘크리트의 건조속도가 빠름	초기양생을 충분히 실시

[표 12.4] 콘크리트 라이닝의 보수·보강 공법 선정표

○ : 적용가능공법

△ : 응급조치 또는 타공법과 병용필요 공법

위치	공법 열화 상황		표면 청소	깨 어 내 기	보 강 판	철 망 공	라이닝		보 강 새 들	개 축	탄소 섬유 보강 공	비 고
							뿔어붙임 콘크리트	현장 타설				
아 치 부	국부적	소	△	○	○	○					○	
		대	△	○	△	△	○	○	△	○	○	
	광범위	소	△	○	△	△	○	○	△	○	○	
		대	△	△	△	△	○	○	△	○	△	
측 벽 부	국부적	소	△	○							○	
		대	△	○						○		
	광범위	소	△	○			○	○			○	
		대	△	△	△		○	○	△	○		
표면의 오염			○									
비 고			(주2)	(주2)	(주3)	(주3)	(주5)	(주4)	(주4)	(주6)	(주5)	

주) 1. • 노후화범위 구분 : - 국 부 적 : 노후화 범위 10m² 미만

- 광 범 위 : 노후화 범위 10m² 이상

• 노후화상황 구분 : - 아치부 대 : 낙하물 크기가 벽돌 정도 이상

- 아치부 소 : 낙하물 크기가 벽돌 정도 미만

- 측벽부 대 : 노후화 깊이 10cm 정도 이상

- 측벽부 소 : 노후화 깊이 10cm 정도 미만

주) 2. △ : 다른 보수 공법의 전 처리로 시행

주) 3. 새들, 내부 라이닝 등의 내공여유가 없는 경우에도 적용

주) 4. 라이닝 내력 증가 필요, 내공단면 여유 있는 경우

주) 5. 라이닝 내력 증가 필요, 내공단면 여유없는 경우

주) 6. 노후화 정도가 라이닝 두께 1/2 이상인 경우

아. 진동 및 소음에 따른 영향

구조물 주위에서 발생한 진동 및 소음에 대하여 외국의 기준을 각각 예시하면 [표 12.5]와 같다. 이러한 기준을 토대로 터널 내부의 조건을 살펴보도록 한다.

[표 12.5] 지반조건에 따른 일반주택의 피해 정도와 진동속도와의 관계(Langefors)

지반조건 진동범위	지하수면 이하의 점토, 모래, 자갈	퇴석(Moraine) 슬레이트(Slate) 연약한 석회석	강한 석회석, 화강암, 석영질 사암, 편마암, 현무암	피 해 정 도
충파의 전달속도 (m/sec)	300 ~ 1,500	2,000 ~ 3,000	4,500 ~ 6,000	
진동속도 (cm/sec)	0.4 ~ 1.8	3.5 이하	7.0 이하	피해 없음
	0.6 ~ 3.0	5.5	11.0	무시할 수 있는 피해
	0.8 ~ 4.0	8.0	16.0	균열 생성
	1.2 ~ 6.0	11.5 이상	23.0 이상	상당한 피해 발생

또, 생활소음 규제 기준은 그 범위가 [표 12.6]과 같다.

[표 12.6] 생활소음 규제기준의 범위

단위 : dB(A)

대 상 지 역	시 간 별 대 상 소 음		조 석 (05:00 ~ 08:00) (18:00 ~ 22:00)	주 간 (08:00 ~ 18:00)	심 야 (22:00 ~ 05:00)
주거지역, 녹지지역, 취락지역 중 주거지역, 관광휴양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학교·병원의 부지 경계선으로부터 50m이내 지역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장 및 사업장의 소음		50 이하	55 이하	45 이하
	공사장의 소음		65 이하	70 이하	55 이하
상업지역, 준공업지역, 일반공업지역, 취락지역 중 주거지구 외의 지구	확성기에 의한 소음	옥외설치	70 이하	80 이하	60 이하
		옥내에서 옥외로 방사되는 경우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장 및 사업장의 소음		60 이하	65 이하	55 이하
	공사장의 소음		75 이하	75 이하	55 이하
※ NOTE : 1) 대상지역의 구분은 국토관리 이용법에 의하며, 도시지역은 도시계획법에 의한다.					
2) 공사장 소음의 규제기준은 주간의 경우 소음발생 시간이 1일 2시간 미만일 때에는 +10dB, 2시간 이상 4시간 이하일 때에는 +5dB를 보정한 값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지하철 공사측에서 제시한 [표 12.7]과 같은 발파진동의 피해범위가 일반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외국기준과 비교하면 보수적인(conservative) 것으로 알려져 있다.

[표 12.7] 국내에서 적용되는 진동허용치

단위 : (cm/sec)

구 분	문 화 재	Computer 시설물 주변	주택/아파트	상 가	철근콘크리트 빌딩 및 공장
건물 기초에서의 허용진동치	0.2	0.2	0.5	1.0	1.0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터널의 안전진단시에는 인접건물이나 본 터널부에 대하여 진동, 소음측정기를 사용하고 상기 기준을 참고하여 검토한다.

자. 터널에 근접한 구조물 시공 시 영향

터널 인접부위 구조물 시공에 의한 터널의 손상은 시설 터널에 인접하여 행해지므로 터널 주변의 응력 균형이 흐트러져 생기는 것을 말한다.

[표 12.8] 근접시공의 예

구 분	내 용
터널의 병설	○ 기존터널과 병행해서 별도의 터널 건설 ○ 선로증설 공사시 많음
터널의 교차	○ 기존터널 상부 또는 하부에 별도의 터널이 횡단 ○ 터널상부에 택지개발 등으로 개착하는 경우
터널상부의 개착	○ 터널상부에 택지개발 등으로 성토하는 경우
터널상부의 구조물 기초	○ 터널상부에 건물 등이 세워져 그 기초가 터널의 상부, 측면에 시공되는 경우
지반진동	○ 터널 주변의 근접공사로 인한 지반진동(발파진동 등)
지하수위 변동	○ 터널 주변공사(댐 등)에 의하여 지하수위가 상승하여 라이닝부에 수압이 작용하는 경우

(터널補强・補修매뉴얼, (財)鐵道總合技術研究所, 1990, p II-42)

구체적인 손상현상이 보이지 않더라도 터널구조상 배면공동 상존, 라이닝 두께 부족, 인버트가 없는 터널 등의 경우 터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기존 터널 대책과 기존터널에 인접 하여 구조물 시공을 하는 경우의 대책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전에 토질조사 및 시험결과를 토대로 공법을 선정한다.

근접시공 대책은 [표 12.9]와 같다.

[표 12.9] 근접시공 대책

구 분	대 책	
기존터널 인접하여 구조물 시공	○ 원지반을 진동하지 않는 공법 적용 ○ 발파진동 경감공법 적용 ○ 터널에 균등한 하중이 증가되도록 성토 ○ 터널에 균등한 하중이 증가되도록 개착	
기존터널과 인접공사시의 중간지반의 대책	○ 연속지중벽 ○ 지반개량(약액 주입)	
기존터널의 대책	기존터널의 라이닝에 균열 등이 발생	○ 받침판 ○ 단면보강 ○ 철망, 그물
	구조물 손상 유무에 관계 없이 보강을 요하는 경우	○ 배면주입 ○ Rock Bolt ○ 단면보강

12.4 유지관리 방안 제시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부 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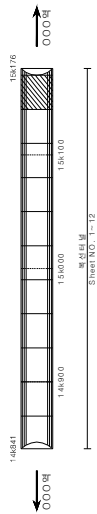
- A. 외관조사망도
- B. 과업지시서 예시
- C. 사전검토보고서 예시
- D.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요령

부록 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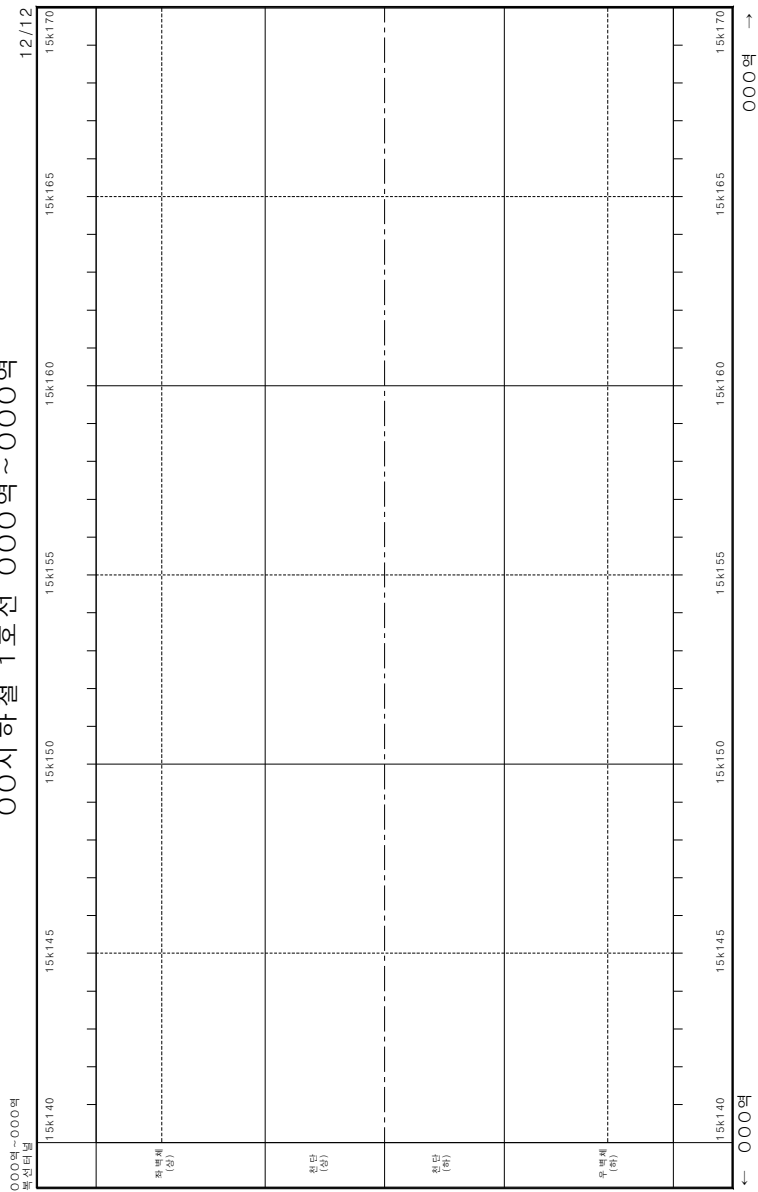
외관조사망도

외관조사망도 (굴착터널)

KEY PL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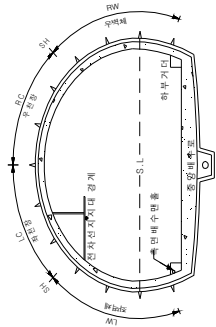


OO지하철 1호선 000역 ~ 000역



구 간 : 1 호선 000역 ~ 000역
위 치 : Sta.0k000~0k000

부 재 명



범 례

Client

OO도시철도공사
OOO Metropolitan Transit Corporation

Project

OO지하철 1호선(00~00)
토목시설물 점검안전진단용역

Drawing

본 선 (복신타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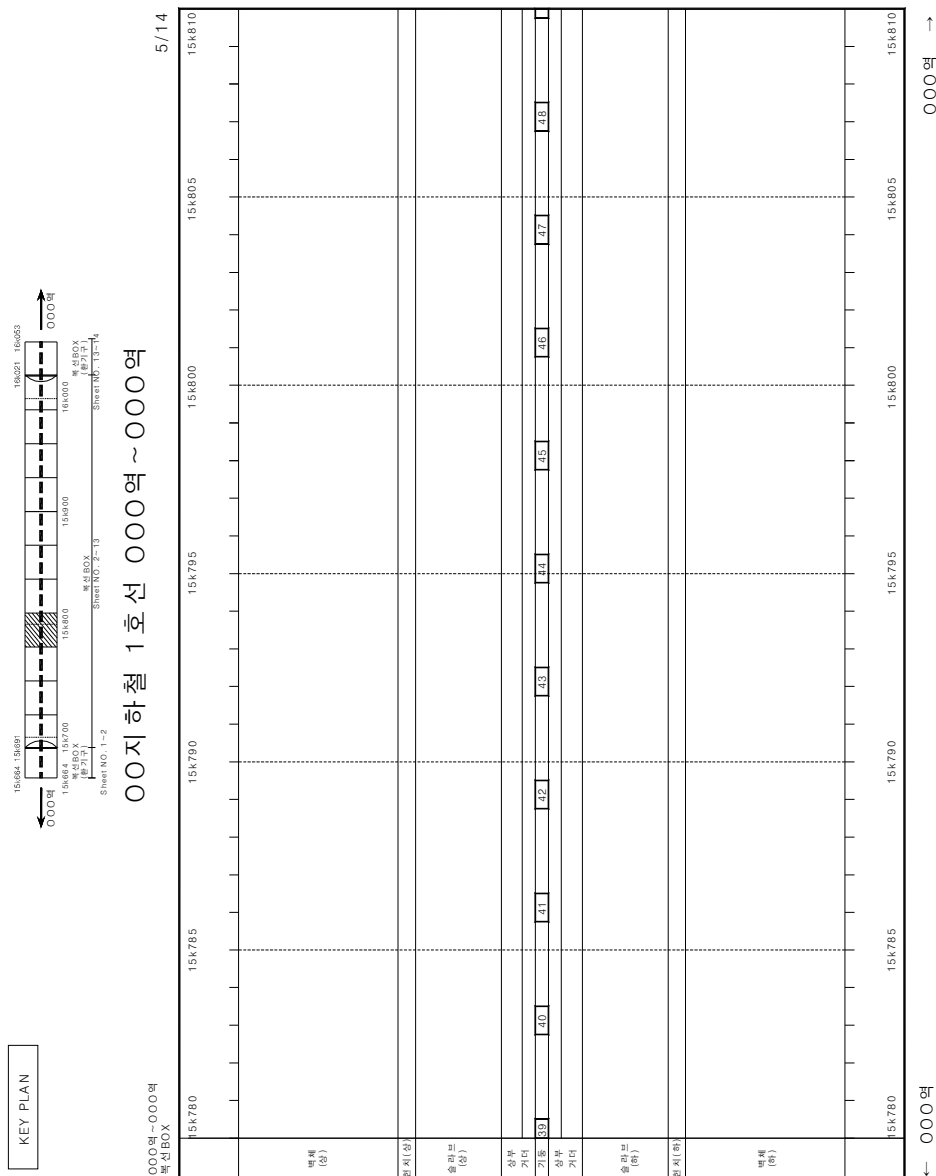
Date

2009. 1.

Sheet Numbe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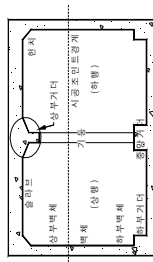
12/12

외관조사망도 (개작터널)



구 간 : 1호선 000역 ~ 000역
위 치 : Sta. 0k000 ~ 0k000

파	
---	--



30

Client

00 도시철도공사
000 Metropolitan Transit Corporation

00지하철 1호선(00~00)
토목시설팀

Drawing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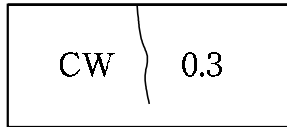
Date _____

2009. 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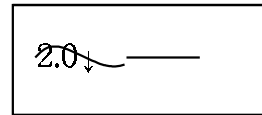
Sheet Number 5/14

손상표시 범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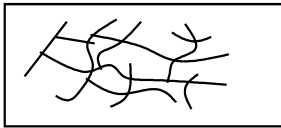
다음의 범례를 이용하여 표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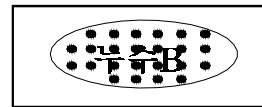
균열폭(0.3mm인 경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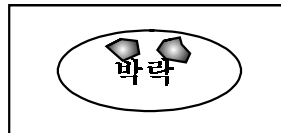
단차화살표방향으로돌출
수치는 단차 (m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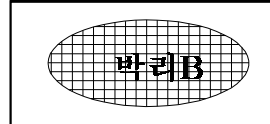
망상균열(범위를 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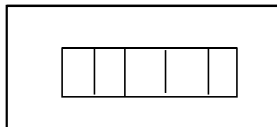
누수, 습윤부
(등급표시 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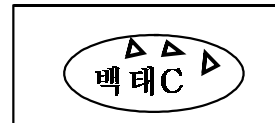
박락
(등급표시 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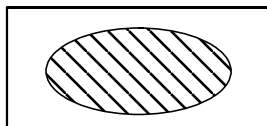
박리
(등급표시 A~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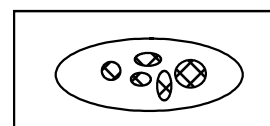
누수방지공(도수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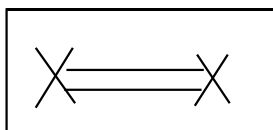
백태
(등급표시 A~E)



라이닝 열화가
심한부분



골재의 노출



철근노출

부록 B

과업지시서 예시

-정밀점검, 정밀안전진단

본 과업지시서 예시는 과업의 제반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과업지시서

1. 일반조건

1.1 과업명 : ○○터널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1.2 과업의 목적

본 과업은 “시설물의안전관리에관한특별법”(이하 “시특법” 이라한다.)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9조에 규정에 따른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으로서 시설물에 대한 물리적 기능적 결함을 조사하고 구조적 안전성 및 손상상태를 점검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시설물의 효용을 증진시켜 공공의 안전을 확보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3 과업의 범위

1.3.1 시설물 명 : ○○터널

1.3.2 위 치 : ○○도 ○○시(군) ○○동(면) ○○리

1.3.3 제 원

- 터널 형식 :
- 터널 연 장 : m
- 차선,단,복선 :
- 배수 형식 :
- 환기 방식 :
- 준공년도 :

1.3.4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

[정밀안전진단]

- 본선라이닝
- 갱문
- 개착터널
- 지하차도
- 지하정거장
- 연직갱 및 경사갱
- 환기구
- 피난연락갱
- 연결터널(환기시설)
- 갱구부 옹벽

[정밀점검]

- 본선라이닝
- 갱문
- 개착터널
- 지하차도
- 지하정거장

1.4 과업내용

[정밀안전진단]

- 1) 자료수집 및 분석
- 2) 현장조사 및 시험
- 3) 상태평가
- 4) 안전성평가
- 5) 종합평가
- 6) 보수·보강방법
- 7) 보고서 작성

[안전점검]

- 1) 자료수집 및 분석
- 2) 현장조사 및 시험
- 3) 상태평가
- 4) 안전성평가(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 5) 보수·보강방법(선택과업이 있을 경우)
- 6) 보고서 작성

1.5 주요업무의 사전승인 등

계약상대자는 다음사항에 대해서는 사전에 관리주체의 승인을 받아 과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 1) 과업수행계획서 및 착수신고서의 내용변경
- 2) 기본계획을 포함한 주요내용 및 방침의 설정 또는 변경
- 3) 기타 감독원의 지시나 계약상대자의 판단에 따라 승인 받아야 할 사항

1.6 과업수행 및 공정보고

1.6.1 착수신고서 제출

- 1) 계약상대자가 과업착수시 제출할 착수신고서와 착수신고서에 포함하여 제출할 서류의 내용과 서식은 다음 각호와 같다.
 - ㉠ 착수신고서
 - ㉡ 사업수행계획서
 - ㉢ 인력 및 장비 투입계획서
 - ㉣ 세부공정계획서
 - ㉤ 사업책임기술자 선임신고서
 - ㉦ 사업수행 조직표
 - ㉧ 안전관리계획서
 - ㉨ 사전검토 보고서
- 2) 계약상대자는 당해 시설물의 설계도서 등 유지관리자료와 과업지시서 등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의 여부를 검토하여 용역 착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그 방침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다만, 용역업무의 특수성 등으로 인하여 별도로 기간을 정할 경우에는 그 기간으로 한다.
- 3)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를 거쳐 관리주체의 방침을 받은 결과를 반영한 과업수행

계획서를 작성하여 관리주체에게 서면으로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 용역 업무를 진행하여야 한다.

4) 설계도서 등의 사전검토 보고서와 과업수행계획서에 관한 일체의 서류는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에 수록하여야 한다.

5) 계약상대자는 상기 1.6.1항의 착수신고 서류 ○부를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1.6.2 공정보고

계약상대자는 과업수행기간중 다음사항을 포함한 월간진도보고를 매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다음달 5일까지 점검책임기술자의 확인을 받아 관리주체에 제출하여야 한다.

- 1) 과업추진내용 및 공정현황
- 2) 과업수행상 중요 문제점 및 대책
- 3) 참여기술자 현황
- 4) 다음 달 과업수행 계획

1.7 법률준수의 의무

계약상대자는 이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 법률에 저촉되는 행위로 인한 모든 피해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1.8 안전관리

1.8.1 일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은 물론 공공의 안전을 위하여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 등을 안전하게 운용하고 작업을 안전하게 수행하도록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8.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종사자의 안전

- 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사람은 안전모, 작업복, 작업화와 필요한 경우 청각, 시각 및 안면보호장비 등을 포함한 개인용 보호장구를 항상 착용하여야 하며 진단측정장비 및 기기를 항상 최적의 상태로 정비하여야 한다.
- 2) 밀폐된 공간에서의 작업이 필요할 경우에는 유해물질, 가스 및 산소결핍 등에 대한 조사와 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야 한다.

1.8.3 공공의 안전

공공의 안전측면에서 관리주체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실시 기간

동안 교통통제와 작업공간 확보를 위하여 적절한 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1.9 용어의 해석

과업지시서상의 용어해석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관리주체와 계약상대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해야 한다.

2. 점검계획 및 세부사항

2.1 점검계획

2.1.1 일 반

점검계획은 현장에서 예비조사 후에 수립하며 조사항목은 아래와 같다.

- 1) 현장여건 및 문제점
- 2) 시설관리자 및 주민의견 청취
- 3) 제반시설 관련자료

이때 도면 및 자료를 개략 검토한 후에 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구조물의 형상이나 세부사항들에 대한 예비검증이 되도록 한다.

2.1.2 점검계획 수립

예비조사시 수집된 자료의 검토 후 점검계획을 수립하며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조사범위 및 항목결정
 - 각 분야별 조사범위와 세부항목을 전체 점검계획에 맞추어 결정
 - 책임기술자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도조사항목 포함
- 2) 기존 점검자료 검토
 - 기발견된 결함의 확인을 위해 검토
- 3) 분야별 소요인원 및 구성
 - 분야별 총 소요인원을 판단하여 가용인력을 판단, 투입계획수립
- 4) 재료시험 실시에 대한 적정성여부 판단
- 5) 점검기간 및 계획된 작업시간 예측
- 6) 점검범위 및 안전성에 대한 판단
- 7) 점검장비 선정

재료시험에 대한 장비, 측량장비, 토질, 기계, 전기, 시험장비를 준비할 때에는 분야별 세부조사항목에 부합되는 장비를 준비한다. 또한, 접근장비는 육안조사 및 점검장비에 의한 측정이 가능 하도록 사다리, 이동식작업대, 리프트카, 비계, 모터카 등을 준비한다.

이러한 장비선정시에 다음항목을 고려한다.

- ① 접근장비를 안전하게 지지하는지 여부
- ② 장비위치에 따른 교통통제 필요성
- ③ 장비설치에 따른 지장물 존재여부

8) 점검종사자 안전

- 점검업무 및 접근방법과 관련하여 점검자는 안전사고 예방에 유의한다.

9) 기타 점검자와 관리주체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1.3 과업수행 적용 기준

본 과업은 다음의 현행 제규정 및 지침에 의거하여 제반사항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 1)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시행규칙
- 2)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
- 3) 콘크리트 구조설계기준
- 4) 콘크리트 표준시방서
- 5) 터널 설계기준
- 6) 터널 표준시방서
- 7) 「산업표준화법」에 의한 한국산업규격(KS)
- 8) 국토해양부 발행 각종 관련 표준시방서

2.2 점검실시 세부사항

2.2.1 자료수집 및 분석

관리주체가 보존하는 감리보고서·시설물관리대장 및 설계도서 등 관련서류와 다음에 명시된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분석하여 본 과업의 기초자료로 활용한다.

- 1) 설계도서
시설물의 준공도서로서 종·평면도, 단면도, 구조물도, 시공상세도, 구조계산서, 공사시방서 등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도서
- 2) 시설물관리대장
- 3) 시공관련 자료
- 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 5) 보수·보강공사 자료

2.2.2 현장 조사 및 제반관련 시험 실시

- 1) 현장조사는 사전에 기존자료를 검토하여 예상되는 각종손상에 대하여 충분히 이해한 후 현장조사에 임한다.
- 2) 현장조사는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지침(세부지침, 터널편)에 의해 실시하며, 점검대상 구조물에 대한 상세외관조사 및 현장시험을 실시하여 부위(땅)

별, 부재별로 상태평가에 활용한다.

3) 상세외관조사시 주요결함이 발견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검토 실시한다.

2.2.3 세부시설별 조사사항

※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대상시설물의 범위와 기본과업 및 선택과업구분에 따라 당해 시설물에 해당하는 조사사항을 선택하여 명시함

구분	조사사항
터널내부	◦ 균열조사 - 위치, 균열폭, 깊이, 균열의 진행성여부 ◦ Joint부 조사(조적식라이닝) - 위치, 크기, 진행성, Seal재열화 등 ◦ 누수조사 - 위치, 누수량, 탁도, 수질 등 ◦ 2차라이닝 - 콘크리트 두께조사 - 콘크리트 강도 - 철근배근 탐사 및 철근부식도 측정 - 열화조사 · 파손 및 손상, 박리, 층분리 및 박락, 백태, 철근 노출 - 탄산화 및 염화물 함유량 조사 ◦ 내부결함 탐사 - 공동 및 공극 조사 - 강지보공 조사, 설치간격, 규격 등 ◦ 터널계측 - 내공변위, 단면측정, 라이닝응력측정, 변형률측정 ◦ 지반상태 - 풍화정도, 일축압축 강도, R.Q.D. ◦ 배수·공동구상태조사 - 배수상태 - 퇴적물 상태 - 뚜껑파손 상태 ◦ 진동 및 소음 상태 ◦ 기타조사
터널외부 (주변환경)	◦ 균열조사 - 위치, 균열폭, 길이, 깊이, 균열의 진행성여부 ◦ 누수 및 유해수조사 - 위치, 누수량, 탁도, 수질 등 ◦ 콘크리트 강도 - 반발경도 시험, 일축압축강도 ◦ 터널주변조사 - 지표 및 지질조사 - 사면조사 - 토지이용조건 ◦ 기타조사

2.2.4 선택과업

선택과업은 과업 수행전 계약상대자와 합동으로 실시한 사전조사 결과에 따라 조사 항목을 선정하며, 과업수행중에 발생하는 항목은 협의하여 추진한다.

2.2.5 상태평가

상태평가는 재료시험 및 외관조사에 의해 시설물의 각 부재로부터 발견된 상태변화(결함, 손상, 열화)를 근거로 하여 세부지침의 상태평가 기준에 따라 실시한다.

정밀안전진단에서는 시설물의 전체 부재에 대하여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부재별로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상태평가가 정확히 이루어졌는지 확인하는 동시에 기록용 문서로서 이용하기 위하여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사람은 외관조사 결과를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서식에 각각의 결함의 형태, 크기, 양 및 심각한 정도 등을 기록하여야 한다.

(정밀점검에서는 기본시설물에 대하여 점검하고,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여 상세히 상태평가를 실시하며, 외관조사망도를 작성하지 않은 부위는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 수록된 상태평가 결과를 참조하여 책임기술자가 시설물 전체에 대한 상태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2.2.6 안전성평가(안전점검의 경우 선택과업)

책임기술자는 계측 및 구조해석 또는 기존의 안전성평가 자료와 함께 부재별 상태평가, 재료시험 결과 및 각종 계측, 측정, 조사 및 시험 등을 통하여 얻은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안전과 부재의 내(하)력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세부지침의 안전성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보고서에는 평가에 사용된 해석방법의 종류 및 해석결과에 대한 설명과 계산기록을 포함하여야 한다.

2.2.7 종합평가 및 안전등급 지정

- 1)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를 실시한 결과를 종합하여 세부지침의 종합평가 기준에 따라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를 결정한다.
- 2)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을 실시한 책임기술자는 당해 시설물에 대한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로부터 안전등급을 지정한다.

다만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 기존의 안전등급보다 상향하여 조정할 경우에는 해당 시설물에 대한 보수·보강 조치 등 그 사유가 분명하여야 한다.

안전등급	시설물의 상태
A (우수)	문제점이 없는 최상의 상태
B (양호)	보조부재에 경미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기능 발휘에는 지장이 없으며 내구성 증진을 위하여 일부의 보수가 필요한 상태
C (보통)	주요부재에 경미한 결함 또는 보조부재에 광범위한 결함이 발생하였으나 전체적인 시설물의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주요부재에 내구성, 기능성 저하 방지를 위한 보수가 필요하거나 보조부재에 간단한 보강이 필요한 상태
D (미흡)	주요부재에 결함이 발생하여 긴급한 보수·보강이 필요하며 사용제한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는 상태
E (불량)	주요부재에 발생한 심각한 결함으로 인하여 시설물의 안전에 위험이 있어 즉각 사용을 금지하고 보강 또는 개축을 하여야 하는 상태

2.2.8 보수·보강방법(안전점검의 경우 선택과업)

1) 일반

보수는 시설물의 내구성능을 회복 또는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유지관리 대책을 말하며, 보강이란 부재나 구조물의 내하력과 강성 등의 역학적인 성능을 회복, 혹은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 대책을 말한다.

보수를 위해서는 상태평가 결과 등을, 보강을 위해서는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결과 등을 상세히 검토하고, 발생한 결함의 종류 및 정도, 구조물의 중요도, 사용 환경조건 및 경제성 등에 의해서 필요한 보수·보강 방법 및 수준을 정하여야 한다.

2) 보수·보강의 필요성 판단

보수의 필요성은 발생한 손상(균열 등)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되는가의 판단에 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본 지침 및 각종 기준(표준시방서 등)을 참조한다.

보강의 경우는 부재안전율을 각종 기준에서 정하는 수치이상으로 하기 위하여 어느 정도까지 부재단면 등을 증가하여야 하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3) 보수·보강의 수준의 결정

보수·보강의 수준은 위험도, 경제성 등을 고려하여 아래의 경우 중에서 결정한다.

- 현상유지(진행억제)
- 실용상 지장이 없는 성능까지 회복
- 초기 수준이상으로 개선
- 개축

4) 공법의 선정

구조물 결함에 따른 보수·보강은 보수재료와 공법 선정시 공법의 적용성, 구조적 안전성, 경제성 등을 검토하여 결정한다.

이때 중요한 것은 구조물의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며, 이를 통해 적절한 공법을 선정할 수 있고, 또한 적절한 보수재료를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 시설물관련 제반자료, 진단시 수행한 각종 상태평가 및 안전성 평가 결과를 기초로 하여,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정확한 분석 후 결함부위 또는 부재에 가장 적합한 보수·보강공법을 선정하여야 한다.

5) 보수·보강 우선순위의 결정

각 시설물은 주요부재와 보조부재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시설물에서 발생된 각종 결함에 대한 보수·보강 우선순위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 보수보다 보강을, 주부재를 보조부재보다 우선하여 실시한다.
- 시설물 전체에서의 우선순위 결정은 각 부재가 갖는 중요도, 발생한 결함의 심각성 등을 종합 검토하여 결정한다.

6) 유지관리 방안 제시(선택과업)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보고서 작성 방법

3.1 일반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실시결과 보고서는 시설물 관리주체의 유지관리업무에 효율적이며 체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과업내용을 중심으로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세부적인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을 참조한다.

3.2 정밀점검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점검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점검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점검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점검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점검의 개요

정밀점검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점검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사항을 기술한다.

- 점검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점검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기기 현황
- 점검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점검의 관련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 · 보강이력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기본시설물 또는 주요부재별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및 측정 결과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상태평가 결과의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대상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 결정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6) 안전등급 지정

정밀점검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필요시)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11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7) 시설물의 안전성 평가 (필요한 경우 추가로 실시)

안전점검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시행방법을 검토

8) 종합결론 및 건의

- 정밀점검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정밀안전진단 및 시설물의 사용제한의 필요성 여부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9)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측정, 시험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정밀점검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3.3 정밀안전진단보고서에 포함될 사항

1) 서두

보고서의 표지 다음에 정밀안전진단의 개요를 쉽게 알 수 있도록 다음의 서류를 붙인다.

- 제출문(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한 기관의 장)
- 정밀안전진단 결과표 (안전등급)
- 시설물 현황표
- 참여 기술진 명단
- 시설물의 위치도
- 시설물의 전경사진, 부위별 사진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요약문
- 보고서 목차

2) 정밀안전진단의 개요

정밀안전진단의 범위와 과업내용 등 정밀안전진단 계획 및 실시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기술한다.

- 진단의 목적
- 시설물의 개요 및 이력사항
- 진단의 범위 및 과업내용
- 사용장비 및 시험기기 현황
- 진단 수행 일정

3) 자료수집 및 분석

정밀안전진단의 관련자료를 검토 · 분석하고 그 내용을 기술한다.

- 설계도면, 구조계산서
- 기존 정밀점검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 보수 · 보강이력 및 용도변경
- 시설물의 내진설계 여부 확인

- 기타 관련자료

4) 현장조사 및 시험

과업내용에 의거 실시한 현장조사, 시험 및 측정 등의 결과분석 내용을 기술하고, 필요한 경우 사진 또는 동영상 등을 첨부한다.

- 전체 시설물 외관조사 결과분석
- 주요한 결함(손상)의 발생원인 분석
- 재료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5) 시설물의 상태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시험의 분석 결과에 따라서 시설물의 상태평가 결과를 작성하며,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의 제8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 콘크리트 또는 강재의 내구성 평가
- 부재별 상태평가 및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정

6)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과업내용에 따라 실시한 현장조사 및 재료시험 등의 결과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조물의 내구성, 사용성 및 안전성 등을 검토하고 시설물의 구조적, 기능적 안전성을 평가한다.

- 현장 재하시험 및 계측 결과분석
- 지형, 지질, 지반, 토질조사 등의 결과분석
- 시설물의 변위, 변형 등의 측정결과 분석
- 시설물의 구조 및 지반해석 및 구조 및 지반해석을 통한 분석결과
- 정밀안전진단 결과 시설물의 보수·보강방법을 제시한 때에는 보수·보강시 예상되는 임시 고정하중(공사용 장비 및 자재 등)이 시설물에 현저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대한 구조안전성 평가 포함 시행
-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정

안전성평가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의 제9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7) 종합평가

-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를 종합하여 안전상태 종합평가 결과의 결정 한다

종합평가 작성 방법은 세부지침의 제10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른다.

8) 안전등급 지정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상태평가 및 안전성평가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제11장에서 기술한 내용을 따라 당해 시설물의 안전등급을 지정하여야 한다.

9) 보수·보강 방법

시설물의 상태평가와 안전성평가 결과에 따라 손상 및 결함이 있는 부위 또는 부재에 대하여 적용할 보수·보강 방법을 제시함.

(내진성능 평가 후 내진능력 부족시의 경우를 포함)

- 보수·보강방법에 대한 개요, 시공방법, 시공시 주의사항 등
- 당해 시설물의 유지관리를 위한 요령, 대책 등

시설물을 안전하고 경제적으로 유지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제시하는 것으로 결함 및 손상의 종류와 원인, 점검요령, 조치대책 등에 관한 실무적이고 필수적인 내용을 해당 시설물의 그림 및 사진 등을 위주로 구성하여 안전점검 경험이 적은 사람도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0) 종합결론 및 건의사항

- 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의 종합결론
- 유지관리시 특별한 관리가 요구되는 사항
- 기타 필요한 사항

11) 부록

- 과업지시서
- 외관조사망도
- 구조해석 모델링 및 수치해석 자료 (입출력자료는 e-보고서에 포함)
- 측정, 시험, 계측 성과표
- 상태평가 결과 자료
- 안전성평가 결과 자료
- 시설물관리대장 사본
- 현황조사 및 외관조사 사진첩
- 사용장비 및 기기의 사진
- 사전조사 자료 일체
- 기타 참고자료

(정밀안전진단 결과와 관련되는 설계도서, 감리보고서, 이전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보고서 등 관련자료 포함)

4. 성과품 납품목록

이 과업과 관련한 성과품은 다음과 같으며 이에 대한 지불은 산출내역서상의 계약금액으로 한다

- 1)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보고서(부록포함) : 20부(안전점검의 경우 10부)
- 2) CD보고서 : 5부
- 3) 사진첩 : 3부

부록 C

사전검토 보고서 예시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사전검토 보고서

1. 과업명 : ○○터널 정밀안전진단(안전점검)

2. 배경 및 목적

시설물의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지침(국토해양부고시 제2008-838호, 2008. 12.31)의 3.1.4항 및 3.9.2항에 따라 과업대상 시설물의 과업지시서 또는 용역설계서 내용이 법령 및 지침, 세부지침 등에 부합되는지 여부를 검토하고, 그 결과를 관리주체에 보고하고 과업수행계획서에 수록하고자 함

3. 과업의 범위

3.1 시설물 명 : ○○터널

3.2 위 치 : ○○도 ○○시(군) ○○동(면) ○○리

4. 사전검토 내용

4.1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대상시설물의 범위

구 분	시설물명	지침 및 세부지침상 점검 및 진단 실시범위			금회 실시범위	제외 사유
		정기 점검	정밀 점검	정밀 안전진단		
기본 시설물	◦ 본선라이닝	○	○	○	○	
	◦ 갯문	○	○	○	○	
	◦ 개착터널	○	○	○	○	
	◦ 지하차도	○	○	○	○	
	◦ 지하정거장	○	○	○	○	
부대 시설물	◦ 연직갱 및 경사갱	○		○		대상시설이 없음
	◦ 환기구	○		○	○	
	◦ 피난연락갱	○		○		대상시설이 없음
	◦ 연결터널(환기시설)	○		○		대상시설이 없음
	◦ 갯구부 옹벽	○		○	○	

4.2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유지관리자료 보유 현황 검토

보존대상 목록		관리주체 보유현황	비고
설계도서	◦ 공통 - 준공내역서 - 공사시방서 - 각종계산서 - 토질조사 보고서 - 기타 특이사항 보고서		
	◦ 설계도면 - 공통 - 토목 - 건축 - 기계·전기설비		
시설물 관리대장	◦ 기본현황 ◦ 상제제원 ◦ 유지관리 이력		
시공관련 자료	◦ 시공관련 자료 ◦ 품질관리 관련자료 - 재료증명서 - 품질시험기록 - 관리 및 선정시험 기록 등 각종 시험 기록 - 시설물의 주요 구조 부위에 대한 계측 관련자료 ◦ 사고기록 ◦ 터널시설 운영기록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자료			
보수보강 자료			

4.3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과업의 범위

[표 1.1] 정밀점검일 경우

과업항목	지침상 기본과업	금회 과업 내용	
자료수집 및 분석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시공관련자료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자료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작동	
현장조사 및 시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간단한 현장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 콘크리트 탄산화 깊이 측정	○콘크리트 시험 -반발경도시험 -탄산화시험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재료시험 결과분석 •대상 시설물(부재)에 대한 상태평가 •시설물 전체의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책임 기술자의 소견 (안전등급 지정)	○작동	
안전성평가	-		
보수·보강 방법	-		
보고서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작동	
과업항목	지침상 선택과업	금회 과업 내용	비용 반영
자료수집 및 분석	•구조·지반해석(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부재에 대한 외관조사망도 작성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 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전체부재 외관조사망도 작성 ○콘크리트 시험 - 코어채취 - 연하물량유량 - 식내시험 등 ○물리탐사 - 지반탐사(GPR탐사)	
상태평가	-		
안전성평가	•필요한 부위의 구조·지반해석 등 안전성평가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보수·보강 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표 1.2] 정밀안전진단일 경우

과업항목	지침상 기본과업	금회 과업 내용
자료수집 및 분석	•설계도서 •시설물관리대장 •시공관련자료 •안전점검·정밀안전진단 실시결과 자료 •보수·보강이력 검토·분석	○전동
현장조사 및 시험	•전체부재의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현장 및 재료시험 등 - 콘크리트시험 : 비파괴강도(반발경도시험, 초음파법 등), 탄산화 깊이측정, 염화물함유량시험 - 강재 시험 : 강재 비파괴시험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작동 유무 •기타조사	○ 전체부재 외관조사 및 외관조사망도 작성 ○ 콘크리트 시험 -반발경도시험 -초음파법 -탄산화시험 -균열깊이 조사 -염화물함유량시험 ○ 철근탐사시험 -철근부식도 측정 -철근배근탐사
상태평가	•외관조사 결과분석 •현장시험 및 재료시험 결과분석 •콘크리트 및 강재 등의 내구성 평가 •부재별 및 시설물 전체 상태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전동
안전성평가	•조사, 시험, 측정결과의 분석 •기존의 구조계산서 또는 안전성평가 자료 검토·분석 •내하력 및 구조안전성 평가 •시설물의 안전성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전동
종합평가	•시설물의 종합평가 결과에 대한 소견 •안전등급 지정	○전동
보수·보강방법	•보수·보강 방법 제시	○전동
보고서작성	•CAD 도면 작성 등 보고서 작성	○전동

[표 1.2] 정밀안전진단일 경우(계속)

과업항목	지침상 선택과업	금회 과업 내용	비용 반영
자료수집 및 분석	•구조·지반 해석(계산서가 없는 경우) •실측도면 작성 (도면이 없는 경우)		
현장조사 및 시험	•시료채취 및 실내시험 •지형,지질,지반조사 및 탐사, 토질조사 •누수탐사 •침하, 변위, 거동 등의 측정 •시설물조사에 필요한 임시접근로, 가설물의 안전시설 설치 및 해체 등 •조사용 접근장비 운용 •조사부위 표면청소 •마감재의 해체 및 복구 •기계전기설비 및 계측시설의 성능검사 또는 시험계측 •기본과업 범위를 초과하는 강제비파괴시험 •기타 관리주체의 추가 요구 및 안전성평가 등에 필요한 조사·시험	○ 콘크리트 시험 -코어채취 -실내시험 등 ○ 지반 및 토질조사 ○ 물리탐사 등 -지반탐사(GPR탐사)	○ ○ ○ ○
안전성평가	•구조지반해석 등 •구조안전성 평가 등 전문기술을 요하는 경우의 전문가 자문 •내진성능 평가 및 사용성 평가 •임시 고정하중에 대한 안전성평가	○ 구조 및 지반 안전성평가 ○ 터널 내진성능평가	× ×
보수·보강 방법	•내진보강 방안 제시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 터널내진보강 방안 제시 ○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 ×

4.4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기본과업 재료시험 수량

[표 2.1] 정밀점검의 경우

구 분	세부지침 기준		금회 수량	비고
	터널	산출수량		
반발경도 시험	○ (총연장÷300m)개소 ○ 책임기술자 판단에 의해 상향 조정 가능			
탄산화깊이 측정	○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총연장 1,000m미만 : 2개소 -총연장 1,000m이상 : 최소2개소+1,000m당 1개소 추가 ○ 책임기술자 판단에 의해 상향 조정 가능			

[표 2.2]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구 분	세부지침 기준		금회 수량	비고
	터널	산출수량		
반발경도 시험	○ (총연장÷100m)×2개소 ○ 책임기술자 판단에 의해 상향 조정 가능			
초음파법				
철근배근탐사시험	○ 철근콘크리트구조물 -총연장 1,000m미만 : 4개소 -총연장 1,000m이상 : 최소 4개소 + 500m당 1개소 추가 ○ 책임기술자 판단에 의해 상향 조정 가능			
탄산화 깊이 측정				
철근부식도 시험				
염화물함유량 분석				
균열깊이 조사	○ 책임기술자 판단에 따라 기준수량 결정			
코어채취 ¹⁾	○ 총연장 1,000m 미만 = 4개소 ○ 총연장 1,000m 이상 = 최초 4개소 + 500m당 1개소 추가 ○ 실내시험 실시 ○ 책임기술자가 상향조정 가능			
터널단면측량	○ 굴착터널 -(총연장÷200m)+1단면 -책임기술자 판단에 의해 상향 조정 가능			

주1) 이전의 실내시험에 대한 자료가 충분하고, 평가결과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기존 자료 이용 가능

4.5 기타 사항

5. 결론

[정밀점검의 경우 예시]

과업지시서와 용역설계서 검토결과, 정밀점검의 범위, 유지관리자료, 과업범위, 기본과업의 재현시험수량은 모두 지친, 세부지침과 부합됨.

[정밀안전진단의 경우 예시]

과업지시서와 용역설계서 검토결과, 정밀안전진단의 범위, 유지관리자료, 기본과업의 재현시험수량은 지친, 세부지침과 부합됨.

다만, 정밀안전진단 과업범위 중 아래와 같이 일부 항목에 대한 비용이 반영되지 않아 보완이 필요함

- 현장조사 및 시험
 - 지반조사
 - 물리탐사
- 안전성평가
 - 구조해석
 - 지반해석
- 보수·보강방법
 - 터널 내진보강방안
 - 시설물 유지관리 방안 제시

부록 D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요령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요령

- ☐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절차
-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입력 양식
- ☐ 입력 요령

※ “시특법”에 의한 1종·2종 시설물의 범위

시설물 구분	시설물 종류		
도로	▸ 도로교량	▸ 도로터널	▸ 복개구조물 ▸ 지하차도
철도	▸ 고속철도교량 ▸ 도시철도교량 ▸ 일반철도교량 ▸ 도시철도고가	▸ 도시철도터널 ▸ 일반철도터널 ▸ 고속철도터널	▸ 고속철도역사 ▸ 광역전철역사 ▸ 도시철도역사
항만	▸ 갑문시설	▸ 계류시설	
댐	▸ 다목적댐 ▸ 발전용댐	▸ 용수전용댐	▸ 지방상수도전용댐
건축물	▸ 공동주택건축물 ▸ 공동주택외건축물 ▸ 관광숙박시설	▸ 문화 및 집회시설 ▸ 종합병원 ▸ 지하도상가	▸ 운수시설 ▸ 종교시설 ▸ 판매시설
하천	▸ 수문 및 통문	▸ 제방 및 부속시설	▸ 하구둑
상하수도 폐기물매립시설	▸ 공업용수도	▸ 광역상수도 ▸ 지방상수도	▸ 폐기물매립시설 ▸ 하수처리장
옹벽	▸ 건축물옹벽	▸ 댐옹벽 ▸ 도로옹벽	▸ 철도옹벽 ▸ 항만옹벽
절토사면	▸ 건축물사면	▸ 댐사면 ▸ 도로사면	▸ 철도사면 ▸ 항만사면

< FMS 상의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초기화면 >

☞ 시설물관리대장 입력 순서

- 254 -

< 개별시설물 현황 입력 화면 >

시설물정보관리 종합시스템 FMS

시설물관리 | 설계도서 | 관련연계 | 기술정보 | 현황 및 통계 | 전자결재 | 커뮤니티 | 사용자관리

(대표)시설물관리대장 터널

대표시설물은 복수의 시설물을 총괄할 수 있는 경우에 관리합니다. (예, 대표시설물-OO터널, 개별시설물-상행 하행)
대표시설물 기본현황을 수정하셔도 이미 입력된 개별시설물 관리대장의 내용은 변경되지 않습니다.

[수정] [삭제] [출력]

<대표>시설물명 터널	주소 대전광역시 대덕구 대화동 12	관리주체 공단운영자	소유자 공단
준공(사용승인)일 1999년 01월 01일	하차담보책임만료일 2005년 01월 01일	설계기간 1998년 01월 01일 ~ 1998년 08월 01일	설계자(회사명) 공단
공사자 공단	감리기간 년 월 일	감리자(책임감리원) 공단	공사발주자 공단
공사감독관리관 공단	감리대상여부(사유입력) ☒ 예 ☐ 아니오		편입일 년 월 일
비고			

개별시설물 현황

[추가] [삭제] [저장]

터널명	종류	종별	연장	상행	하행	차로수	작성일자	승인상태
☐ 터널 L L	고속도로터널	1종	1000	1	1	2		미승인

④ 화면 우측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
→ 개별시설물 현황 입력화면 생성

⑤ 생성된 개별시설물 현황의 화면(점선 박스)에서 관련내용 입력

⑥ 입력완료 후 화면 우측하단 **저장** 버튼 클릭

⑦ 화면 좌측하단의 **Go** 버튼 클릭
→ 시설물관리대장 [기본현황] [상세제원]으로 넘어감.
→ [기본현황]에는 사전에 입력된 내용은 반영되어 나타남.

개별시설물 현황 입력 순서

- ④ 화면 우측하단의 **추가** 버튼을 클릭
→ 개별시설물 현황 입력화면 생성
- ⑤ 생성된 개별시설물 현황의 화면(점선 박스)에서 관련내용 입력
- ⑥ 입력완료 후 화면 우측하단 **저장** 버튼 클릭
- ⑦ 화면 좌측하단의 **Go** 버튼 클릭
→ 시설물관리대장 [기본현황] [상세제원]으로 넘어감.
→ [기본현황]에는 사전에 입력된 내용은 반영되어 나타남.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화면에서 해당사항을 입력·수정

□ 기본현황 및 상세제원 입력 양식

1. 기본현황

시설물번호	관리주체 관리번호	시설물명		시설물분류		
				시설물종별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X						
주 소		노 선	관 리 주 체	관 리 주 체 구 분	소 유 자	
				공공/민간		
준공(사용승인)일	하자담보 책임만료일	상세제원	관리주체의 설계도서 보존	설계도서사본 공단지출	감리보고서 공단지출	안전점검보고서 공단지출
'00. 00.00	'00. 00.00	유/무				
설계기간		설계사 (회사명)	공사기간		시공자 (회사명)	시공비
'00. 00.00 ~ '00. 00.00			'00. 00.00 ~ '00. 00.00			000백만원
내진설계적용여부	감리기간	감리자 (책임감리원)	공사발주자	공사명		공사감독· 관리관
예/아니오						
감리비대상사유					편입일	
비고		시설물관리의 근거법령	시설물의안전 관리에관한 특별법	영10조대상	예/아니오	
전경사진			정·측면,기타사진			

2. 상세제원

시설물명		터널 위치 (읍면동리까지 기입)		폭(m)			연장(m)	높이(m)
				보도	차도	계		
		시점 : 종점 :						
구분	형상	주요공법	보조공법		배수형식		갱문형식	
대표								
기타								
덕트스라브		인버트설치	차로수			종단구배	평면선형곡선반경R	
			상행	하행	계			
유 / 무		유 / 무						
부속설비		환 기				조 명		
		전 기		소 방		기 타		
기타상세제원								
구간(Station) 정보								
번호	시점 Station No		종점 Station No				표준패턴 No	
1	OK420		OK495				옹벽	

□ 입력 요령

1. 기본현황 입력 요령

※ 입력양식에서 해당 시설물의 정보가 없는 경우 “미상” 으로 입력

👁 시설물 번호

- 특별법 대상 시설물마다 시설물종류에 따른 고유번호가 부여될 예정이므로 빈칸으로 남겨둬.

→ 표지의 시설물 번호와 같아야 함.

예) :	시설물 번호
	TU 2002-0000001

👁 관리번호(관리주체)

- 관리주체에서 시설물관리를 위해 사용하고 있는 시설물 관리번호

→ 해당 시설물관리대장 표지의 관리번호와 같아야 하며, 없는 경우 생략

예) :	관리주체 관리번호
	도공터널-12

👁 시설물명

- 터널명을 입력 (관리주체 관리대장의 시설물명과 같아야 함)

→ 터널이 상행, 하행으로 구분되어 있는 경우 시설물관리대장을 각각 작성하게 되므로 시설물명에 상행, 하행을 표시하여 입력.

예) :	시설물명
	중부/터널(상행)

예) :	시설물명
	노각재터널

👁 시설물분류

- 시설물분류에서 해당 시설물을 체크(입력)

→ 시설물종별, 시설물구분, 시설물종류 등이 자동으로 생성

👁 주소

- 시설물 소재지의 주소를 (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번지)로 구분하여 상세하게 입력

예) :	위치(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번지 등 주소)			
	경기도	포천군	내촌면	신팔리

예) :	위치(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번지 등 주소)			
	서울특별시	노원구	상계동	////-/번지

👁 노선

- 터널이 위치하는 도로 또는 철도 노선명을 입력

예) :	노선
	고속국도/호선

예) :	노선
	일반국도56호선

예) :	노선
	경원선철도

👁 관리주체

- 사용자 정보의 관리주체명이 입력되므로 ID발급 요청시 관리주체명을 정확하게 입력
 - 관계법령에 의하여 해당시설물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 또는 해당 시설물의 소유자와의 관리계약에 의하여 시설물의 관리책임을 진 자

예) :	관리주체
	도로터널관리단

👁 관리주체구분

- 공공관리주체의 경우 “공공”, 민간관리주체의 경우 “민간”으로 사용자 정보의 관리주체 구분에 따라 자동 생성

예) :	관리주체구분
	☒ 공공 / 민간

👉 **소유자**

- 소유자명을 정확하게 기입. 관리주체와 소유자가 같은 경우에도 입력

예) :	소유자
	도로터널관리단

👉 **준공(사용승인)일**

- 준공(사용승인)일의 연-월-일을 입력

예) :	준공(사용승인)일
	2002-03-10

👉 **하자담보책임만료일**

- “건설산업기본법”, “주택건설촉진법” 등 관계법령에 의한 하자담보책임 또는 하자보수만료일을 입력

예) :	하자담보책임만료일
	2007-03-10

👉 **상세제원**

- 시설물관리대장에서 “상세제원” 서식이 작성되어 있는지 유무를 자동으로 생성
→ 반드시 상세제원을 입력하여야 “유”에 체크됨.

예) :	상세제원
	☒ 유 / 무

👉 **관리주체의 설계도서 보존**

- 당해 시설물의 준공일이 1995년 6월 3일 이전인 경우 “비대상” 이후일 경우 “대상”으로 자동 생성되며, 관리주체는 설계도서의 “보존, 미보존” 유무를 체크 (입력) → 체크된 부분만 입력됨.

예) :	관리주체의 설계도서 보존
	비대상-보존

☞ 설계도서사본 공단제출, 감리보고서 공단제출, 안전점검보고서 공단제출

- 이 부분은 공단에서 대상/비대상 및 제출 여부를 체크하므로 입력자는 대상/비대상 만으로 선택

→ 안전점검보고서는 “건설기술관리법”에 의한 안전점검종합보고서를 의미함.

	설계도서사본 공단제출	감리보고서 공단제출	안전점검보고서 공단제출
예) :	대상-미제출	비대상-미제출	대상-미제출

☞ 설계기간

- 설계기간 착공일, 준공일을 입력

	설계기간
예) :	1994-08-01 ~ 1995-11-02

☞ 설계사(회사명)

- 설계사(회사명) 상호를 정확하게 입력

☞ 공사기간

- 공사기간 착공일, 준공일을 입력

☞ 시공자 (회사명)

- 시공자의 상호를 정확하게 입력
→ 최초 입력화면에서 찾기로 입력

☞ 시공비 (단위 : 백만원)

- 총공사비를 입력 (천단위 구분 “ , ”를 제외한 숫자만 입력)

☞ 내진설계적용 여부

- 당해 시설물의 내진설계 적용 여부를 체크(입력)
→ 체크된 부분만 입력됨.

	내진설계적용여부
예) :	☒ 예 / 아니오

☞ 감리기간

- 감리기간 착수일, 종료일을 입력

☞ 감리자(책임감리원)

- 감리자의 상호와 책임감리원 이름을 정확하게 입력

예) :

감리자 (책임감리원)
한국감리(주) (강 안전)

☞ 공사발주자

- 공사발주자를 정확하게 입력 (최초 입력화면에서 찾기로 입력)

☞ 공사명

- 공사명을 정확하게 입력
→ 여러 개의 시설물에 관한 공사가 1건으로 발주된 경우에는 발주된 공사명을 정확하게 입력

예) :

공사명
벽제-의정부간 도로확장 및 포장공사

☞ 공사감독 · 관리관

- 공사감독 또는 공사 관리관의 이름을 입력

☞ 감리비대상사유

- 당해 시설물의 공사가 감리 비대상일 경우 그 사유를 선택하여 입력

☞ 편입일

- “시설물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의 1종·2종 시설물로 고지된 날 입력
→ 1종·2종 시설물의 준공일
→ 시특별령의 개정에 따른 1종·2종 시설물로 적용되는 날
→ 대수선 및 보강(증축)공사로 시특별법의 1종·2종 시설물로 전환된 날

👁️ 비고

- 기본현황 서식에 있는 항목 이외에, 관리주체에서 해당 시설물의 기본현황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항목과 내용을 추가로 기입하여 관리주체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음.

👁️ 시설물관리의 근거법령

- 당해 시설물 관리를 위한 관련법령은 자동으로 생성

👁️ 영10조대상

-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0조 대상시설물 여부는 자동으로 생성
(한국시설안전공단이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하는 시설물)

	영10조대상
예) :	예 / ☒ 아니오

👁️ 전경사진

- 시설물을 확인할 수 있는 전경과 정면, 측면, 기타부분의 전경사진을 붙임.
→ 반드시 2장을 입력하여야 함.
→ 사진크기 : 가로 365픽셀, 세로 280픽셀

2. 상세제원 입력 요령

※ 입력양식에서 해당 시설물의 정보가 없는 경우 “미상” 으로 입력

☞ 시설물명

- 터널명 입력 (기본현황 입력과 같음)

☞ 터널 위치 (읍면동리까지 기입)

예) :	터널위치 (읍면동리까지 기입)	
	시점 :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엄미리	종점 : 경기도 광주군 중부면 광지원리

☞ 폭(m)

- 보도 : (단위 : m) 터널의 보도폭을 입력 (좌측보도, 우측보도 및 좌·우연석 포함)
- 차도 : (단위 : m) 터널의 차도폭을 입력
- 계 : (단위 : m) 터널의 총폭을 입력 (보도폭 + 차도폭)

예) :	폭(m)		
	보도	차도	계
	4	12	16

☞ 연장(m)

☞ 높이(m)

☞ 형상

- 대표 : 터널이 서로 다른 형상으로 구성된 경우,
최대연장을 가지는 형상을 체크(입력)
- 기타 : 대표 이외의 형상을 체크(입력)
터널이 모두 같은 형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생략

☞ 주요공법

- 대표 : 터널이 서로 다른 형상으로 구성된 경우,
최대연장 터널구간에 적용한 주요공법을 체크(입력)
- 기타 : 대표 이외 형상의 적용 주요공법을 체크(입력)
터널이 모두 같은 형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생략

☞ 보조공법

- 대표 : 터널이 서로 다른 형상으로 구성된 경우,
최대연장 터널구간에 적용한 주요공법 외의 보조공법 체크(입력)
- 기타 : 대표 이외 형상의 적용 보조공법을 체크(입력)
터널이 모두 같은 형상으로 구성된 경우에는 생략

☞ 배수형식

- 터널의 배수형식을 체크(입력)

☞ 갯문형식

- 터널 입구의 형식을 체크(입력)

☞ 덕트스라브

- 덕트스라브 설치 유, 무를 체크

☞ 인버트 설치

- 인버트 설치 유, 무를 체크

☞ 차로수 :

- 상행 (단위 : 차선) : 터널 상행선의 차선수를 입력. 하행선 전용 터널의 경우 생략
- 하행 (단위 : 차선) : 터널 하행선의 차선수를 입력. 상행선 전용 터널의 경우 생략
- 계 (단위 : 차선) : 교량의 총차선수를 입력. (상행선의 차선수 + 하행선의 차선수)

☞ 종단구배

- (단위 : %) 터널내 시점부 또는 종점부 등 주된 구간 종단선형의 경사를 입력

☞ 평면선형 곡선반경R

- (단위 : m) 터널내 평면선형의 곡선반경 R을 입력

☞ 부속설비

- 환기 : 환기방식 등을 체크(입력)
- 조명 : 조명설비 등을 간략하게 입력

- 전기 : 전기설비 등을 간략하게 입력
- 소방 : 소방설비 등을 간략하게 입력
- 기타 : 기타 부속설비 등을 간략하게 입력

☞ 기타 상세제원

- 상세제원 서식에 있는 항목 이외에, 관리주체에서 해당 시설물의 상세제원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항목이 있을 경우 항목과 내용을 추가로 기입하여 관리주체 실정에 맞게 활용할 수 있음.

☞ 구간(Station) 정보

- 시점에서 종점방향으로 Station No.를 기입한다.
예) 시점 OK420, 종점 OK495
- 표준패턴 No. : 터널에 적용된 표준지보패턴을 입력
예) 용벽, 풍화암 단면 : 패턴 III

안전점검 및 정밀안전진단 세부지침(터널)

승인 국토해양부 시설안전과
발행 한국시설안전공단

1996년 3월 일 초판

2000년 9월 일 개정

2003년 12월 일 개정

2009년 3월 일 개정

* 본 세부지침의 내용에 관한 질의 및 건의 사항은
국토해양부 시설안전과 및 한국시설안전공단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국시설안전공단 (http://www.kistec.or.kr)
(우) 411-758 경기도 고양시 일산서구 시민대로 1160 대표전화 1599-4114, 031-910-4114

본 세부지침의 내용은 공단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 있습니다.